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 일반회계 -

(행정복지위원회)

김 포 시

목 차

■ 담당관실

- 1. 홍보기획관 7
- 2. 감사관 29

■ 기획조정실

- 3. 예산법무과 37
- 4. 스마트도시과 45

■ 경제국

- 5. 일자리정책과 51
- 6. 지역경제과 75
- 7. 기업지원과 87
- 8. 투자유치과 95
- 9. 식품안전과 103

■ 교육문화국

- 10. 교육청소년과 109
- 11. 문화예술과 119
- 12. 관광진흥과 127
- 13. 체육과 147
- 14. 도서관과 171

목 차

■ 복지국

15. 복지정책과	193
16. 생활보장과	205
17. 노인장애인과	213
18. 가족문화과	241
19. 아동보육과	259

■ 보건소

20. 보건행정과	271
21. 보건사업과	283

■ 읍·면·동

22. 통진읍	291
23. 고촌읍	299
24. 대곶읍	303
25. 월곶면	311
26. 하성면	319
27. 사우동	327

담당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홍보기획관



언론 홍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김포시 출입 주요 언론사 외		
사업목적	영향력 있는 언론사 등에 주요 보도자료 데이터 제공 및 스크랩 지원, 시 이미지 홍보하여 시정 인지도 제고(지면, 배너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2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이하 "행정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25,870	554,836	0	0	554,836	28,96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5,870	554,836	0	0	554,836	28,96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54,836	
언론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18,000,000원 = 18,000 · 중앙지 구독 15,000원*4부*20종*9월 = 10,800 · 지방지 구독 15,000원*4부*30종*9월 = 16,200 · 지역지 구독 10,000원*7부*2종*9월 = 1,260 · 시정홍보용품 구입 4,200,000원*1회 = 4,200 · 언론매체 홍보용 이미지 제작 200,000원*10회 = 2,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시정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9,000원*44명*6월 = 2,376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언론홍보매체비 = 500,000 - 중앙지 250,000,000원 = 250,000 - 지방지 150,000,000원 = 150,000 - 기타 100,000,000원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매체 통한 시대 흐름 파악 및 시정 홍보에 중점
- 언론사 출입 증가 및 시정 홍보 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 광고 집행 지속으로 언론과의 협력관계 강화
- 시대 흐름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이미지 제작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시청 모든 부서의 소통예산으로 조직확대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시책 증가를 반영
- 홍보해야 할 사업은 많으나 예산이 부족해 매년 조기 소진되어 행정에 지장을 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25. 연중 :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 홍보 이미지 제작 및 주요 언론사에 대한 행정 광고 의뢰·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1개사, 19,440천원) - 언론홍보매체비 : 499,890천원(71개사) - 신문구독료 : 61종, 33,524천원
2024	-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1개사, 19,440천원) - 언론홍보매체비 : 449,520천원(74개사) - 신문구독료 : 60종, 26,799천원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6,790	565,526	-	11,264	
2024	525,870	497,121	-	28,749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행정8급 김혜란	전화	2062 2063
-----	-------	------------	-----	----------------------	----	--------------

외부 미디어매체 이용 홍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김포시 출입 주요 언론사 외		
사업목적	외부 미디어매체를 통한 시 현안 및 이미지 등 시정 홍보 추진 (배너·팝업 등 게시, 보도사진 DB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48,280	344,280	158,140	0	186,140	-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8,280	344,280	158,140	0	186,140	-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6,140	
외부 미디어매체 이용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인터넷 통신사 사진 및 보도DB 사용료 - 뉴시스 경정(12,000,000원*1회)-기정(4,000,000원*1회) = 8,000 - 뉴스1 경정(12,000,000원*1회)-기정(4,000,000원 *1회) = 8,000 - NSP통신 경정(5,000,000원*1회)-기정(140,000원 *1회) = 4,860 · 연감 및 홍보도서 구입료 264,000원*2부*10개사 = 5,280	20,860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인터넷홍보매체비(14개사) : 경정(180,000,000원)-기정(20,000,000원) =	160,000	

□ 예산요구 사유

-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김포 소식 및 주요 국내외 뉴스, 보도자료, 각종 홍보 관련 데이터 등 전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 필요
- 정확하고 신속한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한 지역 언론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폭넓은 시정에 대한 홍보로 시민 알권리 확보
- 시민 접근성, 전달성이 높은 방송사 등의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동영상 광고로 홍보 효과 극대화
- 영상 미디어를 주로 소비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주요 관공서,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시정 소식을 담은 영상을 주기적으로 송출하여 시정 홍보 극대화

□ 예산증감 사유

○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터넷 통신사 등 매체 홍보비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보도 DB 인터넷 통신사 계약 체결
 - 2025. 연중 : 인터넷 통신사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이용 계약 및 기사·사진 등 데이터 활용,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행정 광고 의뢰(배너·팝업 등), 방송사·지하철 등에 송출할 시정홍보 광고 의뢰(동영상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도 DB 인터넷통신사 뉴스 사용료(3개사, 45,000천원) - 인터넷 매체 팝업, 배너 광고(14개사, 123,640천원) - 미디어 광고 등 (6개사, 112,000천원)
2024	- 보도 DB 인터넷통신사 뉴스 사용료(4개사, 47,000천원) - 인터넷 매체 팝업, 배너 광고(14개사, 118,580천원) - 미디어 광고 등(6개사, 104,660천원)
2025	- 보도 DB 인터넷통신사 뉴스 사용료(3개사, 2,000천원) - 인터넷 매체 팝업, 배너 광고(12개사, 10,008천원) - 미디어 광고 등(2개사, 21,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2,280	350,438	-	1,842	
2024	348,280	344,620	-	3,660	
2025	158,140	33,008	-	125,132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2062
-----	-------	------------	-----	----------	----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영상 송출 언론사(뉴스비전) 용역계약 체결
 - 2025. 연중 : 기획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다중집합장소 미디어 영상 송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뉴스비전 미디어 송출(1개사, 23,980천원)
2024	- 뉴스비전 미디어 송출(1개사, 24,000천원)
2025	- 뉴스비전 미디어 송출(1개사, 2,4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	23,980	-	20	
2024	24,000	24,000	-	-	
2025	16,000	2,400	-	13,6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2062
-----	-------	------------	-----	----------	----	------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시정소식지 지면 발행(월 30,000부), 김포마루 모바일 웹(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기획편집위원회 운영 등		
사업목적	시정소식지 발행 및 시민 배부를 통한 시정 이해도 제고,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	-
	해당조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3조, 제4조, 제12조
		제3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제1항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포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 활용)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 자료 및 제5조에 따른 내용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94,120	448,000	225,850	0	222,150	53,8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94,120	448,000	225,850	0	222,150	53,88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2,150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마루 제작 : 경정(380,000,000원)-기정(190,450,000원) = 189,550 . 김포마루 기획편집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5명 * 7회 = 3,500 . 제안서 평가수당 : 300,000원*9명 = 2,700		
	201-02 공공운영비	. 김포마루 우편발송료 : 경정(2,800,000원*12월)-기정(1,000,000원*12월) = 21,600		
	301-14 기타보상금	. 시민참여 이벤트 상품 구입 4,800,000원 = 4,800		

□ 예산요구 사유

- 전년도 대비 우편구독 신청자 증가, 전자책 구독 어려움 발생 등 ‘책자’ 수요 증대에 따른 김포마루 지면 월간(월 30,000부) 발행, 김포마루 웹(홈페이지) 운영, 시민명예기자 및 기획편집위원회 운영 등

□ 예산증감 사유

- 김포마루 책자 수요 급증에 대응한, 발행 부수 및 횟수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 (2024년) 8회, 15,000부 → (2025년) 11회, 30,000부
※ 2024년 전자책으로만 발행한 달 : 4회(6월호, 8월호, 10월호, 11월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 김포마루 제작 연간 계획 수립
 - 2025. 1. ~ 2025. 12. : 시정소식지 지면 및 전자책 발행, 김포마루 모바일 웹(홈페이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매월 1일 55,000부 제작(12회), 김포마루 접자판 제작, 김포마루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시민기자코너(모바일·웹 기사), 블로그 김포마루 홍보, 김포마루 신규배부처 확대 등
2024	- 2024년 2월, 김포마루 발행형식 변경(신문→책자) - 신문형 1회(2024년 1월호, 55,000부), 책자형 7회(15,000부) ※ 6·8·10·11월호는 전자책만 발행 김포마루 접자판 제작, 김포마루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시민기자코너(모바일·웹 기사), 전자책 앱(5개) 신규 등록 및 무료 배포, 김포마루 신규배부처 확대 등
2025	- 책자형 2회(1월호 15,000부, 3월호 30,000부) 제작, 김포마루 접자판 제작, 김포마루 모바일 서비스 운영 전자책 앱(5개) 등록 및 무료 배포, 김포마루 배부처 정비 및 확대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7,880	359,437	-	48,443	
2024	394,120	379,172	-	14,948	
2025	225,850	134,047	-	91,803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담당자	행정7급 김보민	전화	2066
-----	-------	-------------	-----	----------	----	------

시정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홍보굿즈, 현수막 등		
사업목적	대외협업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굿즈 기획으로 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홍보물 제작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	-
	위임규정	-	
	해당조례	김포시 상징물 조례	제8조 제1항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9,000	111,500	55,750	0	55,750	2,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9,000	111,500	55,750	0	55,750	2,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5,750	
시정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 경정(25,000원*1,000부)-가정(22,000원*1,000부) = 3,000 · 시정 홍보물 제작(서류 봉투, 소광백 등) : 경정(5,000원*4,800개)-가정(5,000원*1,000개) = 19,000 · 상징물 활용 굿즈 등 홍보물 제작 : 경정(5,000,000원*9종)-가정(17,750,000원) = 27,250 · 시정 홍보 및 행사 현수막, 이미지 등 제작 : 경정(1,250,000원*10회) - 가정(1,250,000원*8회) = 2,500 · 인형탈 제작 비용 : 2,000,000원 * 2종 = 4,0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캐릭터 리뉴얼 및 신규 개발(김포애기즈)이 완료되어, 해당 캐릭터 활성화 및 대중 인지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굿즈 개발 등 다각적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
- 기존 포수포미 인형탈과 별도로, 귀여움을 살린 신규 출시 캐릭터 인형탈을 제작하여 캐릭터 인지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시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홍보책자 : 단기형 사업 전방위 홍보 시 필요한 소책자(리플릿) 비용 추가 산정
- 홍보굿즈
 - 리뉴얼 캐릭터 활용 쇼핑백, 대봉투 및 홍보굿즈 제작비용 추가산정
 - 주요 사업 및 시정방향 홍보용 옥외현수막 제작비용 추가 산정
 - 캐릭터 이미지 확장 구축을 위한 인형탈 신규 제작비용 편성(2종)
- ※ 기존 인형탈의 경우 영상 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리비용 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연중 : 홍보물 관련 계획 수립 및 제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민선8기 1주년 성과&비전 보고서 제작 - 게임판 형식 시정홍보책자 「김포마블」 제작 - 시정홍보물 제작(포수포미 키링세트, 휴대기기용 보조배터리, 종이홀더, 타포린백, 대봉투, 우산, 손수건 등)
2024	- 홍보책자 제작 추진(국영문 병기, 소책자 형태 1,000부) - 시정홍보물 10종 제작(타투스티커 2종, 일회용 반창고, 우산, 인형, 문구세트, 김포꽃따지 등)
2025	- 시정홍보물 1종 제작(리유저블백) - 부서별 홍보물품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3,712	129,732	-	3,980	
2024	109,000	98,506	10,450	10,494	
2025	66,200	3,640	-	62,56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담당자	행정7급 이송은	전화	2067
-----	-------	-------------	-----	----------	----	------

홍보대사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홍보대사 운영, 홍보대사 활동 지원금 지급		
사업목적	김포시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활동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	-
	위임규정	-	
	해당조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1,000	21,000	12,500	0	8,500	0	
국비							
도비							
시비	21,000	21,000	12,500	0	8,500	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00	
홍보대사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 홍보대사 활동비 : 경정(20,000,000원)-기정(11,500,000원) =	8,500	

□ 예산요구 사유

- 대내·외 영향력 있는 시 홍보대사를 통한 도시브랜드 및 시정 홍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홍보대사 신규 위촉에 따른 인원 증대 및 부서 지원 수요 증가분 반영 ※ 현황 : 17명 4팀
- 홍보대사 활용으로, 시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효과 파급력 제고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홍보대사 활동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홍보대사 현황 : 16명 1팀 - 신규 위촉 : 10명 1팀(안지환, 양은별, 영지, 조민호, 황우림 등) - 최근 3년간 활동내역 유무에 따른 현황 정비('23.8.) ○ 홍보대사 현황 정비 ○ 홍보대사 활동 34건 - 행사 진행 및 참석, 공연(애기봉 야간기행, 라베니체 페스티벌 등) - 시민 만남 및 소통행사 '애기봉에 몰래 온 김포 산타들' 및 '어린이날 행사 팬사인회' - 2023 시정계획영상 음성 녹음 및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인터뷰 진행 등
2024	○ 홍보대사 현황 : 17명 4팀 - 신규 위촉 : 1명 3팀(얼미부부, 김희수, 김혜선&스테판지젤, 유기석&송하린) ○ 홍보대사 활동 : 42건 - 행사 진행 및 참석, 공연(김포시민의 날, 애기봉 달빛 라이트쇼, 이민청 포럼, 광복절 경축식 등) - 영상 촬영(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응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 축하 영상 등) -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 컬러링 녹음, 민선8기 2주년 성과 나레이션 녹음 등
2025	○ 홍보대사 현황 : 17명 4팀 ○ 홍보대사 활동 : 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7,350	-	2,650	
2024	21,000	19,882	-	1,118	
2025	12,500	-	-	12,5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담당자	행정7급 김보민	전화	2066
-----	-------	-------------	-----	----------	----	------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시설물 23개소(상징조형물 1개, 디지털 전광판 등 16개, 캐릭터 조형물 6개)		
사업목적	시민에게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생활 속 정책 홍보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위임규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3,760	16,010	11,760	0	4,250	2,2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760	16,010	11,760	0	4,250	2,250	
기타		0				0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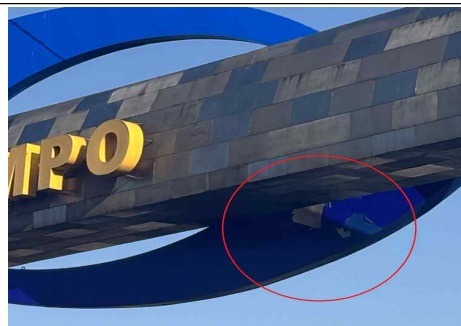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50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 경정(10,250,000원)-기정(500,000원*12월) =	4,250	

□ 예산요구 사유

- 고촌 미래를 여는 문 시설물 낙후(시트지 점착력 약화)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 및 김포 초입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시트지 교체작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제1별관(구 의회동) 전광판을 관리전환(의회사무국→홍보기획관) 및 보수하여, 전략적 시정홍보용 시설물로 재활용하고자 함



고촌 미래를 여는 문 현장사진



제1별관 전광판 현장사진

□ 예산증감 사유

- 고촌 상징조형물 미래를 여는 문 시트지 보수작업 비용 산정(2,250천원)
- 제1별관 전광판 전선 연결 작업 비용 산정(2,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상반기 : 고촌 미래를 여는 문 보수작업
 - 2025. 연중 : 제1별관 전광판 보수작업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상징조형물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및 경관조명 보수 및 공기순환장치 설치 - 본청 LED 전광판 유지보수 - 홍보시설물 지주 이용 홍보 간판 철거 집행 - 덕포진 노후 캐릭터 조형물 철거 집행 - 제15회 시민의 날 홍보 부스 운영
2024	- 본청 LED 전광판 유지보수 - 홍보시설물 홍보이미지 교체 - 상징조형물 전기료 납부 - 스마트게시판 유지보수 용역 집행
2025	- 본관 LED 전광판 유지보수 - 상징조형물 전기료 납부 - 스마트게시판 유지보수 용역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2,579	83,430	-	9,149	
2024	13,760	8,662	-	5,098	
2025	11,760	1,601	-	10,15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담당자	행정7급 이송은	전화	2067
-----	-------	-------------	-----	----------	----	------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사업기간	2025. 5.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G-버스, 실내외 미디어, 디지털 광고 등)		
사업목적	생활밀착형 다중이용시설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소식과 행사 등을 전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62,000	337,600	0	0	337,600	-24,4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2,000	337,600	0	0	337,600	-24,4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7,600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디지털매체 광고 제작 및 송출 - 미디어 광고 영상 제작 2,500,000원*16회 = 40,000 - G-버스 TV 미디어 광고 7,200,000원*8월 = 57,600 - 디지털 미디어 광고 10,000,000원*4회 = 40,000 · 미디어 채널 활용 시정홍보 50,000,000원*4회 = 200,000	137,600	

□ 예산요구 사유

○ 찾아보지 않아도 눈에 띄는 ‘시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 정보’ 홍보 필요

- 시민참여 행사·축제 또는 각종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생활밀착매체(버스 광고, TV, 유튜브 피드 등)로 송출하여 시정정보 노출도 강화
- 온라인 매체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김포시 채널을 직접 찾아보지 않는 시민들도 생활밀착매체를 통해 유용한 시정 정보를 취득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예시) ‘아라마리나, 라베니체 축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등 시민 참여 및 혜택 안내

- 관내 시민을 넘어 관외까지 김포시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미디어 채널 활용 시정홍보
 - TV 방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유명 유튜브 채널까지 확대하여 김포의 대표 관광지와 시정이슈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대외 인지도 및 관심도 유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증감 사유

- 필요한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을 위하여 2024년 최종 예산액 규모로 상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시정홍보 계획 수립
 - 2025. 5. ~ 2025. 12. : 디지털매체 광고 영상 제작 및 송출, 미디어 채널 활용 시정 홍보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활밀착형 광고매체 활용 홍보 - 다중이용시설 영상 콘텐츠 제작(18편) / 버스정류장, 김포골드라인 역내 스크린, G버스 TV 등 송출 - G-버스 홍보(3~12월) : 시정홍보영상(30초) 송출 / 관내 버스 660대 월평균 120만 회 이상 노출 - 디지털 홍보 : 유튜브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 시정홍보영상 5초 이상 재생 1,323,986회 이상 노출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 1,057만 회 이상 노출, 6,175명 친구추가
2024	○ 생활밀착형 광고매체 활용 홍보 - 다중이용시설 영상 콘텐츠 제작(15편) / 버스정류장, 김포골드라인 역내 스크린, G버스 TV 등 송출 - G-버스 홍보(3월~12월) : 시정홍보영상(30초) 송출 / 관내 버스 660대 월평균 120만 회 이상 노출 - 디지털 홍보 : 유튜브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 시정홍보영상 5초 이상 재생 3,129,871회 이상 노출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 1,479만 회 이상 노출, 7,222명 친구추가 ○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노출 - TV조선 ‘산따라 물따라 탄따라’ 김포 관광명소 홍보 - YTN ‘황금나침반’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성탄트리 점등식 소개 - MBN ‘전현무계획2’ 애기봉, 라베니체, 김포식 추억탕 소개 - 연합뉴스 TV ‘리부팅 지방시대’ 김포 교통문제 해결 등 시정 이슈 소개 - MBC ‘구해줘! 홈즈’ 서울통합, 5호선 연장 등 시정 이슈 소개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2,000	146,535	-	15,465	
2024	362,000	346,580	-	15,420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영상미디어팀장 이지은	담당자	행정8급 신지유	전화	2086
-----	-------	-------------	-----	----------	----	------

SNS 콘텐츠 기획 · 제작 ·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공식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및 대외 SNS 매체		
사업목적	시 공식 SNS의 콘텐츠 기획·제작 및 확산을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콘텐츠 중심의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시정 홍보 마케팅 실시로 시민 혜택 확산, 인플루언서 및 SNS 지원단을 통한 홍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	
	위임규정	-	
	해당조례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6항
		제5조(인터넷 소통매체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SNS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소통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SNS 지원단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43,120	152,234	0	0	152,234	-90,88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3,120	152,234	0	0	152,234	-90,88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2,234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SNS 콘텐츠 제작 운영 70,000,000원 = 70,000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인플루언서 활용 · 제안서 평가 수당 300,000원*9명*1회 = 2,700 · SNS 지원단 원고료 30,000원*30명*3건*6월 = 16,200		
	201-02 공공운영비	·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 3,762,000원*7월 = 26,334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SNS 기반 광고 마케팅 37,000,000원 = 37,000 - 이모티콘 활용 홍보비 880원*1회*25,000명 = 22,000 - 대외 마케팅 홍보비 5,000,000원*3회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을 통해 일 1회 이상 양질의 시정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 김포 생활·복지정보 등 김포시민이 꼭 알아야 할 혜택에 대한 소식을 확산하여 정보 소외 최소화
- 인플루언서 등 대외 SNS 매체를 기반으로 한 홍보 마케팅 수행
- SNS 지원단 운영 : 시민을 SNS 지원단으로 위촉·운영하여 시민의 시선에서 홍보 콘텐츠 제작
- 카카오톡 친구 대상 주 1회 시정 소식, 혜택 정보 등 메시지 발송

□ 예산증감 사유

- 트렌드에 맞는 SNS 기반 광고 도입, 캐릭터를 통한 이모티콘으로 김포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SNS 구독자 확보를 통한 홍보 기반 확대
-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증가에 따른 발송비 증가
※ 2023년 말 대비 카카오톡 친구 수 2배 이상 증가(‘23.12월 18,991명 → ‘25.3월 현재 44,191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 김포시 SNS 자체 운영 중
 - 2025. 5. : 「2025년 김포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용역」 공고 및 용역 추진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블로그 : 1,446건 포스팅 / 29,509명 이웃 - 페이스북 : 585건 제작 게시 / 25,162명 팔로워 - 인스타그램 : 245건 제작 게시 / 11,303명 팔로워 - 카카오톡 채널 : 404건 제작 게시 / 18,991명 구독 - SNS지원단 운영 : 37명(원고료 집행) - 인플루언서 협업 : 43개 포스팅, 158.9만 노출도
2024	- 블로그 : 1,274건 포스팅 / 30,892명 이웃 - 페이스북 : 527건 제작 게시 / 24,905명 팔로워 - 인스타그램 : 289건 제작 게시 / 14,202명 팔로워 - 카카오톡 채널 : 318건 제작 게시 / 42,570명 구독 - 이모티콘 발송 : 25,000건 / 1회 - SNS지원단 운영 : 27명(신규 위촉, 원고료 집행) - 인플루언서 등 대외 매체 협업 : 74개 포스팅, 244만 노출도
2025	- 블로그 : 165건 포스팅 / 31,017명 이웃 - 페이스북 : 65건 제작 게시 / 24,840명 팔로워 - 인스타그램 : 23건 제작 게시 / 14,378명 팔로워 - 카카오톡 채널 : 44,191명 구독 - SNS지원단 운영 : 2025.2.28. 시민 27명 운영 종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900	172,577	-	8,323	
2024	243,120	224,157	-	18,963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담당자	전산7급 임수연 행정9급 허소영	전화	2069 2971
-----	-------	-------------	-----	----------------------	----	--------------

시정홍보영상물 기획·제작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시정홍보 영상 제작		
사업목적	김포시의 정책과 생활정보를 담은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 및 생중계로 시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 증진 및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상진흥기본법(법률 제8744호)	제7조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의견수렴,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 소통매체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13,700	334,300	107,150	0	227,150	120,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3,700	334,300	107,150	0	227,150	120,6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7,150	
시정홍보영상물 기획·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경정(120,000,000원)-기정(61,350,000원) = 58,650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300,000원*9명*1회 = 2,700 ·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 경정(90,000,000원)-기정(45,000,000원) = 45,000 · 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 : 60,000,000원*2편 = 120,000 · 공식 캐릭터 인형탈 관리비 : 경정(1,600,000원)-기정(800,000원) = 8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유튜브 채널의 주기적인 콘텐츠 제작 및 신뢰성 확보 필요

- 지난해까지 주 1회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 발행을 진행하여 왔으나, 확정된 본예산 규모로 운영 정책을 변경하여 격주 1회 콘텐츠 제작 발행으로 구독자 이탈 및 조회수 하락
- 연속성있는 시리즈 제작 중단(김포 보이는 라디오, 공잡스, 김포쭈민 등)

- 부서에서 요청하는 행사 상영 및 홍보(기록) 영상 제작 필요
 - 아라마리나 축제, 라베니체 축제, 독서대전 등 주요 행사 홍보 및 기록을 위한 현장스케치 영상 촬영 및 야외 현장라이브 중계 등 영상 제작 필요
 - 당해 대규모 행사 스케치 영상 부재 시 익년 사전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자료 부재로 이어짐
- 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다국어) 필요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 친선결연, 책의도시 등 글로벌 또는 전국 단위 행사시 시를 대표할 홍보영상 제작
- 공식 캐릭터 인형탈 관리비 : 세척, 수선 등 포수·포미 인형탈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예산증감 사유

- 필요한 연중 시정홍보영상물 기획·제작을 위하여 2024년 최종 예산액 규모로 상정
- 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다국어) 추가 상정 : 120,000천원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事成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2024. 12. :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계약 추진 및 제안서 평가
 - 2025. 1. ~ 2025. 12. : 유튜브 채널 운영·기획 및 영상 콘텐츠 제작
 - 2025. 1. ~ 2025. 12. : 각종 행사·회의 등에 활용 가능한 시 홍보 동영상 제작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0편 제작 / 유튜브 구독자 수 : 11,403명 -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53편(기획영상 35편, 쇼츠 12편, 라이브 중계 6편) -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 7편 · 제25회 김포시민의 날 티저 홍보영상 : 1편 · 2023 시정홍보 CF 영상 : 2편 · 김포시민 및 직원 대상 송년 이벤트&인터뷰 : 2편 등 · 김포시 기업지원 사업 홍보영상 : 1편 · 교통·관광 특수촬영 영상 제작 : 1편
2024	○ 59편 제작 / 유튜브 구독자 수 : 13,881명 -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51편(기획영상 31편, 쇼츠 15편, 라이브 중계 4편, 인플루언서 협업 1편) -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 8편 · 시민의 날 상영 국제스케이트장 홍보 영상 : 1편 · 축제/행사 스케치 및 시민 인터뷰 영상 : 4편 · 애기봉 야간점등 행사 전광판 모션 광고 : 1편 · 2024 김포-서울 통합 TV CF : 1편 · 2024 생성형 AI 활용 도시 브랜드 홍보 영상 : 1편
2025	○ 4편 제작 / 유튜브 구독자 수 : 14,055명 - 김포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9편(기획쇼츠 1편, 자체제작 쇼츠 8편) · 애기봉 버스 노선 확대 홍보 쇼츠 : 1편 · 2025년 달라지는 김포시 행정제도 쇼츠 : 8편 등 -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 3편 · 제13회 김포한강마라톤 홍보 영상 : 1편 · 제27회 김포 시민의날 기념행사 홍보 영상 : 2편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2,100	190,056	-	22,044	
2024	213,700	197,752	-	15,948	
2025	107,150	42,500	-	64,650	3.20.기준 집행현황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홍보기획관	영상미디어팀장 이지은	담당자	행정8급 윤치웅 행정8급 신지유	전화	2328 2086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감사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1식		
사업목적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 구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해당조례	김포시 감사규칙	제1조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200	19,200	17,200	0	2,000	1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00	19,200	17,200		2,000	1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201-01 사무관리비	◎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사무용품 구입비 [당초] 2,000천원 [변경] 4,000천원 (* 현 집행잔액 : 174천원)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가격정보지 구독료 지급 : 1,100,000원 ·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사무용품 구입 : 2,900,000원 - 2025년 경기도 종합감사 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포함 ◎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행정장비 임대료(12,000천원) · 가구 등 임대료 : 8,700,000원 · 컴퓨터 등 임대료 : 3,000,000원 · 전기 배선 설치료 : 300,000원 ◎ 외부전문가 감사수당(3,200천원) · 100,000원*4명*8일 : 3,200,000원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가구, 행정장비 등 임대료 증가로 인한 자체감사, 타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상설감사장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부족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준비 비용(임대료 및 사무용품 구입) 증가
 -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기간 확대에 의한 가구 등 임대 기간 증가
(2020년) ‘20. 10. 12. ~ ‘10. 29. [14일간]
(2025년) ‘25. 3. 25. ~ ‘ 4. 23. [17일간]
 - 2020년 대비 대여 가구 품목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단위 : 원)

구분	2020년	2025년	2020년 대비 증가액
가구 대여비	6,297,500	8,700,000	2,402,500

- 2024년 대비 2025년 종합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기간 확대
 - 2024년 5개 기관에 대하여 30일간 실시하였으나, 2025년 8개 기관에 대하여 39일간 실시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일상감사·계약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가격정보지 구독료 지급
 - 2025. 2. 통진읍·고촌읍 종합감사 실시
 - 2025. 3. 2025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준비(가구 용역 계약, 행정장비 대여 및 사무용품 등 준비)
 - 2025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종합·특정감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종합 및 특정감사 10회 실시 · 공직기강 자체감사 5회 실시
2024	· 종합 및 특정감사 12회 실시 · 공직기강 자체감사 5회 실시
2025	· 종합감사 1회 실시 · 공직기강 자체감사 1회 실시 · 2025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40	10,228	-	812	
2024	5,200	4,552	-	648	
2025	12,000	2,281	-	9,71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사관	감사팀장 이영권	담당자	행정7급 김승훈	전화	2075
-----	-----	----------	-----	----------	----	------

기획조정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예산법무과

공모사업 활성화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교육 진행 1식, 공모사업 보고회 개최 1회		
사업목적	맞춤형 공모사업 과제발굴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해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	제5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서는 매년 1부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 담당팀장 등을 공모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모담당 공무원은 상급기관의 동향을 수시 파악·분석하여 시 정책방향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4,000	0	0	24,000	2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4,000	0	0	24,000	2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0	
공모사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 공모사업 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경정(22,000천원) - 기정(0천원)	= 22,000	
		· 2026 공모사업 보고회 추진 경비	= 1,000	
	303-01 포상금	· 2026 공모사업 보고회 우수부서 시상금	= 1,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본예산 공모사업 관련 직원교육 명목 예산 3,000천원 반영되어 있는 바, 해당 예산으로 효율적인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기대하기 어려움
- 객관적인 김포시 환경분석과 다양한 공모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모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사업별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 선정 공모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보고회를 통해 과제의 정책적합성, 재정영향성, 부서의 공모사업 준비도를 평가해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이를 통해 담당부서의 책임감 부여 및 공모사업 추진 동기부여

□ 예산증감 사유

- 실질적인 컨설팅 및 교육추진을 위해 8주과정 컨설팅 비용으로 증액
- 신규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 실시를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과 외부위원 심사수당 및 기타 부대경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25. 6. : 하반기 응모 공모사업 시범 컨설팅 실시(사업계획서 작성 코칭)
 - 2025. 8. : 컨설팅 업체 계약체결
 - 2025. 9.~ : 컨설팅 및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8주간)
 - 2025. 11. : 최종 컨설팅 결과 보고(2026 추진 공모사업 과제 확정)
 - 2025. 12. : 2026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 실시

○ 공모사업 컨설팅 사업계획(안)

■ 맞춤형 국비확보 전략 컨설팅 추진 개요 ■

- 가. 컨설팅명 : 2026년 김포시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컨설팅
- 나. 컨설팅기간 : 25. 9월 중 ~ 11월 중(8주간 진행 / 시작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다. 컨설팅대상 : 26년 공모사업 추진 사업부서 전체
- 다. 컨설팅내용 :
 - 김포시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한 1차 공모과제 선정
 - 1차 공모과제 담당부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한 세부 과제 선정
(단기, 중장기, 지속 과제로 분류 선정)
 - 공모사업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및 주요사업 대상 사업별 맞춤형 코칭
 - 26년 국가예산(안) 공모사업 반영여부 검토 후 최종 공모사업 과제 확정
- 라. 컨설팅비용 : 22,000천원(부가세 포함, 설계금액 기준)
- 마. 기대효과 :
 - 객관적 환경분석에 따른 맞춤형 공모사업 과제 발굴
 - 공모사업별 사업계획서 코칭으로 공모사업 당선가능성 제고
 - 단기, 중장기 과제 구분으로 향후 체계적 공모사업 추진 토대 마련

○ 2026년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 사업계획(안)

■ 2026년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안) ■

- 가 .일 시 : 2025년 12월 중
- 나 .장 소 : 본관 대회의실(변경될 수 있음)
- 다 .대 상 : 2026년 공모사업 추진 주요부서
- 라 .내 용 : 공모사업 추진 이유, 사업계획, 당선을 위해 준비중인 사항 등
- 마. 심사위원 :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 바. 심사기준
 - 정책적합성 : 시정운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재정영향성 : 공모당선 후 시비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인지 여부
 - 준비성 :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등 응모 준비성 평가
- 사. 지원금 배분
 - 최우수 1개부서 : 50만원(포상 30만원, 공모사업 자료제작 지원 등 20만원)
 - 우수 2개부서 : 각 25만원(포상 15만원, 공모사업 자료제작 지원 등 10만원)
 - 장려 4개부서 : 각 15만원(포상 10만원, 공모사업 자료제작 지원 등 5만원)
- 아. 기대효과
 - 컨설팅 결과 선정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공모사업 추진 공식화 및 담당부서 책임감 부여
 - 우수부서 시상진행으로 담당자의 공모사업 추진 동기부여
 - 단순포상 지원이 아닌 실무추진 지원경비 지급을 통해 실제 공모사업 추진과 연계관리 가능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신규사업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예산2팀장 김선아	담당자	행정7급 박태선	전화	2109
-----	-------	-----------	-----	----------	----	------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법률정보이용료		
사업목적	소송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승소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5조
		1. 소송수행부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수행부서에 제소할 사안에 따라 각종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72,500	366,037	357,531	1,100	7,406	-106,46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72,500	366,037	357,531	1,100	7,406	-106,46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406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법률정보 이용료 : 7,405,200원*1회	= 7,406	

□ 예산요구 사유

- 법률정보 이용료 : 각종 법령 및 판례, 주석서 등 법률정보 제공으로 인허가 및 소송업무 수행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행정 및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법률정보 이용료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뢰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법률정보 사이트 로엔비, (주)툼슨로이터코리아 7개월분 이용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민사·행정소송 수행 지원 : 고문변호사 자문 297건, 변호사 소송위임 63건(민사 42, 행정 21) - 법률정보 이용료 : 수의계약을 통한 이용권 계약 10,828천원
2024	- 민사·행정소송 수행 지원 : 고문변호사 자문 386건, 변호사 소송위임 61건(민사 42, 행정 19)
2025	- 민사·행정소송 수행 지원 : 고문변호사 자문 21건, 변호사 소송위임 40건(민사 22, 행정 18)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4,000	303,135	-	90,865	
2024	472,500	406,560	-	65,940	
2025	358,631	64,778	-	293,853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장 장은길	담당자	행정8급 김나영	전화	2044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스마트도시과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3로 326
사업규모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사업목적	전산실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로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구분	■(신규 연례) □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김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위임규정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1,500	278,000	228,000	0	50,000	206,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1,500	278,000	228,000		50,000	206,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 50,000,000원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2014년 도시안전정보센터 개소 시 도입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 장비, 전산실과 상황실 내 기반 시설들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장비 교체 필요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교체 주기 5년 초과)

□ 예산증감 사유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50,000천원 증)
 - 배터리 교체주기(5년) 초과(2019년 교체), 장비 중단 시 통합관제센터 전산실 전원공급 중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2024.11 완료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24.09~2024.11 :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 2025.04~2025.09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2024. 4. : 유관기관 연계망 노후 방화벽 교체 완료(2대), 상황실 관제용 모니터 교체 완료(24대) - 2024. 5. : 도로방범CCTV 서버 교체 완료(7대)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1,500	71,466	-	34	
2025	228,000	-	-	228,0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도시안전정보센터팀장 곽수진	담당자	전산7급 이상운	전화	4958
-----	--------	----------------	-----	----------	----	------

경제국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일자리정책과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4.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김포시 사우중로11번길9)
사업규모	노동법률 상담·교육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목적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 강화 및 노사 상생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노동자 권익·생활 편익 증진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노동 관련 법률상담 5.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31,679	0	0	31,679	31,679	
국비		28,510			28,510	28,510	
도비		0				0	
시비		3,169			3,169	3,16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679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상담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공인노무사 인건비 - 인건비 : 3,240,000원*1명*7월20일 - 사회보험료 : 24,770,000원*13% = 28,037	28,037	
	201-01 사무관리비	· 교육용품 구입 및 교재 제작비 : 1,500,000원 · 현수막 제작 및 홍보비 : 1,962,000원 = 1,500 = 1,962	1,500 1,962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노동교육 참석자 다과 구입 : 2,000원*90명 = 180,000원 = 180	180	

□ 예산요구 사유

- 다양한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공모 신청 및 선정
 - 2025. 4. : 기간제근로자(공인노무사) 채용
 - 2025. 5. ~ 12. : 사업추진(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맞춤형 노동법 교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영옥	담당자	행정7급 노경숙	전화	2275
-----	--------	-------------	-----	----------	----	------

새일센터 지정운영(운영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김포한강4로 125)
사업규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3,390	34,692	39,628	0	-4,936	1,302	
국비	16,695	17,346	19,814	0	-2,468	651	
도비	8,347	8,673	9,907	0	-1,234	326	
시비	8,348	8,673	9,907	0	-1,234	325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36	
새일센터 지정운영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 경정(11,200,000원)-기정(15,100,000원) = -3,900 · 성과운영비(사업운영비) : 경정(2,692,000원)-기정(7,628,000원) = -4,936		
	301-14 기타보상금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사비 - 취·창업동아리 강사비 : 244,000원*10회 = 2,440,000원 - 양성평등 교육 강사비 : 160,000원*6회 = 960,000원 - 일촌기업 협력망 강사비 : 500,000원*1회 = 500,000원	3,900	

☐ 예산요구 사유

-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유영비 조정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성과운영비 확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사후관리 사업 간 예산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여성가족부)
 - 2025. 1. ~ 2. : 사업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3. :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 2025. 3. ~ 12. : 새일센터 운영 및 세부사업 집행
 - 2025. 12. ~ 2026. 1. :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력단절여성 취업실적 : 알선건수 1,614건 / 취업자수 875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채용박람회,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기업체 사후관리 : 기업환경 개선사업 3개 업체, 기업체 협력망 운영 등
2024	○ 경력단절여성 취업실적 : 알선건수 1,587건 / 취업자수 781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채용박람회,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기업체 사후관리 : 기업환경 개선사업 2개 업체, 기업체 협력망 운영 등
20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실적 : 알선건수 283건 / 취업자수 181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500	31,821	-	1,679	
2024	33,390	33,200	-	190	
2025	39,628	473	-	39,155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이금주	전화	5549
-----	--------	-------------	-----	----------	----	------

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김포한강4로 125)
사업규모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7,946	69,657	95,440	0	-25,783	21,711	
국비	47,946	69,657	95,440	0	-25,783	21,711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783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	·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 경정(20,247,000원)-기정(40,440,000원) =	-20,193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료, 훈련생 보험료 : 경정(1,010,000원)-기정(1,400,000원) =	-39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 경정(1,150,000원)-기정(1,600,000원) =	-450	
	301-14 기타보상금	· 직업교육훈련 강사비 : 경정(31,150,000원)-기정(52,000,000원) =	-20,850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3개 과정 교육일수별 금액) : 5,000원*20명*26일 = 2,600,000원 : 5,000원*20명*38일 = 3,800,000원 : 5,000원*20명*37일 = 3,700,000원 -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참여촉진수당 : 100,000원*20명*3개 과정= 6,000,000원 =	16,100	

□ 예산요구 사유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 과정 심사 확정(3개 과정)에 따른 과정별 운영비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여성가족부)
 - 2025. 2. : 직업교육훈련 심사 결과 통보
 - 2025. 3. :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 2025. 4. ~ 10.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2025. 12. ~ 2026. 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5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총97명, 수료인원 총97명 - 의류엠디(MD) 스타일전문가 양성과정, AI데이터라벨러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실무역량강화 Excel 스킬 업, 산모 영유아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2024	○ 3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총60명, 수료인원 총60명 - 치매예방전문가 양성과정, AI데이터라벨러 전문가 양성과정, 세무회계 실무과정
2025	○ 3개 과정 운영(예정), 교육인원 총60명(예정) -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온라인 실무 사무원 과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6,904	74,315	-	2,589	
2024	47,946	46,925	-	1,021	
2025	95,440	2,540	-	92,9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이금주	전화	5549
-----	--------	-------------	-----	----------	----	------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김포한강4로 125)
사업규모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사업목적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기회 확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2,000	62,000	62,000	0	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18,600	18,600	18,600	0	0	0	
시비	43,400	43,400	43,40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 경정(23,960,000원) - 기정(26,000,000원)	= -2,040	
	301-14 기타보상금	· 직업교육훈련 강사비 : 경정(36,640,000원) - 기정(34,600,000원)	= 2,040	

□ 예산요구 사유

- 직업교육훈련 경기도 과정 심사 확정(2개 과정)에 따른 과정별 운영비 조정

□ 예산증감 사유

-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정에 따른 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경기도)
 - 2024. 12. ~ 2025. 1. : 고학력고속련 직업교육훈련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2.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직업교육훈련과정 심사 후 확정)
 - 2025. 4. ~ 7. : 사업집행
 - 2025. 12. ~ 2026. 1. :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2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총40명, 수료인원 총40명 -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양성과정, 스마트경리 실무자 양성과정
2024	○ 2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총40명, 수료인원 총40명 - 경리사무원 마스터 과정,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
2025	○ 2개 과정 운영(예정), 교육인원 총40명(예정) - 멀티경리사무원 양성과정, 디지털튜터 양성과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000	58,023	-	3,977	
2024	62,000	61,137	-	863	
2025	62,000	2,673	-	59,327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이금주	전화	5549
-----	--------	-------------	-----	----------	----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집단상담)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김포한강4로 125)
사업규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2,260	24,100	24,100	0	0	-18,160	
국비	42,260	24,100	24,100	0	0	-18,16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명) : 경정(2,530,000원) - 기정(3,050,000원)	= -520	
	201-01 사무관리비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 경정(13,240,000원) - 기정(12,800,000원)	= 440	
	301-14 기타보상금	· 집단상담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사비 : 경정(1,280,000원) - 기정(1,200,000원)	= 80	

□ 예산요구 사유

-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 및 사업 간 예산 조정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간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9. : 국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고용노동부)
 - 2024. 12. :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고용노동부)
 - 2024. 12. ~ 2025. 1. : 사업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2. ~ 11. : 사업 집행
 - 2025. 12. ~ 2026. 1. :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단상담 프로그램 15기수 운영 : 참여자 총204명, 수료자 총203명, 취업자 총72명 ○ 사후관리 특강 : 「리턴 투 마이 시트」 2회, 「워킹과 퍼스널컬러」 2회, 총 30명 참여
2024	○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기수 운영 : 참여자 총203명, 수료자 총203명, 취업자 총71명 ○ 사후관리 특강 : 「리턴 투 마이 시트」 2회, 「워킹과 퍼스널컬러」 2회, 총 32명 참여
2025	○ 집단상담 프로그램 1기수 운영 : 참여자 14명, 수료자 1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750	19,921	-	829	
2024	42,260	40,337	-	1,923	
2025	24,100	9,142	-	14,958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이금주	전화	5549
-----	--------	-------------	-----	----------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2023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023년도 미래인재 양성사업 지원 기업 2개소 및 청년 2인		
사업목적	지역특화 및 정보기술 분야 관내 중소·강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매칭으로 지역·청년 상생 혁신성장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일자리 추진·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3,236	13,251	5,733	0	7,518	-39,985	
국비	32,869	6,625	3,583	0	3,042	-26,244	
도비	6,110	1,988	645	0	1,343	-4,122	
시비	14,257	4,638	1,505	0	3,133	-9,619	
기타	12,502	0	1,433	0	-1,433	-12,502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2023년)	201-01 사무관리비	· 기타지원 : 경정(3,251,000원)-기정(0원)	= 3,251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인센티브(3년차) : 경정(10,000,000원)-기정(0원)	= 1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김포청년 미래인재 양성사업 : 경정(0원)-기정(5,733,000원)	= -5,733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 미래인재 양성사업 선정기업 인건비(2년간 월 최대 160만원) 및 장기재직 청년 인센티브(1명)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9. : 참여기업 보조금(인건비)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 등 관리
 - 2025. 9. ~ 12. : 장기재직(3년차) 청년 인센티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1. ~ 3. : 신규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2023. 4. ~ 5. : 선정기업 현장 방문 ○ 2023. 4. ~ 12. : 참여기업 보조금(인건비) 지급 및 상·하반기 자체 점검 ○ 2023. 10. : 참여 청년 대상 워크숍 개최
2024	○ 2024. 1. ~ 12 : 참여기업 보조금(인건비) 지급 및 분기별 점검(2개소 2명) ○ 2024. 11. : 참여 청년 대상 워크숍 개최
2025	○ 2025. 1. ~ 3. : 참여기업 보조금(인건비) 지급 및 분기별 점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974	27,914	2,410	650	
2024	55,646	26,787	28,420	439	
2025	34,153	6,400	-	27,753	3.2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장 양미애	담당자	행정7급 정유정	전화	5888
-----	--------	------------	-----	----------	----	------

산업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용 한국어교육

사업기간	2025. 9. ~ 2025. 12.(예정)		사업위치	대곶문화누리관(대곶면 읍생로 83-21)	
사업규모	1개소, 80명				
사업목적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용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숙련도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3호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해당조례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범위) 제1항 제3호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3,022	0	0	13,022	13,022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13,022	0	0	13,022	13,022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22	
산업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용 한국어교육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1,400원*8시간*2명*35일(주당 2일, 4개월) · 유급휴일수당 : 91,200원*2명*18일 · 4대보험료 : 9,667,200원*14%	= 6,384 = 3,284 = 1,354	
	201-01 사무관리비	· 교재 및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비 등	= 2,000	

□ 예산요구 사유

-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용 한국어 교육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8.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교육대상자 모집
 - 2025. 9. ~ 12. : 교육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외국인고용지원팀장 김정하	담당자	행정6급 김형옥	전화	5806
-----	--------	---------------	-----	----------	----	------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반영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2025.4.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모집
 - 2025. 9. : 교육 실시(1기)
 - 2025. 10. : 교육 실시(2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외국인고용지원팀장 김정하	담당자	행정6급 김형옥	전화	5806
-----	--------	---------------	-----	----------	----	------

인력운영비(새일센터 지정운영(운영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125(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사업규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취업상담사 4명)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90,312	200,338	189,640	0	10,698	10,026	
국비	95,156	100,169	94,820		5,349	5,013	
도비	47,578	50,085	47,410		2,675	2,507	
시비	47,578	50,084	47,410		2,674	2,50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698	
인력운영비 (새일센터 지정운영 (운영지원))	304-04 공무직(무기계약) 보험료부담금등	· 취업상담사 4대보험 부담금 : 경정(19,000,000원)-기정(16,000,000원) =	3,000	
		· 취업상담사 퇴직적립금 : 경정(14,930,000원)-기정(7,232,000원) =	7,698	

□ 예산요구 사유

- 취업상담사 4대보험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인력운영비 조정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여성가족부)
 - 2025. 1. ~ 2. : 사업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3. :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 2025. 3. ~ 12. : 새일센터 운영 및 세부사업 집행
 - 2025. 12. ~ 2026. 1. :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력단절여성 취업실적 : 알선건수 1,614건 / 취업자수 875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채용박람회,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기업체 사후관리 : 기업환경 개선사업 3개 업체, 기업체 협력망 운영 등
2024	○ 경력단절여성 취업실적 : 알선건수 1,587건 / 취업자수 781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채용박람회,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기업체 사후관리 : 기업환경 개선사업 2개 업체, 기업체 협력망 운영 등
20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실적 : 알선건수 283건 / 취업자수 181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3,976	177,527	-	6,449	
2024	190,312	181,807	-	8,505	
2025	189,640	40,942	-	148,698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이금주	전화	5549
-----	--------	-------------	-----	----------	----	------

인력운영비(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김포한강4로 125)
사업규모	직업훈련 과정 훈련 운영수당(3개 과정)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50	1,530	2,160	0	-630	780	
국비	750	1,530	2,160		-630	78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30	
인력운영비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훈련운영수당 : 경정(1,530,000원)-기정(2,160,000원)	= -630	

□ 예산요구 사유

- 직업교육훈련(3개 과정) 운영종사자에게 교육기간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과정 심사 확정에 따른 운영수당 조정 및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여성가족부)
 - 2025. 2. : 직업교육훈련 심사 결과 통보
 - 2025. 3. :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 2025. 4. ~ 10.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2025. 12. ~ 2026. 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5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총97명, 수료인원 총97명 - 의류애편디(MD) 스타일전문가 양성과정, AI데이터라벨러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실무역량강화 Excel 스킬 업, 산모 영유아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2024	○ 3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총60명, 수료인원 총60명 - 치매예방전문가 양성과정, AI데이터라벨러 전문가 양성과정, 세무회계 실무과정
2025	○ 3개 과정 운영(예정), 교육인원 총60명(예정) -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온라인 실무 사무원 과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00	1,300	-	-	
2024	750	750	-	-	
2025	2,160	-	-	2,16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이금주	전화	5549
-----	--------	-------------	-----	----------	----	------

인력운영비(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집단상담))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김포한강4로 125)
사업규모	직업상담사 2명		
사업목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 능력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9,620	67,776	66,960	0	816	18,156	
국비	49,620	67,776	66,960	0	816	18,156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16	
인력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 직업상담사 4대보험 부담금(2명) - 경정(3,450,000원) - 기정(2,634,000원)	= 816	

□ 예산요구 사유

-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4대보험 부담금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예산(816천원) 4대보험 부담금으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9. : 국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고용노동부)
 - 2024. 12. :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고용노동부)
 - 2024. 12. ~ 2025. 1. : 사업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2. ~ 2025. 11. : 사업 집행
 - 2025. 12. ~ 2026. 1. :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단상담 프로그램 15기수 운영 : 참여자 총204명, 수료자 총203명, 취업자 총72명 ○ 사후관리 특강 : 「리턴 투 마이 시트」 2회, 「워킹과 퍼스널컬러」 2회, 총 30명 참여
2024	○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기수 운영 : 참여자 총203명, 수료자 총203명, 취업자 총71명 ○ 사후관리 특강 : 「리턴 투 마이 시트」 2회, 「워킹과 퍼스널컬러」 2회, 총 32명 참여
2025	○ 집단상담 프로그램 1기수 운영 : 참여자 14명, 수료자 1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1,088	68,819	-	2,269	
2024	49,620	47,851	-	1,769	
2025	66,960	10,367	-	56,593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이금주	전화	5549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지역경제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사업목적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물(조형물, 조명시설, 화재알림시설 등) 유지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상권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7항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제3항
		③ 시설물의 관리·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200	11,620	10,200	0	1,420	1,420	
국비	-	0	-	-	-	0	
도비	-	0	-	-	-	0	
시비	10,200	11,620	10,200	-	1,420	1,420	
기타	-	0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20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점검비 증액분 : 255,000원*4회(분기별) = · 전통시장(의무소독시설) 소독비 증액분 : 200,000원*2회 =	1,020 400	

□ 예산요구 사유

- 분기별 의무 점검 대상인 전통시장(양곡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점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소독시설인 전통시장의 소독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화재알림시설 점검 담당 업체 변경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견적 비용 증액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소독 대상 전통시장 증가 (3개소 → 4개소)
 - ※ 양곡시장, 양곡오라니장터시장, 통진시장 → 김포중앙시장 추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12.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전통시장(양곡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분기별 유지보수 점검 실시) · 24. 6. 전통시장 방역(양곡시장, 양곡오라니장터시장, 통진시장)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0,200	8,766	-	1,434	
2025	10,200	-	-	10,2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김정호 행정8급 손민지	전화	2563 2564
-----	-------	--------------	-----	----------------------	----	--------------

11.26.~28.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피해 상가당 700만원		
사업목적	경기도 내 사업장에 대설(2024.11.26.~11.28.)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해당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제1항제12호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4,000	7,000	0	0	7,000	-7,000	
국비	-	0	-	-	-	0	
도비	14,000	7,000	-	-	7,000	-7,000	
시비	-	0	-	-	-	0	
기타	-	0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11.26.~28.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피해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 7,000,000원*1개소	= 7,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11.26.~11.28. 대설로 인한 피해 신고일 무기한 연장[경기도 자연재난과-27685(2024.12.13.)호]
- 김포시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 추가 확정(1건)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2차 교부
[경기도 자연재난과-4485(2025.2.18.)호]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차 교부(2024.12.16.) : 14,000천원 ※ 간주처리예산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2차 교부(2025.2.18.) : 7,000천원 ※ 성립전예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29. ~ 12. 13. : 대설 피해 소상공인 피해 접수
 - 2024. 12. 16. : 도 재해구호기금 1차 교부
 - 2024. 12. 17. : 도 피해 신고마감일 무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 접수(1건)
 - 2025. 1. 21. : 명시이월액(1차 재해구호기금 14,000천원) 집행
 - 2025. 2. 18. : 도 재해구호기금 2차 교부
 - 2025. 3. 10. : 성립전 예산 편성
 - 2025. 3. 18. : 성립전예산(2차 재해구호기금 7,000천원)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11.26.~28.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 2건, 14,000천원 (명시이월)
2025	· 11.26.~28.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 1건, 7,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4,000	-	14,000	-	간주예산 명시이월
2025	14,000	14,000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김정호	전화	2563
-----	-------	--------------	-----	----------	----	------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지원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537 일원 외 1
사업규모	양곡시장 내 점포 30개소, 양곡오라니장터시장 내 점포 12개소 화재공제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목적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보상으로 상인 재기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7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① 시장은 김포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132	3,780	0	0	3,780	-3,352	
국비	-	0	-	-	-	0	
도비	3,566	1,890	-	-	1,890	-1,676	
시비	3,566	1,890	-	-	1,890	-1,676	
기타	4,754	2,520	-	-	2,520	-2,23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80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 150,000원 * 42개소 * 60%	= 3,780	

□ 예산요구 사유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가입비 지원
- 실제 납입(화재공제 특약 포함) 공제료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도 30%, 시 30%, 자부담 40%)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확정 내시('25. 3. 18.)에 따른 예산편성
- 양곡시장 30개소, 오라니장터시장 12개소 지원으로 작년 대비 수요 18개소 감소
※ '24년 개별 화재보험 가입 점포가 증가하여 화재패키지 사업을 통한 보험 가입 수요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2025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전통시장 상인회)
 - 2025. 3. : 2025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확정내시(경기도 소상공인과)
 - 2025. 3. ~ 12. :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가입비 지원
 - 2025.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양곡오라니장터시장 3개소 화재공제보험 가입비 지원
2024	양곡시장 15개소, 양곡오라니장터시장 7개소 화재공제보험 가입비 지원 (60개소 신청, 22개소 지원)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10	332	-	178	
2024	7,132	2,126	-	5,006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8급 손민지	전화	2564
-----	-------	--------------	-----	----------	----	------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소상공인연합회		
사업목적	매니저 지원을 통해 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홍보를 통한 조직 확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3,000	13,250	0	0	13,250	250	
국비	-	0	-	-	-	0	
도비	-	0	-	-	-	0	
시비	13,000	13,250			13,250	250	
기타	-	0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250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매니저 인건비 : 2,650,000원*1명*10월*50%	= 13,250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비) 13,250천원(재원비율50%)은 소상공인연합회로 직접 교부됨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 성장 견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에 소상공인연합회 김포시지부 선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팀-322(2025.2.21.)호]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모집 공고(GMR-2025-001호) 내용에 따라 매니저 월 급여 전년 대비 260만원 → 265만원으로 상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21.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모집 공고
 - 2025. 2. 4. 김포시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 신청
 - 2025. 2. 21. 공모사업 선정
 - 2025. 3.~12. 매니저 인건비 지원
 - 2026. 1.~ 2. 정산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소상공인연합회김포시지부 매니저 1명 인건비 지원
2024	· 소상공인연합회김포시지부 매니저 1명 인건비 지원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250	11,250	-	-	
2024	13,000	13,000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7급 김정호	전화	2563
-----	-------	--------------	-----	----------	----	------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김포5일장(김포시 김포대로 955)
사업규모	김포5일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목적	김포5일장 내 시설(하수도시설, 음향시설 등) 고장 및 노후화로 김포5일장 방문객 및 상인의 불편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800	15,000	0	0	15,000	6,200	
국비	-	0	-	-	-	0	
도비	-	0	-	-	-	0	
시비	8,800	15,000	-	-	15,000	6,200	
기타	-	0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401-01 시설비	· 김포5일장 하수도시설 개선 : 10,000,000원 · 김포5일장 방송음향시설 개선 : 5,000,000원	= 10,000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5일장 내 시설물(하수도시설, 음향시설 등) 관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김포5일장 내 시설물 고장 및 노후화로 5일장 방문객 및 상인의 불편 민원 야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 2025. 12. : 김포5일장 내 시설환경 개선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5일장 부지 내 분전반 교체 및 전기 증설 공사
2024	· 김포5일장 화장실 내 세면대, 양변기 전기방열기 등 시설물 교체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000	26,990	-	10	
2024	8,800	7,920	-	880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행정8급 손민지	전화	2564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업지원과

김포시 기업지원사업 알리미 채널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기업지원사업 채널 메시지 발송		
사업목적	홈페이지 접속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기업지원 사업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 체감행정 구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정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업활동 촉진지원사업)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270	5,400	3,150	0	2,250	1,13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70	5,400	3,150		2,250	1,13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50	
중소기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 메시지 발송비용 15원*3,000명*50건	= 2,250	

□ 예산요구 사유

- 타기관 및 타부서의 홍보요청 건수 증가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90% 증가 (2025. 2월 말 기준)
- 채널 운영을 통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하여 기업지원사업의 체감도 및 참여도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홍보 건수 증가로 예산 추가 요청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9. : 채널 운영 계획수립 및 채널 개설
 - 2025. 06. : 채널 운영 상반기 운영 보고
 - 2025. 연중 : 기업지원사업 및 안내사항 카카오톡 수시 메시지 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2,478명, 홍보메시지 발송 건수 55건
2024	○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2,708명, 홍보메시지 발송 건수 76건
2025	○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2,724명, 홍보메시지 발송 건수 3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00	2,800	-	-	
2024	4,270	4,270	-	-	
2025	3,150	3,150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하세진	담당자	행정8급 정주하	전화	2285
-----	-------	------------	-----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중소기업 1,000여개사		
사업목적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정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22조
		제11조(융자조건) ⑤시장은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610,800	5,001,000	2,501,000	1,000,000	1,500,000	390,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610,800	5,001,000	2,501,000	1,000,000	1,500,000	390,2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07-08 이자보전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 375,000,000원*4회	= 1,500,000	

□ 예산요구 사유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자차액 보전사업)은 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저리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내 기업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 육성자금 지원사업 선정업체의 대출이자 지원기간(1~3년) 동안 이자차액 보전 예산이 필요하므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과년도 대출실행에 따른 이차보전확정액 지출을 위해 2025년 필요예산 부족분을 증액 요청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11. : 2025년 제1회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5.03.18. : 제1회 추경 신규 선정·지원 예산 확보(10억원)
 - 2025.03. :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변경 협약 체결(시 ↔ 협약은행)
 - 2025.05.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25.05.~12. : 육성자금 월별 신청·접수 및 지원 결정, 기업체 대출 실시
분기별 관내 대출 협약은행 이차보전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융자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시설자금 10억 원 이내 - 지원금리 : 0.5~3.0% - 지원실적 : 938개사 (신규 237개사 + 기존 701개사)
2024	- 융자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시설자금 10억 원 이내 - 지원금리 : 0.5~3.0% - 지원실적 : 695개사 (신규 104개사 + 기존 591개사)
2025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규 접수 및 지원 예정(25.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70,800	4,589,160	-	481,640	
2024	4,610,800	4,220,424	-	390,376	
2025	3,501,000	400	-	3,500,6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하세진	담당자	행정8급 강도연	전화	2316
-----	-------	------------	-----	----------	----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중소기업 1,000여개사		
사업목적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 경제활동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정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61,000	895,000	500,000	0	395,000	3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61,000	895,000	500,000	0	395,000	3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5,00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306-01 출연금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 395,000,000원	= 395,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지원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우리 시 기업의 선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출연 요청액 확보가 필요하여 2025년 예산 부족분을 증액 요청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 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14.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입금 협조(경기도→김포시)
 - 2025.02.19. :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교부(김포시→경기도)
 - 2025.01.~12.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융자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0억 원 내외 - 지원금리 : 0.3~2.5% - 대출실행 : 966개 업체, 116,821,000천원 지원
2024	- 융자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0억 원 내외 - 지원금리 : 0.3~2.5% - 대출실행 : 695개 업체, 93,991,000천원 지원
2025	- 융자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0억 원 내외 - 지원금리 : 0.3~2.5% - 대출실행 : 106개 업체, 16,498,000천원 지원(2월말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55,000	855,000	-	-	
2024	861,000	861,000	-	-	
2025	500,000	500,000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하세진	담당자	행정8급 강도연	전화	2316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

사업기간		2025. 4. ~ 2025. 9.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산업단지(학운5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		
사업목적		준공된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신뢰성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4, 제26조의15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4(조성원가의 산정 및 확정시기) ③ 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투입이 필요하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의15(가격정산) ①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전에 조성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0,000	11,000	0	0	11,000	-9,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11,000			11,000	-9,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000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	201-01 사무관리비	○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 용역 · 인건비 - 책임연구원 : 123,530원/일 * 1인 * 8일 = 988,240원 - 연 구 원 : 94,720원/일 * 1인 * 60일 = 5,683,200원 - 연구보조원 : 63,320원/일 * 1인 * 40일 = 2,532,800원 · 직접경비 : 인쇄비 (표지, 본문), 여비 = 100,000원 · 기타 :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 1,695,760원	= 11,000	

□ 예산요구 사유

- 학운5산업단지(준공일 : '24. 7. 17.)의 조성원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해 공인된 기관(기업)의 조성원가 검증 필요
- 실시계획승인권자(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을 위하여 관리기관(김포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조성원가 확정 및 가격 정산 지연 시 입주기업체의 금전적 피해(이자 비용 등)가 발생되어 신속한 조성원가 확정을 통해 입주기업체와 사업시행자 간 가격 정산 시 신뢰성 확보 및 분쟁 사전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성원가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된 기관의 검증 수수료(인건비 상승 등) 반영
- 조성원가 검증 대상 산업단지가 2024년 2개소 대비 1개소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7. : 학운5 일반산업단지 준공('24. 7. 17.)
 - 2025. 3. : 학운5 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보고서 자료 제출(사업시행자 → 김포시)
 - 2025. 7 : 조성원가 검증 요청(학운5)
 - 2025. 9. : 학운5 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 및 수수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4. 6. : 학운6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 준공 - 2024. 11. : 대포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 준공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000	20,000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정일	담당자	시설7급 박희진	전화	2810
-----	-------	--------------	-----	----------	----	------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사업기간	2023. 1. ~ 2025. 6.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일원
사업규모	L=445m, B=19.75m (지하차도 개설, 왕복 4차로)		
사업목적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의 교통체증 조기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5조 제1항
	제35조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500,000	13,500,000	3,000,000	0	10,500,000	3,0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500,000	13,500,000	3,000,000	0	10,500,000	3,0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500,000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부담금(6차분) - 공사비 : 10,500,000,000원	= 10,50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교통 정체 조기 해소 및 지역 주민 교통 편의 증진 도모
- 교차로 평균지체시간 83.9초 ⇒ 40.3초 (통행속도 2배 증가)
- 2025년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비 반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입체화사업(지하차도) 공사 추진 중('25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으로 공정률에 따라 2025년도 공사비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8. :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사업비 분담 협의 (경기도↔김포시)
 - 2021. 9. : 지하차도 실시 설계 추진 (경기도)
 - 2022. 10. : 지하차도 실시 설계 완료
 - 2022. 12. : 2023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정 (35억)
 - 2023. 1. : 착공
 - 2023. 12. : 2024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정 (15억)
 - 2025. 6. :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1,000,000	17,500,000	3,000,000	3,000,000	0	10,5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29,500,000	16,000,000	3,000,000	3,000,000		10,500,000	0	
	감리비	1,500,000	1,500,000						
	부대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1. : 착공 - 2023. 10. : 2023년 1차년도 사업비 7,000백만원 납부 (김포시 ⇒ 경기도) - 2023. 12. : 2024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정(1,500백만원)
2024	- 2024. 4. : 2024년 2차년도 사업비(일부) 3,500백만원 납부 (김포시 ⇒ 경기도) - 2024. 12. : 2024년 3차년도 사업비(일부) 4,000백만원 납부 (김포시 ⇒ 경기도) - 2024. 12. : 2024년 4차년도 사업비(일부) 3,000백만원 납부 (김포시 ⇒ 경기도)
2025	- 2025. 2. : 2025년 5차년도 사업비(일부) 3,000백만원 납부(김포시 ⇒ 경기도) - 2025. 3 : 공정률 90.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000,000	7,000,000	-	-	
2024	10,500,000	10,500,000	-	-	
2025	3,000,000	3,000,000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투자유치과	사업규모	L=445m, B=19.75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0,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정일	담당자	시설7급 정윤희	전화	2807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식품안전과

식품접객업소 간판 등 지원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하성면 태산로3
사업규모	※ 김포시 관내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1개소		
사업목적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전업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업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전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500	0	0	2,500	2,500	
국비		1,250			1,250	1,250	
도비		0				0	
시비		1,250			1,250	1,2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	
식품접객업소 간판 등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식품접객업소 간판설치비: 2,500,000원*1개소 =	2,500	

□ 예산요구 사유

- 개식용 종식법(24. 2. 6. 공포)에 따른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
 -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11개소 전업 지원 예정(2027. 2. 7.)
 - 경기도 식품안전과-4906 (2025. 3. 13.)호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로 2025년 식품접객업소 1개소 전업 지원
(시설·물품 교체 지원 : 간판 및 메뉴판 등 교체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식품접객업소 간판 등 지원)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4.04.~04.05. :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현황 조사
 - 2024.04.15.~04.26. :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접수
 - 2024.05. : 운영계획서 제출(경기도 식품안전과)
 - 2024.05.07.~07.12. :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접수
 - 2024.08. : 이행계획서 제출(경기도 식품안전과)
 - 2025.01.~12. :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1개소 전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장 함문선	담당자	보건9급 정유미	전화	2214
-----	-------	------------	-----	----------	----	------

교육문화국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교육청소년과

(재)청소년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중봉청소년수련관 등)
사업규모		중봉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5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사업목적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685,546	10,441,367	10,427,447	0	13,920	1,755,82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685,546	10,441,367	10,427,447		13,920	1,755,82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920	
청소년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풍무청소년문화의집 경정(301,209,000원)-기정(296,209,000원) =	5,000	
		· 청소년수련원 경정(1,183,072,000원)-기정(1,174,152,000원) =	8,92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재단 목적사업 수행
-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시민·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풍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상담치료사업 운영에 따른 독립상담실 방음공사비 5,000천원 편성
- 청소년수련원 : 고장으로 이용 불가한 인공암벽 안전장치(오토빌레이) 교체비 8,920천원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의결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12. : 분기별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4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5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554,493	9,248,744	-	305,749	
2024	8,685,546	8,220,292	-	465,254	
2025	10,427,447	5,603,731	-	4,823,716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7급 전지현	전화	2595
-----	--------	-----------	-----	----------	----	------

성인문해교육 운영(보조)

사업기간	2025. 7. ~ 11.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2, 김포시 평생학습관
사업규모	4개반, 60명 내외		
사업목적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평생교육법	제39조 제1항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5조
		제15조(성인문해교육) 시장은「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거나 교육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비영리 법인에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000	7,000	0	0	7,000	-1,000	
국비	4,000	3,500			3,500	-500	
도비		0				0	
시비	4,000	3,500			3,500	-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성인문해교육 운영(보조)	201-01 사무관리비	·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 1,000,000원	= 1,000	
	301-14 기타보상금	·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 강사 : 40,000원*2명*3시간*10회*2개반 =4,800,000원 - 실습보조강사 : 20,000원*2명*3시간*5회*2개반 =1,200,000원	= 6,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2025.03.26.)에 따른 시비 대응 투자액 편성
- 일상생활 중 다양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2025.03.2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교육부 제2025-13호)
 - 2025.02.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25.03. : 공고 선정 결과 알림
 - 2025.04. : 국비 신청 및 교부
 - 2025.07.~11. : 사업추진
 - 2025.12.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기간 : 2023. 7월~12월 - 사업장소 : 복지관, 도서관, 학습자 가정 - 사업대상 : 비문해·저학력 성인, 다문화(이주여성) - 참여인원 : 6개소, 30명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2024	- 사업기간 : 2024. 7월~11월 - 사업장소 : 김포시 평생학습관 글꽃학교 - 사업대상 : 비문해·저학력 성인 - 참여인원 : 60명 - 주요내용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5	-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00	15,369	-	631	
2024	8,000	7,557	-	443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정명희	담당자	행정7급 최정화	전화	1946
-----	--------	------------	-----	----------	----	------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2(김포시 평생학습관)
사업규모	평생학습관		
사업목적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4조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98,760	477,883	442,243	0	35,640	79,12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98,760	477,883	442,243		35,640	79,123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5,640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부담금 : 경정(37,860,000원)-기정(42,143,000원) = ·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 =	-4,283 39,923	

예산요구 사유
○ 평생학습 온라인 강좌 운영을 위한 도-시군 지식(GSEEK)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 납부 필요

예산증감 사유
○ 강좌 신청을 위한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운영부담금 확정금액 감액 조정
○ 경기도 지식(GSEEK)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 납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2021.3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정규강좌 운영(3기, 기수별 15주)
 - 2025. 01. ~ 12. : 단기특강(2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교육기간 : 2023.2~12월 - 교육강좌 :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정보화 등 56개 강좌 - 교육운영 : 3기운영(기수별 15주), 단기특강 및 역량강화(강사·시민)교육 등
2024	- 교육기간 : 2024.2~12월 - 교육강좌 :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정보화 등 59개 강좌 - 교육운영 : 3기운영(기수별 15주), 단기특강 및 역량강화(강사·시민)교육 등
2025	- 교육기간 : 2025.2월 - 교육강좌 :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정보화 등 53개 강좌 - 교육운영 : 1기운영(12주)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870	371,126	-	29,744	
2024	398,760	359,946	-	38,814	
2025	442,243	81,198	-	361,045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정명희	담당자	행정9급 정인영	전화	5149
-----	--------	------------	-----	----------	----	------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사업기간	2025. 4. ~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2(김포시 평생학습관)
사업규모	평생학습관		
사업목적	평생학습관 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항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3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6,820	90,482	75,782	0	14,700	-16,3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6,820	90,482	75,782		14,700	-16,33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700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수강용 책상 교체 : 350,000원*42개	= 14,700	

□ 예산요구 사유

- 평생학습관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수강용 책상 교체

□ 예산증감 사유

- 평생학습관 수강용 책상 20년 이상(구입 일자 : 1998.6.17.) 노후화 및 부품 파손으로 교체 필요
- 2024년 이전 개관 시 수강용 책상 일부(한글교실) 교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평생학습관(지하1층~지상1층) 시설 유지관리
 - 2025.02 : 비디오프로젝터 6대 구입 및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평생학습관 유지보수 용역(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무인경비 등) 실시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장치 유지관리 - 평생학습관 방수 공사 및 냉온수기 기계 세관 공사 실시
2024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유지관리
2025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유지관리 - 비디오프로젝터 6개 구입 및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7,206	215,315	-	41,890	
2024	106,820	92,804	-	14,016	
2025	75,782	49,725	-	26,057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정명희	담당자	행정7급 유승신	전화	5823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문화예술과

김포문화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아트홀, 아트빌리지 등
사업규모	김포문화재단 운영 및 시설 보수 개선, 목적 사업 등		
사업목적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081,160	11,691,936	11,561,936	0	130,000	1,610,77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81,160	11,691,936	11,561,936		130,000	1,610,77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0	
김포문화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일반관리비 : 경정 9,052,136,000원 - 기정 8,922,136,000원 =	13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아트홀 무대조명 객석등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일반관리비(130,000천원)
 - 아트홀 무대조명 객석등 교체 공사 130,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의결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출연금 지급 및 연중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시설운영(김포아트홀, 김포아트빌리지, 통진두레문화센터, 월곶생활문화센터, 김포국제조각공원, 김포평화문화관, 보구꽃작은미술관) - 문화예술 전시, 공연 기획 및 운영
2024	- 시설운영(김포아트홀, 김포아트빌리지, 통진두레문화센터, 월곶생활문화센터, 김포국제조각공원, 김포평화문화관, 보구꽃작은미술관) - 문화예술 전시, 공연 기획 및 운영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593,961	9,499,026	-	1,094,935	
2024	10,081,160	8,679,307	90,000	1,311,852	
2025	11,561,936	7,000,000	-	4,561,936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이풍주	담당자	행정7급 신승호	전화	2364
-----	-------	----------	-----	----------	----	------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체
사업규모	문화자치 활동가 20명 선발, 문화인력 양성교육 3회, 10개팀 문화프로젝트 기획 시행, 성과공유회 개최		
사업목적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0,000	70,000	0	0	70,000	-30,000	
국비		0				0	
도비	50,000	35,000			35,000	-15,000	
시비	50,000	35,000			35,000	-1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공통] · 문화코디네이터 인건비 : 11,400원*1명*8시간*2일*27주 = 4,925 · 홍보물 제작 : 1,000,000원*4회 = 4,000 · 기록영상 및 백서 제작 : 10,000,000원*1회 = 10,000 · 회의식대 : 9,000원*5명*10회 = 450 · 케이터링 : 1,000,000원*1회 = 1,000		
		[문화자치 역량강화] · 교육강사 : 100,000원*2명*1회 = 200 · 기획워크숍 강사: 310,000원*2명*3회 = 1,860 · 교육운영비 : 100,000원*3회 = 310		
		[문화자치 활성화] · 공모심사 : 60,000원*2명*4시간 = 480 · 프로젝트 컨설팅 : 100,000원*10팀*1회 = 1,000 · 문화정원 프로젝트 : 3,500,000원*10팀 = 35,000		
		[문화자치 확산] · 성과공유 및 마켓 운영 : 5,775,200원*1회 = 5,775 · 마켓부스 등 임차 : 5,000,000원*1회 = 5,000		

□ 예산요구 사유

-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지역의제 발굴, 정책제안,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제고, 문화자치활성화 등 문화사업추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3.2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
 - 2025. 3. : 인터뷰 심사(경기도 심사), 최종사업 선정
 - 2025. 4. : 도비 교부 및 2회추경 예산 편성, 김포시-김포문화재단 사업위탁 협약 및 사업착수
 - 2025.12. : 성과공유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 시민활동가 25명 선발, 문화자치 정례회의 17회 - 문화자치 역량강화 : 시민 역량 강화 교육 9회 100명, 포럼 3회 260명 - 문화자치 활성화 : 시민기획 프로젝트 5건 1,703명, 지역문화상품 공모전 2건 개발
2024	- 문화자치 역량강화 : 시민 역량 강화 교육 5회 34명 교육만족도 87점 - 문화자치 활성화 : 시민기획 프로젝트 9건 3,426명, 성과공유회 : 지역예술인 및 공방 등 연계협력 34건 2,742명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0,000	91,842	-	28,158	
2024	100,000	97,113	-	2,883	
2025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이풍주	담당자	행정7급 신승호	전화	2364
-----	-------	----------	-----	----------	----	------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사업기간	2025. 5 ~ 8	사업위치	김포미디어아트센터
사업규모	김포시 독립운동역사 미디어콘텐츠제작, 전시회(1개월)		
사업목적	김포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고증자료 아카이빙으로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고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보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5호
		①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호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50,000	0	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50,000			50,000	50,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김포시 독립운동역사 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전시회	= 47,000	
		· 홍보 현수막, 소모품 등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김포시 독립운동역사 콘텐츠를 제작하여 특별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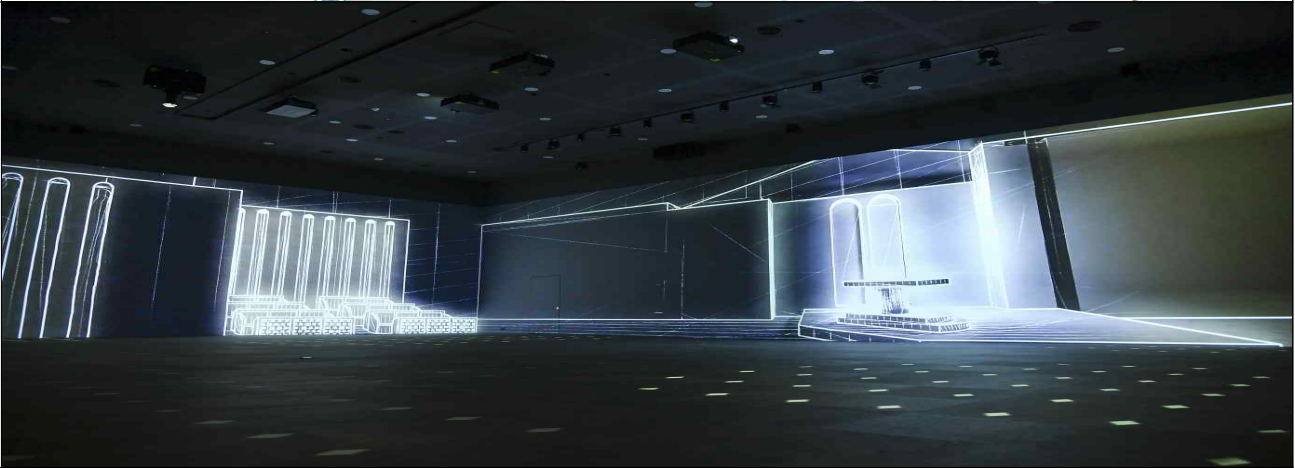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공모신청서 제출
 - 2025. 2. : 공모사업 선정
 - 2025. 3. : 도비 5천만원 교부
 - 2025. 4. : 2회 추경 예산편성
 - 2025. 5. ~ 7. : 김포시 독립운동역사 미디어 콘텐츠 제작
 - 2025. 8 : “김포시 독립운동역사 문화예술로 빛나다!” 특별 전시회 개최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문화예술과	사업규모	미디어콘텐츠 제작, 전시회 운영 1개월	2회추경 요구액 (천원)	50,000
부기명 (세부사업)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사업위치	김포미디어아트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이풍주	담당자	행정7급 신승호	전화	2364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관광진흥과

김포함상공원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110-36
사업규모	김포함상공원 일원		
사업목적	공원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명소 역할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당조례	김포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제13조(예산확보 등) 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6,287	60,240	45,000	0	15,240	3,953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56,287	60,240	45,000	0	15,240	3,953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240	
김포함상공원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동력비(전기요금) : 경정(60,240,000원) - 기정(45,000,000원)	= 15,24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주요 관광지 김포함상공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에 따른 야외 분수시설 확대에 유지·관리비 증액
 - 변압기 용량증설(400kw)로 인한 기본요금 및 사용량 증가
 - 분수대 전력량(가동기간 : 2025년 5~10월, 펌프 66kw 및 미디어&조명 24kw)
- (2025. 3. 20.기준) 동력비 17,598천원 집행 (집행율 : 39.1%)
 - 2025년 9월중 동력비 소진 예상으로 예산부족분 요구

※ 최근 3년간 전기 사용량 및 금액

(단위 : kw,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3년	사용량	34,793	60,189	38,158	13,155	8,501	8,114	8,854	12,437	18,069	15,101	7,241	14,930	239,542
	금 액	6,068	9,781	7,269	2,873	2,169	2,144	2,528	3,386	4,508	3,410	2,049	3,690	49,875
24년	사용량	26,618	24,435	23,064	14,830	9,398	8,162	12,756	15,245	24,521	19,978	9,752	8,549	197,308
	금 액	5,721	5,256	5,516	3,316	2,397	2,192	3,407	4,024	5,834	4,165	2,429	2,430	46,687
25년	사용량	27,631	26,359	29,609	13,993	11,950	11,138	13,805	16,841	22,295	20,540	10,497	13,740	218,398
	금 액	5,959	5,586	6,053	3,095	4,333	4,218	5,018	5,721	5,018	5,941	4,238	5,060	60,240

- * 집행예정액(2025. 4.~12.) : 42,642천원 (집행잔액 27,402천원 대비 15,240천원 증액 필요)
- **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행사 운영 예정으로 행사추진시 야외 분수대 가동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2. : 함상공원 야외광장 내 멀티미디어 분수대 설치
 - 2025.01. : 김포함상공원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교부
 - 2025.07. : 함상공원 운영 동력비 부족분 2회 추경 요구
 - 2025.08.~12. : 대행사업비 추가 교부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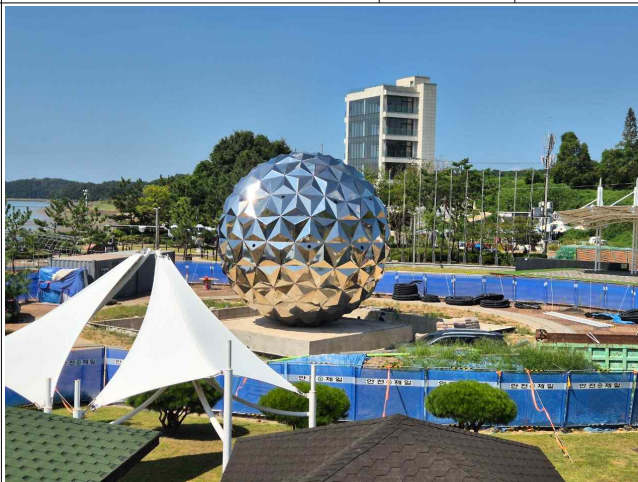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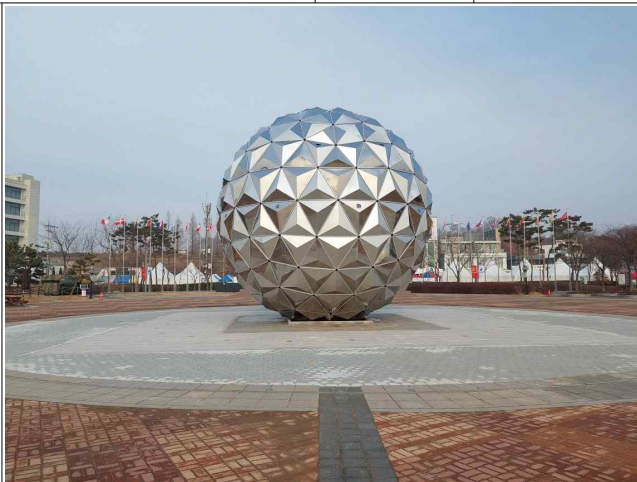
2023	- 함상공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메타버스 시범운영, 운봉함 입구 포토존 정비공사, 장애인 경사로 안전휀스 설치 등 - 2023년 방문객 : 64,410명
2024	- 운봉함 냉난방기 보수, 출입구 전광판 수리, 소방컨트롤 패널 교체, 수도권입배관 보수, 함상공원 수목작업 등 - 2024년 방문객 : 54,683명 (※ 멀티미디어 분수대 공사로 인한 공원 일부구간 통제로 전년대비 관람객 감소)
2025	- 운봉함 관람객 동선 안내용 바닥 시트 교체, 냉난방기 보수 등 - 2025년 방문객 : 9,604명 (2025. 3. 20일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940	49,876	-	3,064	
2024	56,287	46,687	-	9,600	
2025	45,000	17,598	-	27,402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관광진흥과	사업규모	김포함상공원 일원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5,24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함상공원 운영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항1로 110-36		
현장사진					
	설치 중				
				설치 완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장 허효정	담당자	행정8급 김연정	전화	5105
-----	-------	------------	-----	----------	----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평화공원로 289
사업규모	애기봉평화생태공원 1개소		
사업목적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원활한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 기반 마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450,000	2,076,664	1,677,900	266,264	132,500	626,66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50,000	2,076,664	1,677,900	266,264	132,500	626,66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2,500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	308-13	. 예약시스템 기능개선	= 55,000	
	공기관 등에 대한	. 퇴장인원 관리 시스템	= 5,500	
	경상적 위탁사업비	. 전시 및 공연	= 50,000	
	403-02	. 전망대 암막블라인드 설치	= 22,000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예산요구 사유

[예약시스템 기능개선]

- 현재 사용 중인 발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공공기관으로써 방문객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고자 함.
- 웹포스 개발 및 적용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사용을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함.
- 현장발권 시 QR코드 사용하여 사전정보를 입력하고 발권을 용이하게 하여 효율적인 운영 가능

[퇴장인원 관리 시스템]

- 방문객 증가 및 문화행사 다수 개최 등으로 해병대에서 수용인원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 중으로 발권현황 및 입·퇴장 인원 관리시스템(현황 모니터 설치 포함)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상설전시 및 문화행사(공연) 추진]

- 최근 방문객 증가로 공원 내 다채로운 볼거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상·하반기 2회 운영 되던 기획전시와 함께 남녀노소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상설 전시를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 방문객 증가함(일평균 2배이상 증가 : 약520명→1,080명)은 물론 하절기 일몰시간(19:00~19:50) 변동과 관련하여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여 김포시 관광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함

[전망대 암막블라인드 설치]

- 해병대 군보심의 결과 및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관련 협의 요청 사항으로 시 일몰 후 북 방향 소등 철저 지속적 요구
- 방문객 증가 및 문화행사 다수 개최 등으로 해병대 협조가 상시 요구되는 바, 방문객의 안전한 이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망대 북방향(평화교육관, 오픈갤러리) 암막블라인드 설치 추진 (전망대 2층은 입점카페에서 직접 설치 예정)

□ 예산증감 사유

- 글로벌 카페 브랜드 입점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유입을 유지 및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해병대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민통선 관리 및 작전상 요구 조건 수용 및 적극 개선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적정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2024.11. 반영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2025.06. : 암막블라인드 설치/예약시스템 기능개선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 3. ~ 6. : 기업연계 조각전시(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청춘 시그널3040MHz’展) 2023. 4. ~ 10. : ‘조강풍류’ 문화행사(문화예술공연, 어린이날 캐리커처 이벤트 등) 2023. 7. 24.~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연중무휴 개시 2023.10.28.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야간개장 ※ 2023년 방문객 : 131,386명
------	---

2024	2024. 1. : 1일 방문객 입장 허용 인원 확대(1,000명 → 2,000명) 2024. 2. : 정월대보름'애기봉 달빛 라이트쇼' 개최 2024. 6. : 태평양 해병대 지휘관심포지엄(PALS 행사 개최) 2024. 7. : 경기 '유니크 베뉴' (지역 이색 회의명소)선정 2024. 7. : 국립극장과 업무 협약을 통한 '별별실감극장' 미래관 상영 2024. 9. :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 '창고 개방' 개최 2024. 12. :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 '겨울밤 낭만주의보' 개최 ※ 2024년 방문객(12.31.기준) : 190,234명
2025	2025. 1. : 기획전시 - 반고흐 레플리카전 2025. 2. : 정월대보름 기념 행사(방문객 2,518명) 2025. 2. : 매표창구 증설(2개소→3개소) 2025. 2. : 누적방문객 50만 돌파 ※ 2025년 방문객(3.20.기준) : 85,67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16,815	1,416,815	-	-	
2024	1,450,000	1,376,493	-	73,507	
2025	1,944,164	909,840	-	1,034,324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장 허효정	담당자	행정7급 나가은	전화	5102
-----	-------	------------	-----	----------	----	------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사업기간	2025. 1. ~ 2025. 8.	사업위치	아라마리나 일원(고촌읍 전호리 661)
사업규모	수상레저체험, 덕레이스 등 수변인프라 활용 축제 및 문화콘서트 등		
사업목적	아라뱃길 수상·수변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해양레저축제 개최로 관광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3호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호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 그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82,000	494,000	252,000	92,000	150,000	212,000	
국비		0				0	
도비		150,000			150,000	150,000	
시비	282,000	344,000	252,000	92,000		6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김포 아라마린페스 티벌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성립전) : 경정(460,000,000원)-기정(330,000,000원)	= 130,000	
	201-03 행사운영비	·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성립전) : 경정(30,000,000원)-기정(10,000,000원)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금 150,000천원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수상레저체험기구 확대 및 '덕레이스'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수상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결과예정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5.04. (경기도)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 12. : 2025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사전회의 실시
- 2025. 1. : 기본계획 수립 및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협약 및 대행사업비 교부
- 2025. 2. ~ 5. : 축제 대행사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5. 5. : 안전관리계획 심의
- 2025. 5. 31. ~ 6. 1. : 축제 개최
- 2025. 7.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경기관광축제 선정(도비 50,000천원 확보) - 2023. 5. 27. ~ 5. 28. : 제7회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 (덕레이스, 수상레저체험, 문화콘서트, 환경골든벨 등) - 방문객 현황 51,130명
2024	- 2024. 6. 1. ~ 6. 2. : 제8회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 (덕레이스, 수상레저체험, 마린랜드, 아라문화콘서트, 환경골든벨 등) - 방문객 현황 95,250명
2025	- 2025. 5. 31. ~ 6. 1. : 제9회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 예정(덕레이스, 수상레저체험, 마린랜드, 아라문화콘서트, 환경골든벨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0,000	290,000	-	-	
2024	282,000	280,856	-	1,144	
2025	344,000	240,000	-	104,000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관광진흥과	사업규모	수상레저체험, 덕레이스 등 수변인프라 활용 축제 및 문화콘서트 등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사업위치	아라마리나 일원(고촌읍 전호리 661)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사업팀장 부광영	담당자	행정7급 한소정	전화	5112
-----	-------	------------	-----	----------	----	------

김포 라베니체축제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장기동 라베니체 일원
사업규모	라베니체 수상 특화 축제콘텐츠 및 라베니체 불꽃쇼, 콘서트 등		
사업목적	시민참여 축제개최를 통해 주민화합 및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3호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호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 그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96,750	346,750	296,750	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6,750	346,750	296,750		5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김포 라베니체축제	201-01 사무관리비	· 행사차출지급경비(경정 100천원*50명 - 기정 100천원*20명) =	3,0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행사경호 및 전문 안전요원 운영 : 250천원*120명*1회 =	30,000	
		· 안전펜스 및 안전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 50천원*200개*1회 =	10,000	
		· 시민참여 및 라베니체 상권 활성화 연계 수상특화 프로그램 운영 =	7,000	

□ 예산요구 사유

- 라베니체만의 특화된 수상축제 개최로 수변특화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김포 가을 대표축제로 육성
-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구성으로 지역 대표 축제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콘서트·불꽃쇼 개최 시 급증하는 순간최대밀집인원 안전사고 방지 관련 통제구역 확대 및 안전 동선 확보 등을 위한 행사요원(직원) 지급경비 및 전문 안전관리 요원 운영, 안전관리 시설(안전웬스 등) 비용 증가

- '24년 축제 결과 순간최대밀집인원 집계 10만명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관객 50명당 안전요원 1명 배치요구(경찰서)에 따라 안전요원 약 2,000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최대 위험구역인 불꽃쇼 발사·낙하구간 및 콘서트 관람 밀집구역에 봉사단체 및 일반 직원 등이 아닌 전문 경호(경비) 업체 요원 배치로 인파쏠림으로 인한 대형재난사고 방지
- 시민참여 및 상권 활성화 연계 라베니체 수상특화 프로그램 구성 확대 및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5.04. (경기도)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기본계획 수립 및 김포문화재단 대행 협약 체결
 - 2025. 4.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25. 5. : 축제 대행사 선정
 - 2025. 6. ~ 9.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준비
 - 2025. 10. : 2025 김포 라베니체축제 개최
 - 2025. 1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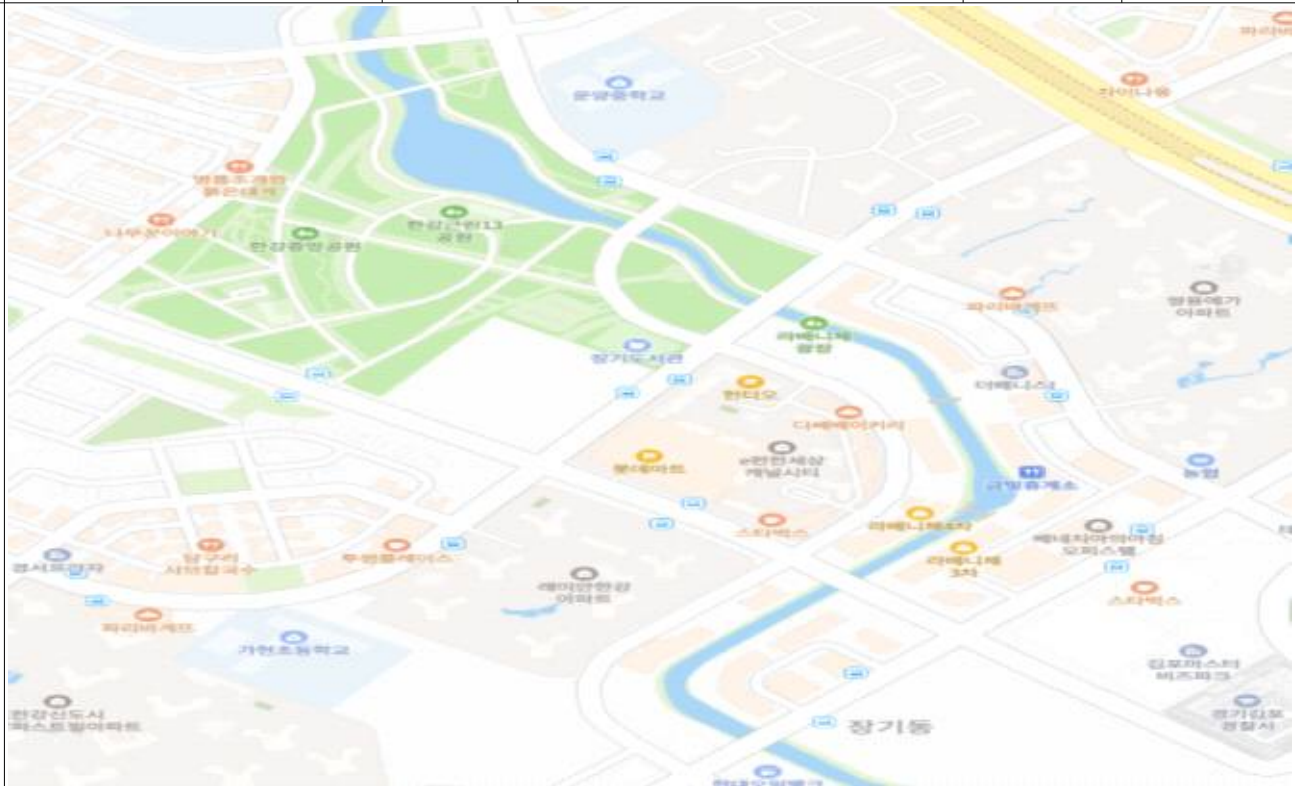
2023	2022 김포 도심축제 개최(2022.11.12.~12.31.) : 경관조명·포토존 전시, 시민참여프로그램 ※ 이태원사고로 점등식 및 연계행사 취소
2024	2023 김포 도심축제 개최(2023.10.14.~15.) : 수상불꽃공연 및 라베니체콘서트, 버스킹, 체험부스 진행 ※ 방문객 : 약 50,000명
2025	2024 김포 라베니체축제 개최(2024.10.12.) : 불꽃쇼 및 라베니체 콘서트, 수상버스킹, 체험 부스 등 진행 ※ 방문객 : 약 150,000명 (순간최대관람객 약 100,00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	49,995	-	5	
2024	296,750	296,690	-	60	
2025	296,750	284,750	-	12,000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관광진흥과	사업규모	라베니체 불꽃쇼, 콘서트 등	2회추경 요구액 (천원)	5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라베니체축제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초당로 40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사업팀장 부광영	담당자	행정7급 조왕희	전화	5113
-----	-------	------------	-----	----------	----	------

유도 매입

사업기간	2025. 6. ~ 2025. 9.	사업위치	월곶면 보구곶리 산2번지
사업규모	유도(13,091㎡) 매입		
사업목적	유도를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 추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4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600,000	0	0	600,000	6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000			600,000	6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0	
유도 매입	401-01 시설비	. 유도매입 : 600,000천원	= 600,000	

□ 예산요구 사유

- 생태환경 보전 등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선제적 매입 추진
- 한반도 평화에 있어 한강하구 중립지역에 대한 관리 및 보호 필요
- 향후 해상교통, 물류 등 관광자원의 개발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토지 매입 예산편성 필요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적정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2017.12.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완료
 - 2024. 5. : 토지매입 관련 토지주와 협의 완료
 - 2025. 6. : 감정평가 추진
 - 2025. 7. ~ 9. : 매매계약 및 토지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완료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600,000	0	600,000	0	0	6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0		0				
	공사비	600,000		600,000			6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4. 5. : 토지 매수협의 완료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관광진흥과	사업규모	유도(13,091㎡) 매입	2회 추경 요구액 (천원)	6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유도 매입	사업위치	월곶면 보구곶리 산2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기반팀장 박상희	담당자	시설8급 이승훈	전화	5107
-----	-------	------------	-----	----------	----	------

관광 홍보 마케팅 활성화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주요 관광상품 연계 홍보		
사업목적	민간 관광상품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객 증가 유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3호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호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9.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0,00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0,000	0	0	20,000	2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관광 홍보 마케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 관광지 연계 상품 홍보 마케팅 : 2,500,000원 * 4회 =	10,0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관광지 연계 상품 홍보 마케팅 : 1,000,000원 * 10회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관광 트렌드 변화(단체관광→개별자유여행)에 따라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관광 상품 판매 증가 추세임에 따라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 필요
- 외국인 전용 여행사이트의 여행상품 중 김포 주요 관광지 연계 상품의 상단 노출 유도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 코레일 관광개발과 연계한 김포 DMZ 관광 상품의 홍보 마케팅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 예산증감 사유

- 민간 주도 관광 상품과 연계한 관광 홍보 마케팅을 통해 내 외국인 관광객 방문 유도
- DMZ 관광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관광 시즌에 맞춘 상품 홍보 마케팅 진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 관광 홍보 마케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2025. 4. ~ 11. : 사업 추진
 - 2025.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미운영
2024	- 미운영
2025	- DMZ 평화열차 연계 팸투어 운영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사업팀장 부광영	담당자	행정7급 한소정	전화	5112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종합운동장, 노을체육관, 서암생활체육공원
사업규모	4개팀(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 운영		
사업목적	전문체육 우수도시로서의 시 위상 제고 및 지역 체육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914,000	3,107,625	2,887,625	0	220,000	193,62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14,000	3,107,625	2,887,625		220,000	193,6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0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 육상선수단 육성 - 보상금 • 입상포상금 17,500천원 * 2회 35,000,000원 = 35,000		
		○ 태권도선수단 육성 - 보상금 • 입상포상금 65,000천원 * 2회 130,000,000원 = 130,000		
		○ 테니스선수단 육성 - 보상금 • 입상포상금 17,500천원 * 2회 35,000,000원 = 35,000		
		○ 복싱선수단 육성 - 보상금 • 입상포상금 10,000천원 * 2회 20,000,000원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각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대회입상 실적에 대한 포상금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각 종목별 대회입상 포상급 편성
 - 시 기 : 2회(상.하반기) 지급
 - 대 상 :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 지급기준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대회별 입상 실적(금.은.동)에 따라 차등 지급
- ※태권도 : 이학성 선수 2025년 도쿄 데플림픽 참가 예정 및 금메달 획득 유력에 따라 포상금 반영
- * 이학성 금메달 획득 : 2013 소피아 데플림픽, 2017 삼순 데플림픽,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2024 비슈케크 세계데프태권도 챔피언십, 제10회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게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2. : 각 선수단 동계전지훈련 실시
 - 2025. 3. ~ 2025. 6. : 각 선수단 국내 대회출전
 - 2025. 7. ~ 2025. 8. : 각 선수단 대회출전 및 하계전지훈련 실시
 - 2025. 9. ~ 2025. 11. : 각 선수단 국내·외 대회출전
 - 2025. 11. ~ 2025. 12. :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0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육 상 : 11개 대회 출전(금4, 은8, 동7) · 테니스 : 16개 대회 출전(금7, 은7, 동14)	· 태권도 : 20개 대회 출전(금22, 은7, 동12) · 복 싱 : 10개 대회 출전(금8, 은6, 동12)
2024	· 육 상 : 10개 대회 출전(금6, 은6, 동8) · 테니스 : 15개 대회 출전(금9, 은6, 동4)	· 태권도 : 16개 대회 출전(금16, 은6, 동17) · 복 싱 : 9개 대회 출전(금10, 은6, 동12)
2025	· 태권도 : 2개 대회 출전(금1) · 테니스 : 1개 대회 출전(금1, 은1)	· 복 싱 : 1개 대회 출전(은1, 동1)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02,310	2,832,437	-	69,873	
2024	2,914,000	2,894,752	-	19,248	
2025	2,886,125	802,496	-	2,083,629	3.2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정책팀장 권두택	담당자	행정9급 이성준	전화	2575
-----	-----	------------	-----	----------	----	------

김포시 빙상체육활동 지원(공모)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00명 내외		
사업목적	동계체육 발전의 최적지 '김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체육 특화 프로그램 도입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1, 5호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5. 생활체육강좌 설치 육성·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00,000	0	0	100,000	100,000	
국비		70,000			70,000	70,000	
도비		0				0	
시비		30,000			30,000	3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김포시 빙상체육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프로그램 및 대회 지원 : 44,000원*200명*10회 =	88,000	
		· 단체보험 : 3,000원*200명*10회 =	6,000	
		·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	6,000	
		- 용품비 200,000원*10회 =	2,000	
		- 대형 현수막 100,000원*10회 =	1,000	
		- 운영비 300,000원*10회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종목인 빙상분야 '스케이팅'의 올바른 입문을 위한 특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빙상 종목 저변 확대와 인프라 형성(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 예산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선정에 따른 사업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공모 선정 및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25. 5. ~ 12. : 사업비 집행
 - 2025.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지영배	담당자	행정7급 이재근	전화	2598
-----	-----	------------	-----	----------	----	------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공모)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약 160명(40명 단위, 4개 프로그램)		
사업목적	체육 발전과 종목 육성, 특히 동계체육 발전의 최적지 '김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말체육 특화 프로그램 도입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1, 5호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5. 생활체육강좌 설치 육성·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98,867	0	0	98,867	98,867	
국비		69,207			69,207	69,207	
도비		0				0	
시비		29,660			29,660	29,6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8,867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성과보고(대회) 운영 : 5,000,000원*2회 = 10,000 · 구급키트함 등 : 80,000원*2개소*2회 = 320 · 홍보비(현수막 등) : 60,000원*20개소*2회 = 2,400 · 사무용품 : 1,227,000원*1식 = 1,227 · 강사수당 : 52,000원*5명*4회*15주 = 15,600 · 보조강사수당 : 36,400*5명*4회*15주 = 10,920 · 시설사용료(용품 포함) : 20,000원*160명*15회 = 48,000 · 단체보험 : 3,000원*160명*15회 = 7,200 · 출장여비(관외) : 50,000원*2명*8회 = 800 · 출장여비(관내) : 20,000원*2명*15회 = 600 · 운영비(간담회, 회의 등) : 300,000원*6회 = 1,8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종목 '빙상' 강습 프로그램 도입 및 빙상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대회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선정에 따른 사업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공모 선정 및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25. 5. ~ 12. : 사업비 집행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지영배	담당자	행정8급 나대준	전화	2582
-----	-----	------------	-----	----------	----	------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기간		2024.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마산동642-13, 장기동1888-12		
사업규모		파크골프장 18홀 및 주차장 조성, 유아숲 이설등				
사업목적		관내 부족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을 통해 쾌적한 야외체육공간 제공과 시설확충 요구에 부응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520,000	3,160,000	1,500,000	0	1,660,000	1,640,000	
국비		0				0	
도비	450,000	0				-450,000	
시비	1,070,000	3,160,000	1,500,000		1,660,000	2,09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60,000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경정(3,160,000천원) - 기정(1,500,000천원)	= 1,660,000	

□ 예산요구 사유

-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잔여 공사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5.1 (도)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5. : 파크골프장 확충 추진계획 검토보고
- 2023. 8. : 부지선정 중간보고회
- 2024.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 7. : 부서 및 기관협의
- 2024. 8.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이행
- 2024. 10. : 공원조성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 2024. 11.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4. 12. : 경기도 계약심의 이행
- 2025. 3. : 공사 착공
- 2025. 10. : 공사 준공 예정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700,000	1,520,000	3,160,000	1,500,000	0	1,660,000	20,000
공 정 별	설계비	103,708	103,708	0				
	보상비	0		0				
	공사비	4,596,292	1,416,292	3,160,000	1,500,000		1,660,000	2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부지선정 중간보고회
2024	- 실시설계(토목·기계, 전기, 통신) - 2024년 체육진흥시설 추가 공모 사업선정(450백만원 교부)
2025	- 공사 착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520,000	103,708	1,416,292	-	
2025	2,916,291	-	2,916,291	2,916,291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파크골프장(18홀) 및 주차장 조성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660,000
부기명 (세부사업)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위치	마산동 642-13(솔터체육공원내) 장기동 1888-1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8급 정태환	전화	2589
-----	-----	------------	-----	----------	----	------

고촌 신곡 축구장 조성

사업기간	2023. 8. 1. ~ 2025.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190-19번지 일원
사업규모	축구장 조성, 부유식컨테이너(화장실, 휴게실 등)		
사업목적	한강부지 내 김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구분	☐ 신규 ☐ 연(연)계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95,000	1,545,000	1,005,000	0	540,000	1,250,000	
국비		0				0	
도비		540,000			540,000	540,000	
시비	295,000	1,005,000	1,005,000			710,000	
기타		0				0	자부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0,000	
고촌 신곡 축구장 조성	401-01 시설비	고촌 신곡축구장 조성 사업비(토목, 관급자재비) 경정(1,545,000천원)- 기정(1,005,000천원)	= 540,000	

예산요구 사유

○ 신곡축구장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적정	-	-	-
일자	2024.11 반영	2024. 8.	-	-	-	-	2023.10.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7.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10. : 공유재산심의
 - 2023. 11.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12.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 2024. 3.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용역 집행
 - 2024. 4. : 고촌신곡축구장 조성사업 계획보고
 - 2024. 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 2025. 3.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4. 12. ~ 2025.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340,000	795,000	1,545,000	1,005,000	0	540,00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0		0				
	공사비	2,340,000	795,000	1,545,000	1,005,000		54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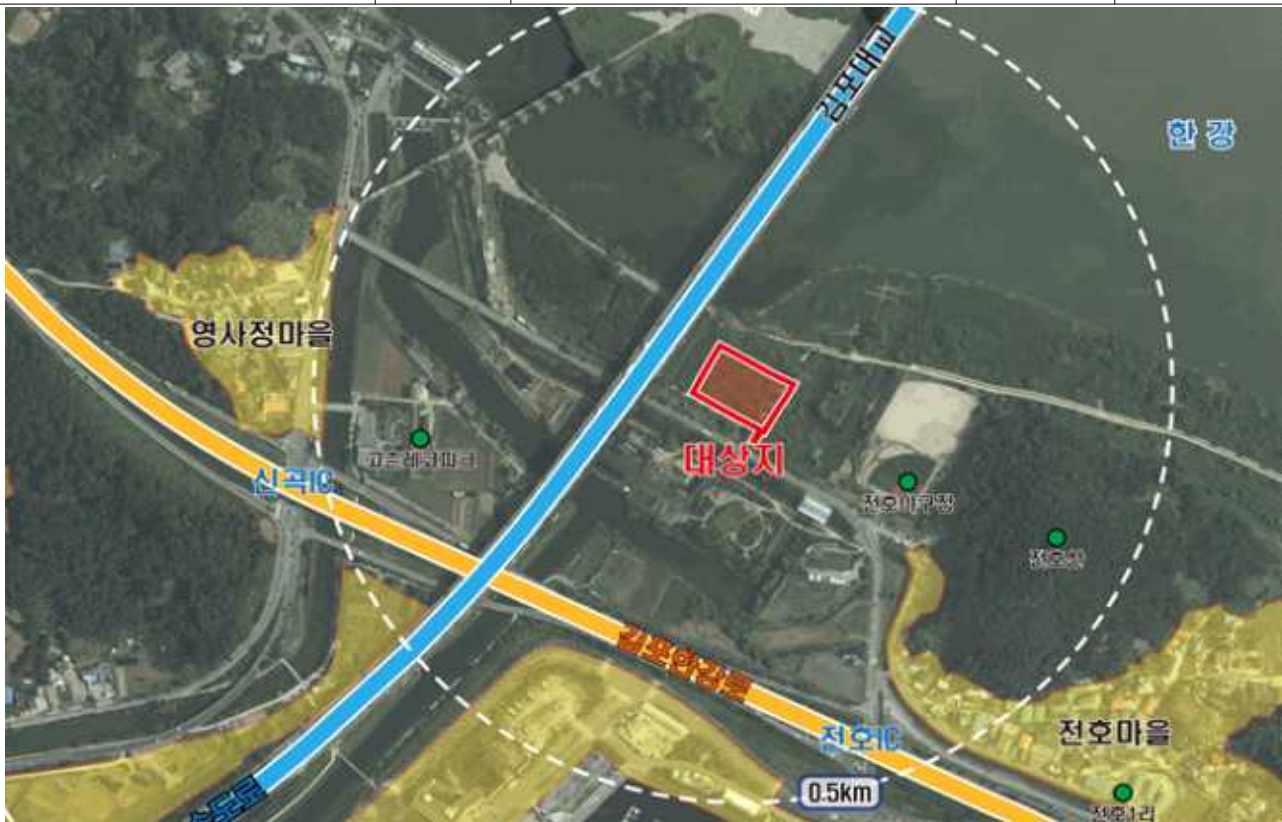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설계용역(공공체육시설 정비집행)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2024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용역 집행
2025	- 실시계획인가 - 공사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0	-	500,000	-	
2024	795,000	104,259	690,741	-	
2025	1,695,741	347,175	-	1,348,566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축구장 조성(풋살장 포함), 부유식 컨테이너		2회추경 요구액 (천원)	540,000
부기명 (세부사업)	고촌신곡축구장 조성사업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190-19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7급 이도경	전화	2584
-----	-----	------------	-----	----------	----	------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사업기간	2025. 1. 1. ~ 2026. 4. 30.	사업위치	마산동 670-4
사업규모	가현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60면) 조성(부지면적 : 32,354.2㎡)		
사업목적	체육활동(등산)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시정만족도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0,00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20,000	2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체육활동(가현산 등산) 지원 및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가현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착수(마산동671-1, 670-4 체육공원 통합변경)
- 2025. 5. :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6. :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준공
- 2025. 8. :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행정절차 이행
- 2025. 11. : 조성공사 착공
- 2026. 4.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500,000	0	20,000	0	0	20,000	48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0		0				
	공사비	480,000		0				48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주차장 60면 조성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
부기명 (세부사업)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마산동 670-4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8급 정태환	전화	2589
-----	-----	------------	-----	----------	----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업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장실 관리, 공공요금 납부, 책자관리 및 물품 구입		
사업목적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5,704	120,475	115,945	0	4,530	34,77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5,704	120,475	115,945		4,530	34,77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30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고용,산재보험: 40,000원×5인×10개월	= 2,000	
	201-02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요금: 23,000원×11개소×10월	= 2,53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체육시설 확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출
- 공공체육시설 공과금 납부

□ 예산증감 사유

- 기간제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부족분에 따른 증액
- 공공체육시설 건립(반다비체육센터, 솔터실내테니스장, 학운5야구장)에 따른 위탁 운영시까지 필요한 공과금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변환경 관리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화장실 및 시설 소규모 공사 - 청소도구 및 건설공사 관련 책자 구입 -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2024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구래다목적구장 화장실 및 주변환경 관리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구래다목적구장 화장실 물품구매 - 건설공사 관련 책자 구입 -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2025	-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구래다목적구장 화장실 물품구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4,449	90,509	-	33,940	
2024	85,704	76,393	-	9,311	
2025	115,945	22,353	-	93,592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8급 김기천	전화	2585
-----	-----	------------	-----	----------	----	------

실내테니스장 위탁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마산동 642-1(솔터체육공원 내)
사업규모	실내테니스장(4면) 위탁운영		
사업목적	실내테니스장 운영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 확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1항에 따른 직장 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20조(위탁관리)
		제20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34,929	30,000	0	104,929	134,92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34,929	30,000	0	104,929	134,92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4,929	
실내테니스장 위탁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실내테니스장 인건비 7,772,000원 .실내테니스장 운영비 40,315,000원	= 48,087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실내테니스장 자본적지출 56,842,000원	= 56,842	

□ 예산요구 사유

- 실내테니스장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 구입 (2025. 8월 개관예정)

□ 예산증감 사유

- 실내테니스장 운영 인력[기간제(4시간) 1명] 인건비 및 운영비
- 무인청소기, 무인발권기, CCTV 등 운영물품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2. : 실내테니스장 공사 착공(공공건축과)
 - 2024. 10. : 공공체육시설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 2024. 10. : 실내테니스장 부설주차장 공사 착공(체육과)
 - 2024. 10. :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준공(공공건축과)
 - 2025. 3. : 운영기관 선정
 - 2025. 4. : 개관 준비 및 운영물품 구매 및 배치
 - 2025. 8. : 실내테니스장 개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조성주	담당자	행정7급 최정인	전화	2586
-----	-----	------------	-----	----------	----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업규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목적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건강 및 이용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20조(위탁관리)
		제20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450,564	6,973,200	6,825,848	0	147,352	522,63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450,564	6,973,200	6,825,848		147,352	522,63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7,352	
시민회관 운영 대행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운영비	경정(489,192,000원) - 기정(474,192,000원)	=	15,000	
김포생활체육관 운영 대행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운영비	경정(829,799,000원) - 기정(808,604,000원)	=	21,195	
양곡문화체육 센터 운영 대행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인건비 · 운영비	경정(610,850,000원) - 기정(619,950,000원) 경정(1,150,647,000원) - 기정(1,030,390,000원)	=	111,157	

□ 예산요구 사유

- 노후된 시설 개설의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 증대
- 전년 대비 동절기 평균기온 하락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동력비(도시가스) 요금 증가
- 기구필라테스 강습수요 증가에 따른 강습반 신설(양곡문화체육센터)

□ 예산증감 사유

- 시민회관 동력비(도시가스) 비용 15,000천원 증액
- 생활체육관 태양광인버터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 19,657천원 등 운영비 21,195천원 증액
- 양곡문화체육센터 비율제 강사비 및 육아휴직 대체 수당 등 경상적위탁사업비 111,157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민회관, 걸포다목적체육관, 통진문화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마산·구래다목적 포함), 노을체육관, 주차사업실 운영 -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2024	- 시민회관, 걸포다목적체육관, 통진문화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마산·구래다목적 포함), 노을체육관, 주차사업실 운영 -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2025	- 시민회관, 걸포다목적체육관, 통진문화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마산·구래다목적, 양곡죽구장 포함), 노을체육관, 양곡문화체육센터, 주차사업실 운영 -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29,116	4,633,866	-	195,250	
2024	6,450,564	5,924,618	-	525,946	
2025	6,825,848	4,110,798	-	2,715,05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조성주	담당자	행정7급 최정인	전화	2586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서관과



자료실 운영(모담도서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3
사업규모	김포만화도서관 1개관		
사업목적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도서관법	제32조 제6호
	위임규정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93,547	92,707	0	840	93,54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3,547	92,707		840	93,54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0	
자료실 운영 (모담도서관)	201-01 사무관리비	·김포만화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8월) : 경정(900,000원) - 기정(300,000원)	= 600	
	201-02 공공운영비	·김포만화도서관 전화요금(8월) : 경정(360,000원) - 기정(120,000원)	= 24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만화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금 지급
-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 위탁 지연으로 인한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2025.12 : 김포만화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공공요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92,707	32,730	-	59,977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담당자	사서9급 서지유	전화	4657
-----	------	-------------	-----	----------	----	------

자료실 운영(통진도서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132
사업규모	통진도서관 1개관		
사업목적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서관법	제32조 제1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9,853	13,333	12,453	0	880	3,4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853	13,333	12,453		880	3,4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80	
자료실 운영 (통진도서관)	201-01 사무관리비	·자료실 운영 물품 - 경정(7,280,000원) - 기정(6,400,000원)	= 880	

□ 예산요구 사유

- 바코드 스캐너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도서관 자료실 운영의 효율성 저하
※ 2023. 10. 31: 2대 수리, 2024. 4. 19.: 1대 수리, 2025. 4.: 2대 수리 예정

□ 예산증감 사유

- 안정적인 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 바코드 스캐너(4대)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8.~2025.10. : 바코드 스캐너 구입 집행 및 교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일 평균 이용자료: 1,675권 - 1일 평균 이용자: 776명
2024	- 1일 평균 이용자료: 1,925권 - 1일 평균 이용자: 833명
2025	- 1일 평균 이용자료: 1,985권 - 1일 평균 이용자: 79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484	26,628	-	1,856	
2024	9,853	9,511	-	342	
2025	12,453	3,178	-	9,275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통진도서관팀장 박신원	담당자	사서9급 조희원	전화	4973
-----	------	-------------	-----	----------	----	------

자료실 운영(양곡도서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197번길 40
사업규모	양곡도서관 1개관		
사업목적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서관법	제32조 제1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107	10,417	8,917	0	1,500	4,3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107	10,417	8,917		1,500	4,3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	
자료실 운영 (양곡도서관)	201-01 사무관리비	· 대곶작은도서관 자료실 운영물품 : 1,260,000원	= 1,260	
	201-02 공공운영비	· 대곶작은도서관 공공요금(8월) - 경정(2,240,000원) - 기정(2,000,000원)	= 240	

□ 예산요구 사유

- 대곶작은도서관 이전(대곶초등학교 내 → 대곶문화복지센터)으로 재개관

□ 예산증감 사유

-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 위탁 지연으로 인한 작은도서관 운영(전화요금 등)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2025.12. : 대곶작은도서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RFID 회원카드 신규발급: 488개 - 1일 평균 이용자료: 1,974권 - 1일 평균 이용자: 873명
2024	- RFID 회원카드 신규발급: 482개 - 1일 평균 이용자료: 1,977권 - 1일 평균 이용자: 878명
2025	- RFID 회원카드 신규발급: 185개 - 1일 평균 이용자료: 2,051권 - 1일 평균 이용자: 90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109	10,012	-	97	
2024	6,107	6,020	-	87	
2025	8,917	5,739	-	3,178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양곡도서관팀장 황경애	담당자	사서9급 반우진	전화	4823
-----	------	-------------	-----	----------	----	------

자료실 운영(장기도서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2로 42(장기동)
사업규모	장기도서관 1개관		
사업목적	자료실의 안정적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해당조례	○○○조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7,517	27,999	18,399	0	9,600	-29,118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47,517	18,399	18,399		9,600	-29,118	
기타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600	
자료실 운영 (장기도서관)	201-01 사무관리비	· 하성작은도서관 자료실 운영 물품(8월) - 경정(1,400,000원) - 기정(600,000원)	= 800	
	201-02 공공운영비	· 하성작은도서관 전기요금(8월) - 경정(12,800,000원) - 기정(4,000,000원)	= 8,800	

□ 예산요구 사유

- 하성작은도서관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자료실 운영, 전기요금)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하성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2025.12. : 하성작은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전기요금 납부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일 평균 이용자료: 112권 - 1일 평균 이용자: 65명
2024	- 1일 평균 이용자료: 131권 - 1일 평균 이용자: 71명
2025	- 1일 평균 이용자료: 120권 - 1일 평균 이용자: 7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405	51,268	-	1,137	
2024	47,517	31,345	-	16,172	
2025	18,399	5,505	-	12,894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장기도서관팀장 강수경	담당자	사서9급 천지현	전화	4674
-----	------	-------------	-----	----------	----	------

자료실 운영(풍무도서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풍무로146번길 101(풍무동)
사업규모	풍무도서관, 누리봄작은도서관 2개관		
사업목적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서관법	제32조 제1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2,380	29,320	12,320	0	17,000	16,9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380	29,320	12,320		17,000	16,9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	
자료실 운영 (풍무도서관)	201-01 사무관리비	·누리봄작은도서관 자료실 운영용품 100,000원*8월 = 800 ·누리봄작은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5,000원*3대*8월 = 600		
	201-02 공공운영비	·누리봄작은도서관 공공요금 : 1,950,000원*8월 = 15,600		

□ 예산요구 사유

- 누리봄작은도서관 운영 소관 팀 변경에 따른 예산 이관(고촌도서관 → 풍무도서관)

□ 예산증감 사유

- 누리봄작은도서관 위탁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2025.12. :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납부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일 평균 이용자료: 1,675권 - 1일 평균 이용자: 776명
2024	- 1일 평균 이용자료: 1,925권 - 1일 평균 이용자: 833명
2025	- 1일 평균 이용자료 5,449권 - 1일 평균 이용자: 2,76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484	26,628	-	1,856	
2024	9,853	9,511	-	342	
2025	12,320	6,430	-	5,89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풍무도서관팀장 김효신	담당자	사서8급 목주연	전화	4866
-----	------	-------------	-----	----------	----	------

자료실 운영(마산도서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174-6(마산동)
사업규모	마산도서관, 구래작은도서관 2개관		
사업목적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서관법	제32조 제1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1,413	12,863	12,683	0	180	1,4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413	12,863	12,683		180	1,45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	
자료실운영 (마산도서관)	201-02 공공운영비	· 구래작은도서관 전화요금(8월) - 경정(270,000원) - 기정(90,000원)	= 180	

□ 예산요구 사유

- 안정적인 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구래작은도서관 위탁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8.~2025.10. : 바코드 스캐너 구입 집행 및 교체
 - 2025.08.~2025.12. : 구래작은도서관 전화요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1일 평균 이용자료: 4,374권 -1일 평균 이용자: 2,102명
2024	-1일 평균 이용자료: 4,117권 -1일 평균 이용자: 3,110명
2025	-1일 평균 이용자료: 4,329권 -1일 평균 이용자: 2,26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737	25,152	-	585	
2024	11,413	11,123	-	290	
2025	12,683	3,276	-	9,407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마산도서관팀장	담당자	사서9급 류경민	전화	4884
-----	------	---------	-----	----------	----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7. ~ 2027. 3.	사업위치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
사업규모	연면적 4,932㎡, 지하1층/지상4층		
사업목적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도서관법	제29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육성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652,320	382,320	0	270,000	652,320	
국비		0				0	
도비		300,000	300,000			300,000	
시비		352,320	82,320		270,000	352,32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0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 중봉도서관 그린리모델링(1차) 시공비 및 폐기물처리비 - 시공비 : 240,000,000원 - 폐기물처리비 : 30,000,000원	= 270,000	

- 예산요구 사유
-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편성 필요
 - 준공 25년 된 중봉도서관의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 제공
 - 연면적 4,932㎡에 대한 내외장재, 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 교체 및 공간 재구성(그린리모델링)

- 예산증감 사유
- 그린 리모델링(1차) 공사에 대한 시설비(시공비 및 폐기물 처리비)의 증가로 시공사(4월 예정)선정 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편성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2.5. (도)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7.: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2022.02.: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022.03.: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2.05.: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결과: 조건부)
 - 2022.0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22.09.: 2회 추경 사업비 편성(50,000천원)
 - 2022.11.: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완료(결과: 구조안전성 검토)
 - 2023.07.: 1회 추경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15,000천원)
 - 2023.08.: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4,478,120천원)
 - 2023.10.: 구조안전진단 용역 완료(결과: B등급 양호)
 - 2024.03.: 그린리모델링(1차) 설계공모
 - 2024.06.: 그린리모델링(1차) 설계공모 완료 및 설계용역 착수
 - 2024.12.: 그린리모델링(1차) 설계용역 완료
 - 2025.04.: 그린리모델링(1차)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선정 및 착공
 - 2025.08.: 일반리모델링(2차) 설계용역 착수
 - 2025.12.: 그린리모델링(1차) 준공 예정
 - 2026.01.: 일반리모델링(2차)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선정
 - 2026.04.: 일반리모델링(2차) 착공 예정
 - 2027.03.: 일반리모델링(2차) 준공 예정(2027. 09. 재개관예정)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6,040,000	10,093,120	652,320	382,320	0	270,000	5,294,560
공 정 별	설계비	764,956	382,636	382,320	382,320			
	보상비	5,500,000	5,500,000	0				
	공사비	9,518,794	3,954,234	270,000			270,000	5,294,560
	감리비	250,000	250,000	0				
	부대비	6,250	6,25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7월: 1회 추경 중봉도서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편성 - 8월: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 10월: 중봉도서관 구조안전진단 용역 완료
2024	- 7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10억 신청(2025년 설계비 3억, 2026년 공사비 7억) - 12월: 중봉도서관 그린리모델링(1차) 설계용역 완료
2025	- 3월: 2회 추경 중봉도서관 시설비(시공비 및 폐기물 처리비) 증가분 편성 요청 - 4월: 그린리모델링(1차)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선정 및 착공 예정 - 8월: 일반리모델링(2차) 설계용역 착수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43,120	56,361	4,486,759	-	
2024	4,486,759	273,886	4,212,873	-	
2025	4,212,873	-	-	4,212,873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서관과	사업규모	연면적 4,932㎡, 지하1층/지상4층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70,000
부기명 (세부사업)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위치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시설운영팀장 이진나	담당자	시설8급 신호정	전화	4991
-----	------	------------	-----	----------	----	------

도서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모담도서관) 외 7개소
사업규모	모담도서관 외 7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목적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도서관법	제32조 제6호
	위임규정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486,286	1,307,170	1,277,170	0	30,000	-1,179,11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86,286	1,307,170	1,277,170	0	30,000	-1,179,11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도서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지역난방요금 : 경정(8,000,000원*12월)-기정(5,500,000원*12월)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모담도서관 개관에 따른 난방요금 추가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도서관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소요 증가 및 모담도서관 시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12. : 시설물 교체, 보수, 공공요금 납부 등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서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2024	- 도서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2025	- 도서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1,417	1,914,923	7,000	79,494	
2024	2,345,826	2,062,818	17,237	265,771	
2025	1,277,170	628,249	-	648,921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시설운영팀장 이진나	담당자	공업7급 신관우	전화	4988
-----	------	------------	-----	----------	----	------

복지국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김포복지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사업규모	김포복지재단 1개소		
사업목적	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145,042	1,342,110	1,256,382	0	85,728	197,06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45,042	1,342,110	1,256,382		85,728	197,06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728	
김포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경정(1,342,110,000원)- 기정(1,256,382,000원) 인건비 및 운영비 : 82,868,510원 + 2,860,000원	= 85,728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복지재단 2025.04.01.일자 공개채용 임용에 따른 추가인건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정원기준 편성(현원9인→11인)에 따른 82,868천원 증액
- 선택적복지제도 정원기준 편성(현원9인→11인)에 따른 2,860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분기별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11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66,106천원 모금액 : 823,062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190가구 - 지역사회 현안사업 101회, 긴급재해재단 사업 644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59가구, 가족기능강화사업 30가구 - 명절지원사업 184개소/ 1,610가구, 우리김포긴급지원사업 426가구, 정기결연지원사업 2,243가구, 미래세대성장사업 523가구 -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 28개소, 차량지원사업 4개소, 기관협력지원사업 36개소 - 사회복지인식개선사업 18회,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19회, 힐링지원사업 10회/431명, 사회복지시설지원 32회 -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 13회, 사례관리회의 8회, 시민모니터링 9회, 복지네트워크 사업 9회)
2024	- 제12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00,000천원 모금액 : 1,363,038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70가구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161건, 우리김포긴급지원 1,275건 (보훈취약계층 699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1,938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건, 명절지원사업 1,711건/134개소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42건, 차량지원사업 1개소 - 나눔교육사업 10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2회, 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17회 - 시민모니터링단 18회, 복지협력네트워크 12회, 업무협약 1회
2025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18건, 우리김포긴급지원 48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316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건, 명절지원사업 1,093건/116개소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건 - 복지협력네트워크 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1,700	1,161,242	-	160,458	
2024	1,145,042	945,558	-	199,484	
2025	1,256,382	297,443	-	958,93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19
-----	-------	------------	-----	----------	----	------

호국보훈 행사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보훈행사 5회		
사업목적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유가족 위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개최 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9,000	39,000	19,00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000	39,000	19,000		20,000	2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호국보훈 행사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호국보훈 행사 운영비 : 경정(26,000천원[5회]) - 기정(11,000천원[2회]) =	15,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보훈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유가족 급식비 : 경정(770명*13,000원) - 기정(600명*13,000원) =	2,000	
	301-14 기타보상금	. 보훈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15,000원 * 200명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행사 실시 및 보훈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

□ 예산증감 사유

-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75주년 행사, 보훈회관 개관식 등 호국보훈 행사 진행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반영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2025.4.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신년 헌충탑 참배
 - 2025.06. : 6.6.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75주년 행사
 - 2025.09. : 김포시 보훈회관 개관식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년 헌충탑 참배(34명), 현충일 추념식(250명), 6.25전쟁 73주년 행사(120명) 실시
2024	○ 신년 헌충탑 참배(100명), 현충일 추념식(400명), 6.25전쟁 74주년 행사(170명) 실시
2025	○ 신년 헌충탑 참배(11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000	13,063	-	3,937	
2024	19,000	18,070	-	930	
2025	19,000	2,667	-	16,333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7 2618
-----	-------	----------	-----	------------------------	----	--------------

보훈단체 사업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광복회 등 13개 단체	대표자	강성보 등 12명
사업목적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을 통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복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연)계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통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호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6,040	84,870	83,870	0	1,000	-1,170	
시비	84,370	84,470	83,470		1,000	100	
자부담	1,670	400	400			-1,27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000	1,000	0	
보훈단체 사업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전물군경유족회 사업지원 - 국립현충원 참배행사 : 20천원 * 25명 * 1회 - 휴전선155마일종주행사 : 25천원 * 20명 * 1회	= 1,000	1,000	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고양

○ 보훈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민간주도 사업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현충원 참배 행사 확대(1회[국립현충원] → 2회[국립현충원, 대전현충원])로 1박 숙박료 증액

○ 휴전선155마일종주행사 진행 시 폭염대비 물품구입(음료, 아이스팩, 쿨타올, 햇빛가리개 등) 사업비 증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광복회 등 12개 단체 ○ 추진실적 : 전적지순례, 국립묘지참배, 항일역사 유적지 견학, 사진전, 기념식 등 27회 61,886천원
2024	○ 보조사업자 : 광복회 등 13개 단체 ○ 추진실적 : 전적지순례, 국립묘지참배, 항일역사 유적지 견학, 현충원 참배, 기념식 등 28회 82,720천원
2025	○ 보조사업자 : 광복회 등 13개 단체 ○ 추진실적 : 전적지순례, 국립묘지참배, 항일역사 유적지 견학, 현충원 참배, 기념식 등 30,600천원(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2,770	62,370	400	62,286	61,886	400	484	484	-	
2024	86,040	84,370	1,670	84,390	82,720	1,670	1,650	1,650	-	
2025	83,870	83,470	400	30,870	30,600	270	53,000	52,870	13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전화	2617
-----	-------	----------	-----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67명		
사업목적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3조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0,000	30,000	30,000	0	0	10,000	
국비	10,000	15,000	15,000		0	5,000	50%
도비	6,000	9,000	9,000		0	3,000	30%
시비	4,000	6,000	6,000		0	2,000	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 AI 안부든든 서비스 경정(8,250원*101명*12월)-기정(8,250원*121명*12월)	= -2,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생활 개선 지원 경정(500,000원*16가구)-기정(500,000원*12가구)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으로 정기적인 대면 안부 확인 필요

○ 안부 확인 시 생필품, 식료품 세트 등 소액 지원 물품 구매 비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세부사업내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04. : 고독사 위험군 발굴 일제조사
 - 2025.01.~12. :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이용 72명 - 고독사 예방 집단 프로그램 참여 : 2개소 17명 - 주거환경개선 1명, 심리지원 1명
2025	-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이용 74명 - 고독사 예방 집단 프로그램 참여 예정: 2개소 4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000	14,805	-	5,195	
2025	30,000	1,066	-	28,934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전진선	담당자	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35
-----	-------	------------	-----	----------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5명		
사업목적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취약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0,000	35,714	35,714	0	0	5,714	
국비	15,000	25,000	25,000	0	0	10,000	70%
도비	7,500	5,357	5,357	0	0	-2,143	15%
시비	7,500	5,357	5,357	0	0	-2,143	15%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사업홍보비 : 경정(1,914,000원*1회)-기정(1,428,500원*4회) =	-3,80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센티브 : 경정(16,500원*5명*20회*12월)-기정(16,000원*25명*46회) = · 행정인력 수당 : 경정(475,000원*1개소*4회) = · 출장비 : 경정(10,000원*5명*20회*12월)-기정(10,000원*25명*46회) =	1,400 1,900 5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지역의 전문성 있는 제공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행정인력 수당 지급
- 인센티브 지원단가 인상 및 제공인력 실제 인원, 출장 횟수 반영하여 사업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단가 및 제공인력이 변경되어 세부사업 내 예산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4. : 취약지역 주민 중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연중)
 - 2025.05.~2025.07. : 관내 취약지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니터링
 - 2025.08.~2025.12. :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 : 7명
2025	-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 : 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0,000	5,702	-	24,298	
2025	35,714	3,945	-	31,76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전진선	담당자	보건9급 김지현	전화	2631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사업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4.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61명		
사업목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 마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
		제7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44,667	0	0	44,667	44,667	
국비		0				0	
도비		13,400			13,400	13,400	
시비		31,267			31,267	31,26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4,66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사업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종합사회복지관		
		- 한글교실 : 강사료 220,000원*46회	= 10,120	
		- 노래교실 : 강사료 120,000원*10회	= 1,200	
		- 화합의 장 : 62,000원*180명*1회	= 11,167	
		- 재 료 비 : 180,000원*1회	= 180	
		· 북부노인복지관		
		- 한글교실 : 강사료 220,000원*42회	= 9,240	
		- 노래교실 : 강사료 120,000원*7회	= 840	
		- 댄스교실 : 강습비 22,070원*20명*10회	= 4,415	
		- 문화나들이 : 77,800원*86명*1회	= 6,690	
		- 사할린캠페인 : 물품구입비 815,000원*1회	= 815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도 신규 사업 추진
- 사할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신규 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반영	-
일자	반영예정 (2025.11.)	-	-	-	-	-	-	-	2022.9. (종합사회) 2022.1. (북부노인)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수요조사
 - 2025. 2. : 도 예산 확정내시
 - 2025. 3. : 사할린한인 간담회
 - 2025. 4. ~ 11. : 각 복지관별 사할린한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2621
-----	-------	------------	-----	------------	----	------

청년 내일저축 계좌(차상위 이하)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110명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 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466,409	1,561,813	1,417,463	0	144,350	95,404	
국비	1,319,768	1,405,632	1,275,716		129,916	85,864	
도비	43,993	46,854	42,524		4,330	2,861	
시비	102,648	109,327	99,223		10,104	6,679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350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117,180원*1,110명*12월)-기정(117,180원*1,008명*12월) =	144,350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대상자의 3년 가입기간동안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대상자의 본인적립금(100천원)에 대해 100천원(1:1) 또는 300천원(1:3) 매칭 지원
-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월 : 대상자 신규 모집
 - 2025. 8월 :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및 선정
 - 매 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 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555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772명
2025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77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41,039	927,555	-	113,484	
2024	1,466,409	1,466,409	-	-	
2025	1,417,463	735,166	-	682,297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송현지	전화	2624
-----	-------	------------	-----	----------	----	------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8명		
사업목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및 행려자 귀향여비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7,000	49,000	27,00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000	49,000	27,000		22,000	2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취약계층 복지증진	301-02 사명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무연고 사망자 화장비용 및 시신처리비용 : 경정(2,000,000원*20명)-기정(2,000,000원*10명)	= 20,000	
	307-01 의료 및 회복비	.행려자 귀향여비, 응급숙박비 등 : 경정(50,000원*20명)-기정(50,000원*20명)	= 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 경정(1,000,000원*8명)-기정(1,000,000원*6명)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영장례로 처리
- 공영장례 조례에 의하여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지원
- '25. 3월말 기준 무연고 사망자 화장 및 시신처리비용 집행률 100%로 예산 소진

□ 예산증감 사유

-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가족들의 장례 거부 및 연락 두절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 대상자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명동의	출자·출연의명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공영장례 처리 및 공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28명 20,268천원 (무연고 공고료 : 1명, 990천원, 무연고사망자 처리 : 11명, 18,800천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급 : 16명, 478천원)
2024	- 총 26명 23,498천원 (무연고 공고료 : 5명, 5,000천원, 무연고사망자 처리 : 10명, 18,200천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급 : 11명, 298천원)
2025	- 총 14명 22,041천원 (무연고 공고료 : 2명, 2,000천원, 무연고사망자 처리 : 10명 20,000천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급 : 2명, 4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명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200	21,278	-	22,922	
2024	27,000	23,498	-	3,502	
2025	27,000	22,041	-	4,95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행정8급 송현지	전화	2621 2624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응급안전관리요원 2명, 장비 636대		
사업목적	독거노인 가정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27,632	143,786	143,770	-1,784	1,800	16,154	
국비	63,816	71,893	71,885	-892	900	8,077	
도비		0				0	
시비	63,816	71,893	71,885	-892	900	8,07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경정(143,786,000원) - 기정(141,986,000원)	= 1,800	

□ 예산요구 사유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처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4년형 장비 운영비 3개월분 추가 변경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인건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집행(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24명
2024	-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31명
2025	-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3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8,128	128,128	-	-	
2024	127,632	126,300	-	1,332	
2025	143,770	35,358	-	108,412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복지7급 김성진	전화	2205
-----	--------	------------	-----	----------	----	------

노인교실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노인대학 외 1개소		대표자	신광철 외 1명	
사업목적	취미·건강·기타 일상생활 관련 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 배움 욕구 충족 및 사회활동 참여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계(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83,000	193,000	183,000	0	10,000	10,000
시비	183,000	193,000	183,000	0	10,000	10,000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0,000	10,000	0	
노인교실지원 (비공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강사료 : 경정(38,240,000원*1개소)-기정(23,240,000원*1개소) = ※ 추가분(50,000원*6명*41회)+(100,000원*1명*27회)	15,000	15,000	0	
노인교실지원 (공모)		· 강사료 : 경정(5,000,000원*1개소)-기정(5,000,000원*2개소)	-5,000	-5,000	0	

□ 예산요구 사유

- 치솟는 물가 대비 강사료는 최근 3년간 계속 동결되어 현 강사료로 노인대학 운영 불가
- 어르신들께 수준 높고 유익한 강의 제공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김포노인대학(비공모) 정상 운영을 위한 강사료 현실화
- 노인교실(공모) 1개소 폐원에 따른 강사료 지원 삭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3.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관내 노인교실 ○ 추진실적 - 김포노인대학 1개소, 173,000천원 지원 - 노인교실(공모) 5개소 중 1개운영으로 인한 20,000천원 감액(제1회 추경) 9,200천원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 관내 노인교실 ○ 추진실적 - 김포노인대학 1개소, 173,000천원 지원 - 노인교실(공모)1개소, 10,000천원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 관내 노인교실 ○ 추진실적 - 김포노인대학 1개소, 173,000천원 지원 - 노인교실(공모)1개소, 5,000천원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203,000	203,000	-	182,200	182,200	-	20,800	20,800	-	제1회추경 (△20,000)
2024	183,000	183,000	-	183,000	183,000	-	-	-	-	
2025	183,000	183,000	-	178,000	178,000	-	5,000	5,000	-	3.2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행정6급 황진	전화	2249
-----	--------	------------	-----	---------	----	------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경로당 76개소 내외	대표자	각 경로당 회장
사업목적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แท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0,000	200,000	100,000	0	100,000	100,000	
시비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자부담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00,000	100,000	0	
경로당 환경개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물품구입 : 1,000,000원*70개소 · 소규모 환경개선 : 5,000,000원*6개소 =	70,000 30,000	70,000 30,000	0 0	

□ 예산요구 사유

- 경로당 시설 및 물품 노후화로 지속적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노후 경로당의 환경개선 지원 확대 필요
 - 25년 상반기 기준 환경개선 선정율 25%(신청 134건, 선정 예정 34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3.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로당 22개소 물품 지원, 21개소 시설보수
2024	○ 경로당 20개소 물품 지원, 22개소 시설보수
2025	○ 경로당 20개소 물품 지원, 14개소 시설보수(예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00,000	100,000	-	99,928	99,928	-	72	72	-	
2024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	-	-	
2025	100,000	100,000	-	-	-	-	100,000	100,000	-	3.2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행정7급 차은영	전화	2207
-----	--------	------------	-----	----------	----	------

김포시추모공원 시설 개선

사업기간	2025. 4. 1. ~ 2025. 12. 31.	사업위치	애기봉로 571번길 165(통진읍 귀전리 83-4 일원)
사업규모	공설장사시설(김포시추모공원)		
사업목적	김포시추모공원 조성공사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서 의견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실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시장은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사시설 관리 2.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운영 3. 공원과 같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4. 시민 생활권과 조화를 이루어 친생활권 조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44,000	0	0	44,000	4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000			44,000	4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4,000	
김포시 추모공원 시설개선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시추모공원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 5필지 * 8,000,000원(평균단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40,000,000원 * 부가세 10%	= 44,000 = 40,000 = 4,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추모공원 조성공사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서 의견(토지정보과 : 지적확정측량 대상)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실시하여 실시계획인가 완료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추모공원 부지 한국토지정보공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44,000천원 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2. :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4.03.~2025.03.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 2025.04.~2025.07. : 지적확정측량 의뢰(한국토지정보공사) 및 실시
 - 2025.08. : 측량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 발생 시 보완 후 재측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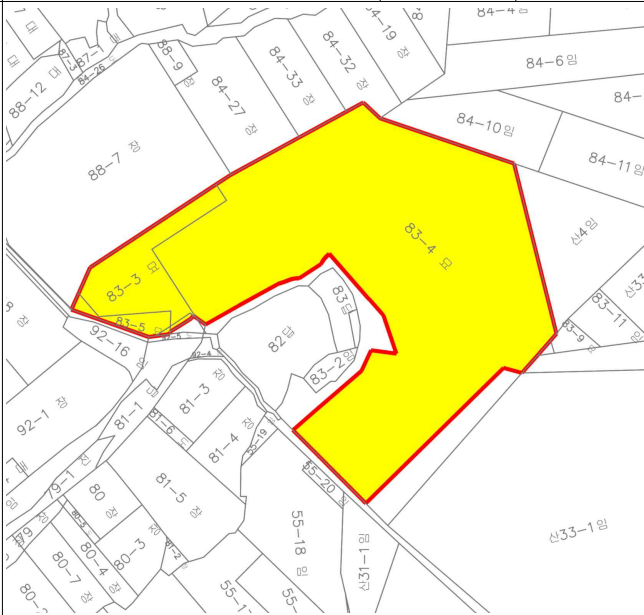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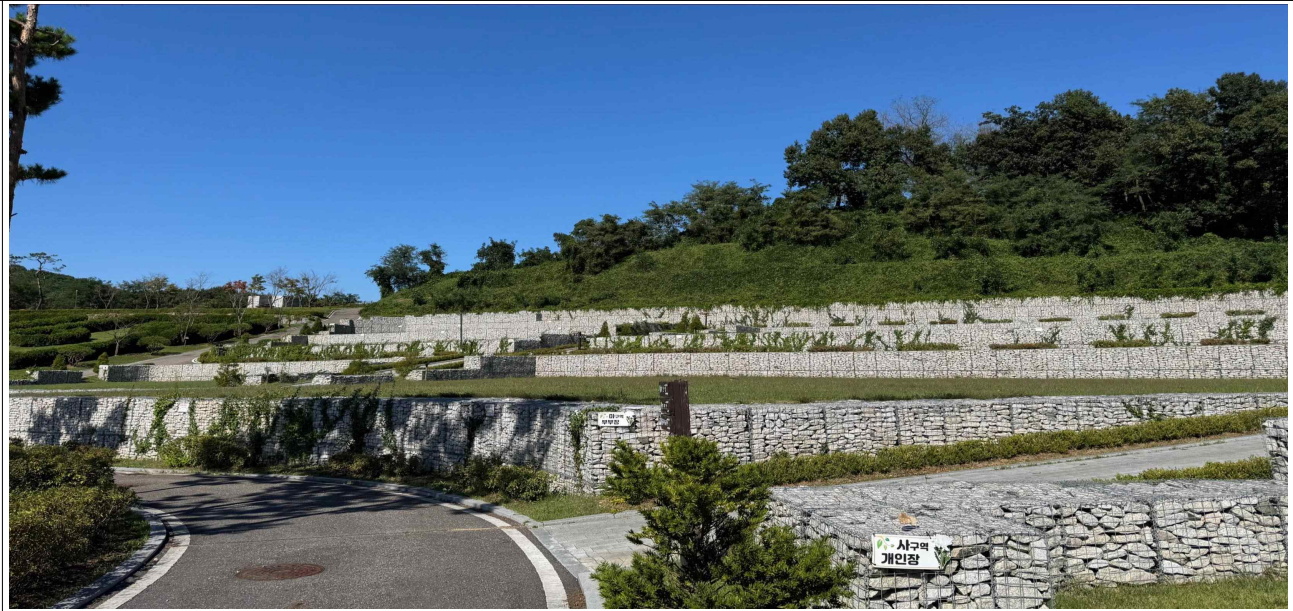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4	- 실시계획인가 관계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서(토지정보과 의견 : 지적확정측량 대상)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
2025	- 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4,370	-	94,000	94,000	명시이월
2024	94,000	42,829	42,829	51,171	반납, 사고이월
2025	42,829	42,829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노인장애인과	사업규모	통진읍 귀전리 83-4번지 외 4필지 (24,392.7㎡)	2회 추경 요구액 (천원)	44,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시추모공원 시설개선 (김포시추모공원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사업위치	애기봉로 571번길 165 (귀전리 83-4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시설8급 김정주	전화	2215
-----	--------	------------	-----	----------	----	------

공설봉안시설 증축

사업기간	2025. 4. 1. ~ 2027.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419-39(마산동 618-1)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1층 연면적 1,097㎡		
사업목적	공설봉안시설 무지개뜨는언덕 만장예상 됨에 따라 기존 무지개뜨는언덕 부지 내 봉안시설 증축으로 도심 내 봉안당 수요에 대응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시장은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사시설 관리 2.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운영 3. 공원과 같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4. 시민 생활권과 조화를 이루어 친생활권 조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0,845	0	0	20,845	20,84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845			20,845	20,84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845	
공설봉안시설 증축	401-01 시설비	○ 김포시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건축기획 용역 .6,044,774,000원 / 1.1 * 4.319% * 0.008 = 18,900,000원 .18,900,000원 * 손해배상공제 0.289% = 50,000원 .18,950,000원 * 부가세 10% = 1,895,000원	= 20,845 = 18,900 = 50 = 1,895	

□ 예산요구 사유

- 공설봉안시설 무지개뜨는언덕 건축물 연면적 1,097㎡(지하1층, 지상 1층) 증축 공사비
- 봉안실(봉안기 약 7,168기 증), 연결통로 등 조성을 위한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공사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완료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절차에 필요한 건축기획 용역 실시(증 20,845천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반영	-	-	-
일자	2024.11 반영	2024.11.11.	-	-	-	-	2025.3.1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9. : 공설보안시설 만장대비 증설 계획 수립
 - 2024.11. : 공설보안시설 증축 투자심사 완료
 - 2025.03. : 공유재산 심의(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료
 - 2025.04. : 건축기획 용역 실시(120일)
 - 2025.0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 2025.09. : 공공건축 심의 의뢰(건축과 공공건축팀)
 - 2026.01.~2026.03. : 2026년 본예산 설계비 편성 및 설계공모(90일)
 - 2026.04.~2026.09. : 실시설계 용역(150일) 및 경기도 계약심사(30일)
 - 2026.10. :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선정
 - 2026.11.~2027.12. :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6,650,720	0	20,845	0	0	20,845	6,629,875	
공 정 별	설계비	249,203	0				249,203	
	보상비	0	0					
	공사비	6,044,110	0				6,044,110	
	감리비	336,562	0				336,562	
	부대비	20,845	20,845			20,845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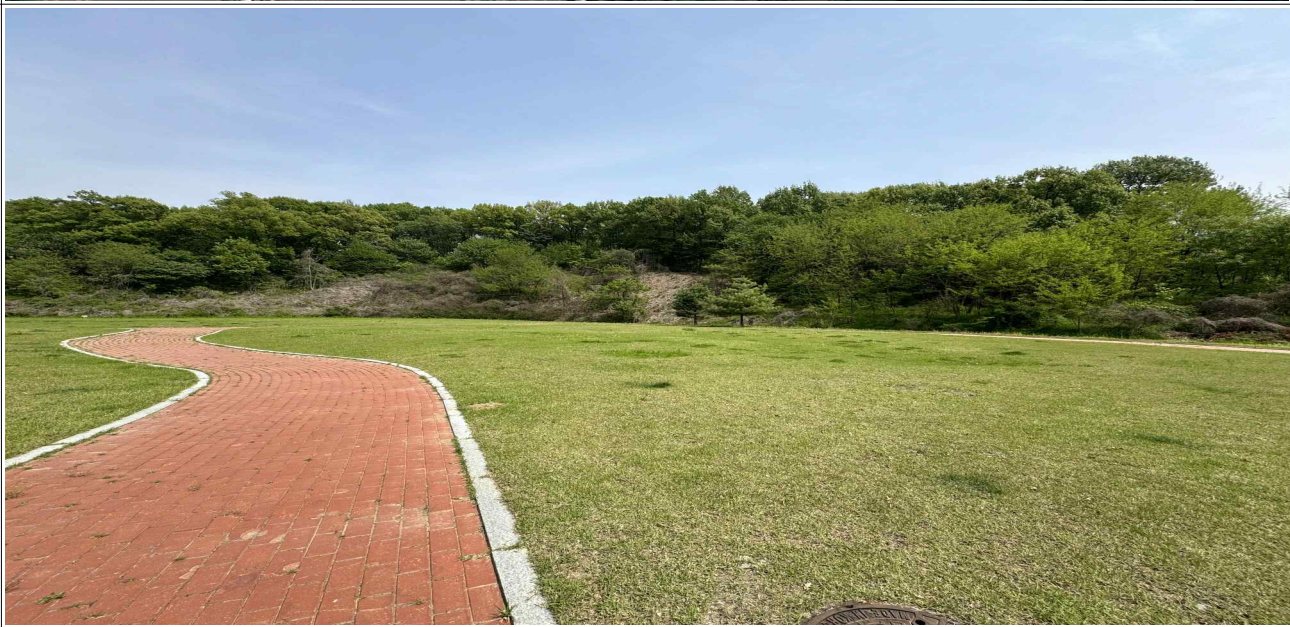
2023	-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완료
2025	공유재산심의(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노인장애인과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연면적 1,097㎡)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0,845
부기명 (세부사업)	공설봉안시설 증축 (김포시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건축기획 용역)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419-39 (마산동 618-1)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시설8급 김정주	전화	2215
-----	--------	------------	-----	----------	----	------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66명		
사업목적	활동지원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에 가산수당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265,316	1,399,355	1,168,623	0	230,732	134,039	
국비	885,721	979,525	818,036		161,489	93,804	
도비	56,939	62,948	52,588		10,360	6,009	
시비	322,656	356,882	297,999		58,883	34,22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0,732	
활동보조 가산급여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702,490원*166명*12월)-기정(586,660원*166명*12월) =	230,732	

□ 예산요구 사유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의 경우 426점 이상, 아동의 경우 327점 이상인 대상자 활동보조사의 시간당 단가에 가산수당 추가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평균지급액 상승(586,660원→702,490원)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연간 이용인원 : 112명 - 연간 제공인력 : 276명
2024	- 연간 이용인원 : 127명 - 연간 제공인력 : 285명
2025	- 연간 이용인원 : 113명 - 연간 제공인력 : 20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29,901	1,129,901	-	-	
2024	1,265,316	1,265,316	-	-	
2025	1,168,623	588,738	-	579,885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7급 김효정	전화	2211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79명			
사업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지자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지원함으로써 돌봄공백 발생을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660,568	3,221,074	2,899,534	0	321,540	-439,49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60,568	3,221,074	2,899,534		321,540	-439,49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1,54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자체)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김포시 추가지원 경정(16,620원*679명*20시간*9월)-기정(16,150원*433명*20시간*12월) =	351,992	
		.김포시 24시간 지원 경정(16,620원*18명*330시간*12월)-기정(16,150원*19명*330시간*12월) =	-30,452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도비)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고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장애인에게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모든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장애인 중 사지마비(와상)인 최종증장애인의 안전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월 330시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추가지원 대상자 증가(433명→679명) 및 시간당 단가 변경(16,150원→16,620원)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24시간 지원 : 20명 - 김포시 추가지원 : 650명
2024	- 김포시 24시간 지원 : 19명 - 김포시 추가지원 : 906명
2025	- 김포시 24시간 지원 : 18명 - 김포시 추가지원 : 80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97,404	2,297,404	-	-	
2024	3,660,568	3,660,568	-	-	
2025	2,899,534	2,006,100	-	893,434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7급 김효정	전화	2211
-----	--------	-------------	-----	----------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기간		2025. 7. 1.~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0명		
사업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410,047	0	0	410,047	410,047	
국비		287,033			287,033	287,033	70%
도비		18,452			18,452	18,452	4.5%
시비		104,562			104,562	104,562	2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0,047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량 소요액 약 41,005천원 * 10명 ≒ 410,047천원	≒ 410,047	

□ 예산요구 사유

-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주간그룹 프로그램」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진행현황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소망의집(양춘읍 김포한강3로 100-91) 즐거운집(월곶면 점동로96번길 24)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법인이 아닌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 및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48,400	266,093	106,592	0	159,501	17,693	
국비		0				0	
도비	49,680	79,828	31,978		47,850	30,148	
시비	198,720	186,265	74,614		111,651	-12,45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9,051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개인운영 거주시설 2개소 : 경정(266,093,000원)-기정(106,592,000원) =	159,051	

□ 예산요구 사유

-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개인운영시설 2개소 지원
2024	- 개인운영시설 2개소 지원
2025	- 개인운영시설 2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8,400	248,400	-	-	
2024	248,400	238,000	-	10,400	
2025	106,592	-	-	106,592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복지8급 박희연	전화	2218
-----	--------	-------------	-----	----------	----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6개소			
사업목적	장애인 사회재활 증진 및 돌봄 부담 경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636,000	3,308,764	3,258,764	0	50,000	672,764	
국비		0				0	
도비	263,600	330,876	325,876		5,000	67,276	
시비	2,372,400	2,977,888	2,932,888		45,000	605,48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위탁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경정(2,666,341,000원)-기정(2,616,341,000원)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인건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선정(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으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 9. 2023. 9.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 운영 지원
202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 운영 지원
2025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소 운영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98,410	1,952,365	-	446,045	
2024	2,636,000	2,130,665	-	505,335	
2025	3,258,764	2,450,556	-	808,208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2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7개소		
사업목적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의 차량 운영 등 서비스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8,600	56,200	46,200	0	10,000	27,600	
국비		0				0	
도비	2,860	5,620	4,620		1,000	2,760	
시비	25,740	50,580	41,580		9,000	24,84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2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환경개선비 경정(56,200,000원)-기정(46,200,00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환경개선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선정(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따른 환경개선비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차량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6개소 지원
2024	- 차량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6개소 지원
2025	- 차량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7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600	25,651	-	2,949	
2024	28,600	27,530	-	1,070	
2025	46,200	35,000	-	11,2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인력운영비(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공무직 근로자)		
사업목적	노인일자리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1호, 제4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사업 ④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1항을 제외한 위의 사업들의 세부지원내용은 노인복지법령 및 경기도 노 인보건복지사업 지침의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1,938	10,438	0	1,500	11,9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938	10,438		1,500	11,93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공무직 정년퇴직 위로여행비 1,500천원 지원	= 1,500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일자리 담당자(공무직 근로자) 연령도래로 인한 퇴직예정자로 복리후생비 신설
- 근거 : 단체협약 제40조
- 대상 : 해당년도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에 한하여 국내여행 포상금 150만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총무과-3842(2025. 2. 6.)호와 관련, 20024년 공무직근로자 보수, 복무, 복리후생 안내자료에 따라 노인일자리 담당자(공무직 근로자) 복리후생비 신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2020.02 :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성 영향검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노인장애인과 전담이력(공무직) 1명 제수당 8,677천원 지급
2024	- 노인장애인과 전담이력(공무직) 1명 제수당 10,415천원 지급
2025	- 노인장애인과 전담인력(공무직) 1명 제수당 지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677	8,372	-	-	
2024	10,460	10,415	-	45	
2025	10,438	6,093	-	4,345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가족문화과

양성평등위원회 등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목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조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규정	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7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080	6,240	2,200	0	4,040	4,1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80	6,240	2,200		4,040	4,1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40	
양성평등 위원회 등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경정(160,000원*3명*3회)-기정(100,000원*3명*2회)	= 840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자문수당 : 경정(100,000원*16시간*3회)-기정(100,000원*16시간)	= 3,200	

□ 예산요구 사유

- 성희롱·성폭력 피해 접수 시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2차 피해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업무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이유로 심의 및 자문 시간 소요되는 등 예산 증대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각 1회
2024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각 1회
2025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각 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80	2,000	-	80	
2024	2,080	1,560	-	520	
2025	2,200	2,200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6급 손재호	전화	5582
-----	-------	------------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가족 보호 및 지원으로 자립과 사회적응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35,879	246,696	242,079	1,617	3,000	10,817	
국비	164,116	172,087	169,455	1,132	1,500	7,971	
도비	35,882	37,304	36,312	242	750	1,422	
시비	35,881	37,305	36,312	243	750	1,42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국비 운영비)	401-01 시설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화장실 보수 공사)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화장실 보수 공사 및 노후 배관 정비

□ 예산증감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화장실 개보수 공사 실시
- 2025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2207(2025.02.0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2025.7. : 공사추진 계획 수립
 - 2025.08. ~ 2025.9. : 화장실 개보수 공사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자재 구입 (사무용 노트북, 8인용 식탁의자 세트, TV)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1,264	221,264	-	-	
2024	235,879	227,368	-	8,511	
2025	243,696	65,562	-	178,134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가정폭력 피해자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제4조제2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2,000	14,500	12,000	0	2,500	2,500	
국비	8,400	10,150	8,400		1,750	1,750	
도비	1,800	2,175	1,800		375	375	
시비	1,800	2,175	1,800		375	37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 2,5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및 동반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회복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1663(2025.01.2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2025.03.~2025.12.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개별상담(42회), 집단상담(25회), 심신회복캠프(2회), 기타 치료프로그램(7회)
2024	○ 개별상담(35회), 집단상담(24회), 심신회복캠프(1회), 음악치료(2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700	20,700	-	-	
2024	12,000	12,000	-	-	
2025	12,000	-	-	12,0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기간	2025. 7. 1. ~ 2025.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사업규모	162㎡ (1층 90㎡ / 2층 72㎡)		
사업목적	시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협력 운영 중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통역·상담실 등 업무 공간에 대한 재배치를 추진, 민원인 대기 및 직원 사무공간 부족 문제 해결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2,000	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			22,000	2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401-01 시설비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22,000,000원*1개소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에서 김포시,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협력 운영 중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민원대기공간 및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
- 사무공간 재배치 및 인테리어 시행
 - 현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 내 통역·상담실을 법무부 사무공간(출입국 및 체류업무)으로 제공
 - 1층 민원대기공간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 사무실·회의실 → 통역·상담실로 활용
 - 2층 교육실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 사무실·회의실로 활용

□ 예산증감 사유

-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통역·상담실 등 사무공간 재배치 소요 예산 편성
(출입국·체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확장 소요 예산은 법무부에서 별도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적정	-	동의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2025.2.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0.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업무공간 확장 요청(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14924호)
 - 2024.11.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무 공간 재배치 추진 계획 수립
 - 2025.02. : 2025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25.07. : 공사착공
 - 2025.08.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2,000	0	22,000	0	0	22,00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0		0					
	공사비	22,000		22,000			22,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가족문화과	사업규모	사무실, 회의실, 서고, 통역·상담실 공간 재배치 및 인테리어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2,000
부기명 (세부사업)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위치도					
현장사진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김포출입국센터 내부 전경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임지숙	담당자	행정7급 김완병	전화	5604
-----	-------	------------	-----	----------	----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장기동 1888-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586,443	150,000	0	436,443	586,443	
국비		0				0	
도비		36,000	36,000			36,000	
시비		550,443	114,000		436,443	550,44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36,443	
반려견 놀이터 조성	401-01 시설비	· 조성공사(부지작업, 배수공사, 조경공사, 시설물 설치 등) : 경정(556,443,000원) - 기정(120,000,000원)	= 436,443	

□ 예산요구 사유

-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으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및 사회적 갈등 완화 도모
- 김포시에는 현재 태산패밀리파크(하성면) 반려견 놀이터 1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며 반려가구가 많은 신도시 내에 신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함(타 지자체 평균 2~3개 운영중)

□ 예산증감 사유

- 반려견 놀이터 설치시(「경기도 동물복지 반려동물 시책 추진계획」참고) 기본 필수시설(대형견과 중·소형견을 구분한 놀이공간, 울타리 및 출입문, 격리장, 음수시설, 배변봉투함, 이용자 수칙 안내문)과 관리시설(관리소, CCTV 및 조명시설), 편의시설(의자, 차양시설, 화장실 등) 조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	반영	-	-
일자	2024.11 반영	2024.11	-	-	-	-	-	2024.11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2024.10. : 놀이터 부지 검토
 - 2024.10. :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 수립
 - 2025.04. ~ 2025.06. : 실시설계용역
 - 2025.08. : 계약심사 및 공사업체 선정
 - 2025.09. ~ 2025.11. : 놀이터 조성 공사
 - 2025.11. : 놀이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인력 채용
 - 2025.11. : 반려견 놀이터 개장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가족문화과	사업규모	4,000m ²	2회추경 요구액 (천원)	436,443
부기명 (세부사업)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위치	장기동 1888-3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7급 이혜진	전화	5557
-----	-------	------------	-----	----------	----	------

반려문화 축제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
사업규모	반려문화 축제 1회 개최		
사업목적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개최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제4호 및 제7호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30,000	0	0	30,000	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			30,000	3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반려문화 축제	201-03 행사운영비	· 반려문화 축제 행사 용역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함께 반려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반려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552만 가구, 1,262만명)(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참고)에 달함
-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김포시 제1회 반려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어울리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다채로운 행사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축제개요(안) 참고)

※ 축제개요(안)

- 축 제 명 : (가칭) 제 1회 김포시 반려문화 축제 ‘해피 투게더’
- 일 시 : 2025. 10월 중
- 장 소 : 김포 아라마리나 문화광장(예정)
- 행사구성(안)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사전행사	① 축제 홍보모델 콘테스트	반려동물 사진 오디션을 통해 홍보모델 선발, 축제 홍보물(영상, 포스터 등) 활용
주요 프로그램	① 가을밤 반려동물 영화제	반려동물과 함께 보는 단편영화 상영
	② 반려동물 세미나	반려동물 관련 명사특강 [반려동물 문화교실]
	③ 기다릴개	반려견 멍때리기 대회
	④ 달려갈개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기록 측정
	⑤ 반려동물 도전! 골든벨	반려동물 관련 상식 퀴즈대회
시민참여 마당	① 반려동물 펫로깅 캠페인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산책 + 쓰레기 줍기
	② 반려용품 바자회	유기동물 병원비 마련 바자회
	③ 반려동물 스냅	전문 사진작가의 반려동물 기념사진
	④ 반려용품 만들기 체험	인식표 만들기,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등
홍보마당	① 반려문화 정책 홍보	동물등록, 펫티켓 등 홍보
	② 찾아가는 보건 상담소	반려동물 건강관리 상담
	③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유기동물 입양 및 지원제도 홍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반영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2025.4.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축제 기본 계획 수립
 - 2025.07. : 축제 운영 대행 입찰 공고 및 행사용역 업체 계약
 - 2025.08. :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2025.09.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 2025.10. : 반려문화 축제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7급 이해진	전화	5557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아동보육과



김포시보육계획 수립 용역

사업기간	2025. 5.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연구용역 1건 (180일)		
사업목적	김포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으로 보육발전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2,000	0	0	22,000	22,0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2,000			22,000	22,00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보육정책 지원	207-01 연구용역비	· 김포시보육계획 수립 용역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 수립 의무
- 보육 연구기관 의뢰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보육정책 추진의 전문성 확립
- 보육수요 공급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김포시 보육발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보육계획(2026년~2030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0천원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2025. 6. : 실행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2025. 7. : 용역 착수
 - 2025. 11. : 중간보고회
 - 2025. 12. : 최종보고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 권미진	담당자	사회복지6급 류소령	전화	5324
-----	-------	------------	-----	------------	----	------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197명		
사업목적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318,200	1,318,200	0	0	1,318,200	
국비		0	0		0	0	
도비		1,318,200	1,318,200		0	1,318,200	
시비		0	0		0	0	
기타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누리과정 추가지원 : 2,197명*50,000원*12개월	= -1,318,200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누리과정 추가지원 : 2,197명*50,000원*12개월	= 1,318,200	

□ 예산요구 사유

- 사업 지급 방식 변경(e호조 통한 시군구 지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정관리부 지급)에 따른 통계목 변경 [경기도 보육정책과-3753(2025. 2. 19.)호]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5세 아동	50,000원	8,710명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4~5세 아동	50,000원	92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09,000	433,988	-	175,012	
2025	1,318,200	137,689	-	1,180,511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아동복지교사 19명		
사업목적	아동복지교사에게 일자리제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 제 1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39,094	342,954	342,954	0	0	3,860	
국비	169,548	171,477	171,477		0	1,929	
도비	84,773	85,739	85,739		0	966	
시비	84,773	85,738	85,738		0	965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아동복지교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주25시간 : 1,000,000원*2명*5개월	= 10,000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주25시간 : 1,000,000원*2명*5개월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아동복지교사의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을 기간제 아동복지교사로
충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향상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공무원 아동복지교사의 정년퇴직(2명) →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채용(2명)으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예산 통계목 변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지역아동센터 파견 및 교육 진행
 - 2025.01.~2025.12 : 매월 5일 급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아동복지교사 19명 지원
2024	- 아동복지교사 18명 지원
2025	- 아동복지교사 17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8,112	329,187	-	8,925	
2024	339,094	337,258	-	1,836	
2025	342,954	55,957	-	286,997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나연	전화	5529
-----	-------	------------	-----	------------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기간	2025.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그룹홈 4개소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61,216	584,112	581,712	0	2,400	22,896	
국비	223,910	233,645	232,685		960	9,735	
도비	168,653	175,233	174,513		720	6,580	
시비	168,653	175,234	174,514		720	6,58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경정(584,112,000원) - 기정(581,712,000원) · [냉난방비 : 300,000원*2개월*4개소]	= 2,400	

□ 예산요구 사유

-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보조금 지원 대상 아동그룹홈(4개소)
 - 지원 대상 : 시설 당 총 600,000원(300,000원*2개월)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

※ 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확정내시 및 부담지시서 알림[경기도 아동돌봄과-29454(2024.12.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2025. 12. : 냉·난방비 각 시설 당 2개월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인건비, 운영비 5개소 지원(소풍, 다움, 가온길, 드리머, 은빛마을) ※ 가온길 폐지(2023.10.31.)
2024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소풍, 다움, 드리머, 은빛마을)
2025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소풍, 다움, 드리머, 은빛마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9,143	486,564	-	72,579	
2024	562,976	562,974	-	2	
2025	581,712	147,828	-	433,884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태혁	전화	2263
-----	-------	------------	-----	------------	----	------

보건소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울생로 83-23
사업규모	보건지소 5개소		
사업목적	신속한 민원응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2조제1항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6,910	103,427	82,427	0	21,000	26,51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6,910	103,427	82,427		21,000	26,51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대곶면 보건지소 이사비용 : 1,000,000원*1회	= 1,000	
	401-01 시설비	· 대곶면 보건지소 사무공간 조성 : 20,000,000원*1회 .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사무 및 휴게공간 마련
- 보건지소 민원인 접근성 향상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사무공간 조성 · 이사비용 필요
(기존 보건지소(54.91㎡) →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102㎡)로 사용면적이 늘어나고 민원인들의 접근성 향상됨)

□ 예산증감 사유

- 대곶면 보건지소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 전기, 소방공사, 벽면도색, 칸막이 설치 필요
- 사용중인 사무가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보건지소 운영
 - 2025.07~2025.09. : 사무공간 조성 및 청사이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대곶면보건지소, 하성면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23.4.~12. - 보건지소(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진료 : 489건 - 고촌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보건지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77건, 치매인지선별검사 214건, 제증명 발급 388건
2024	- 대곶면보건지소, 하성면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관사 임대료 지급 : '24.1.~3. - 대곶면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24.4.~12. - 보건지소(월곶면·하성면·대곶면·양촌읍) 진료 : 668건 - 고촌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양촌읍 보건지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82건, 치매인지선별검사 180건
2025	-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임차료 : '25.1.~3. - 보건지소(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진료 : 249건 - 고촌읍·양촌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보건지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8건, 치매인지선별검사 48건, 제증명 발급 28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364	57,992	-	372	
2024	76,910	42,214	-	34,696	
2025	82,427	23,228	-	59,19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고종중	담당자	공업7급 송태현	전화	4006
-----	-------	------------	-----	----------	----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대로 829(사우동)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14
사업규모		설치의무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서울여성병원, 김포다조은병원)		
사업목적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41,080	12,080	0	29,000	41,080	
국비		20,540	6,040		14,500	20,540	
도비		0				0	
시비		20,540	6,040		14,500	20,540	
기타		41,080	12,080		29,000	41,08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000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 경정(0원) -기정(12,080,000원)	= -12,080	증 29,000 (통계목 변경 및 증액)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 12,080,000원*1개소+29,000,000원*1개소 * 병상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41,08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의료자원과-4855(2025. 2. 27.)호 관련, 변경내시 통보
- 관내 미설치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추가 지원
-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26.12.31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25년 내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의료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필요
-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은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관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1개소(김포다조은병원) 추가 지원 신청에 따른 예산 증액
- 총 2개소 지원: 서울여성병원, 김포다조은병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8.20.~2024.08.30.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자료제출
 - 2024.09.23. : 지원사업 최종 선정(1개소)
 - 2025.02.18.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추가예산 지원 신청
 - 2025.02.27. : 지원사업 추가 선정(1개소)
 - 2025.08.01.~2025.08.31. : 공사 관련 사전안내(외래 및 입원환자 공지)
 - 2025.09.01.~2025.09.30.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10.~ : 설치비용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해당없음
2024	- 관내 의료기관 대상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수요조사
2025	- 관내 의료기관 대상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2,080	-	-	12,08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최보라	담당자	간호6급 최보라	전화	4016
-----	-------	------------	-----	----------	----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보조금 지원(2개소)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응급의료센터 2개소		
사업목적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17조제4항
	제16조(재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40,000	0		240,000	240,000	
국비		168,000			168,000	168,000	
도비		72,000			72,000	72,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00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보조금 지원(2개소)	= 24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응급의료과-4248(2024.09.23.)호, '25년부터 해당 시·군 예산 직접교부 예산편성 요청
경기도 응급의료과-4161(2025.03.26.)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확정 통보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실 전담 근무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금 70%, 도비 30%)
 - 지원대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차등 지급(A등급 : 140,000천원, B등급 : 100,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반영예정(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9.23. : 202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2025.03.26. : 202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확정 통보
 - 2025.05.~12. :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교부
 - 2025.12. : 보조금 지원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8급 윤세희	전화	4113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550명		
사업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771,900	622,500	0	149,400	771,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71,900	622,500		149,400	771,9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9,4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01-02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경정(498,000원*1,550명)-기정(498,000원*1,250명)	= 149,400	

□ 예산요구 사유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을 제고
 - 대상 : 김포시 출산가정(거주기한 180일 제한)
 - 내용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 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지원 대상자는 2024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180일 이상 김포시에 거주하고 서비스 이용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산모로 2024년 7월~12월 서비스 종료한 산모에 대한 일부 지원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7.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본인부담금 지원 규정 신설, 김포시 전 출산가정 지원)
 - 2024.01.~2024.12. : 사업 미추진(예산 미편성)
 - 2024.05.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수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김포시 180일 거주제한 신설 등)
 - 2024.07. : 김포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10. : 김포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024.12.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사업 홍보
 - 2025.01.~2025.12. :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지원
 - 2025.12. :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700명(1월, 2월 지원신청자 지원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22,500	339,051	-	283,44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첫만남 이용권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268명(예산대비 목표인원)		
사업목적	전 출생아 대상 바우처 제공을 통해 초기 양육비용을 절감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219,000	5,439,000	6,302,000	0	-863,000	-1,780,000	
국비	5,414,250	4,079,250	4,726,500		-647,250	-1,335,000	
도비	541,425	407,925	472,650		-64,725	-133,500	
시비	1,263,325	951,825	1,102,850		-151,025	-311,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63,000	
첫만남이용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첫만남이용권 : 경정(첫째아 2,000,000원*1,365명+둘째아 3,000,000원*903명) = -기정(첫째아 2,000,000원*1,585명+둘째아 3,000,000원*1,044명)	-863,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가족정책과-4236(2025. 3. 14)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잔액 및 부족액에 따른 시군별 예산 조정
- 김포시는 2024년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잔액 1,147,202천원으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 홍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집행 협조 요청
 - 2025.01.~12.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연중 접수 및 바우처 지급
 - 2025.12 : 사업정산 및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867명
2024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542명
2025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67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44,000	5,744,000	-	-	
2024	7,219,000	7,219,000	-	-	
2025	6,302,000	3,669,128	-	2,632,872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간호6급 연은영	전화	4151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유형의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0,667	0	0	10,667	10,667	
국비		0				0	
도비		3,200			3,200	3,200	30%
시비		7,467			7,467	7,467	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667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 226,700원*10회 = 2,267 · 자살유족 힐링프로그램 운영 : 1,000,000원*3회 = 3,000 · 자살유족 개별상담 강화물품: 35,000원*20명 = 700 · 자살유족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위로패키지 : 35,000원*20명 = 700 · 자살유족 연계기관 (경찰, 소방 등) 홍보물품 : 5,000원*800개 = 4,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4122(2025.2.28.)호 관련, 확정내시 통보
- 자살유족관리현황 : 김포시 자살유족 자조모임 참여 인원 70명('24년)
-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생각률은 일반인 대비 약 10배로 자살로 인한 연쇄사고 방지를 위해 적시에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출처: 2022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 2013 자살실태조사 분석결과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2.28. : 경기도 정신건강과-4122 '25년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사업 확정내시
 - 2025.08~2025.12 :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 관리사업 운영) 추진
 - 2025.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10회, 69명 - 자살유족 힐링프로그램운영 1회 - 자살유족 개별상담(마음건강교육) 6회 - 등록관리 30명, 사례관리 201명
2024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12회, 70명 - 자살유족 힐링프로그램운영 1회 - 자살유족 개별상담(마음건강교육) 9회 - 등록관리 41명, 사례관리 704명
2025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2회, 15명 - 자살유족대상 동료지원활동가 특강 1회 - 등록관리 42명, 사례관리 9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심필기	담당자	간호6급 이명옥	전화	4122
-----	-------	------------	-----	----------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지역		
사업목적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금연 실천 유도로 흡연률 감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 제9조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23,370	205,840	205,840	0	0	-17,530	
국비	111,685	102,920	102,920		0	-8,765	
도비		0				0	
시비	111,685	102,920	102,920		0	-8,76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본급 - 경정(11,400원*8시간*1명*4월(83일))-기정(11,400원*4시간*1명*4월(83일)) = 3,785 · 4대보험료 - 경정(9,576,000원*14%*1명)-기정(5,781,200원*14%*1명) = 531	3,785 531	4,316
	301-14 기타보상금	· 금연성공기념품 등 : 경정(42,460원*201개)-기정(50,000원*201개) = -1,516	-1,516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 서비스)	304-04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 2019년 퇴직적립금 : 경정(0원)-기정(2,800,000원) = -2,800	-2,800	

□ 예산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시 금연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였으나, 조정과정에서 4시간으로 산정되어 8시간으로 조정 필요
- 필요예산 확보를 위해 금연성공기념품 평균 구입 단가를 낮추고, 공무원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기간제 인건비로 변경 사용 ※ 2019년 퇴직적립금 건: 2024년 예산에서 적립 완료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금연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제출
 - 2025.01~2025.12 : 금연사업 추진(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 2025.12. : 금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101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978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8,382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43건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3개소(총 53개소)
2024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137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906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8,398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32건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3개소(총 56개소)
2025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298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14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1,076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3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1,540	222,207	-	9,333	
2024	223,370	216,593	-	6,777	
2025	205,840	29,701	-	176,13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심필기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5
-----	-------	------------	-----	------------	----	------

목면읍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2025. 09. ~ 2025. 10.	사업위치	통진읍 동을산리 678번지 일원	
사업규모		아스콘 재포장 B=4m, L=550m / 용수로설치 400C, L=100m			
사업목적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60,000	0	0	60,000	6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00			60,000	6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 아스콘 재포장(B:4.0mx550m) : 2,700,000원 * 17a	= 45,900	
		· 용수로설치(U형플룸관 400C) : 130,000원 * 100m	= 13,000	
		· 부대비 : 1,100,000원 * 1식	= 1,100	

□ 예산요구 사유

- 심한 도로 파손으로 인해 열악한 통행 환경 개선
-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 예산증감 사유

- 파손된 도로 복구 등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 필요
-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공사 착공
 - 2025. 10.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통진읍	사업규모	아스콘 재포장(B=4.0m, L=550m) 용수로 설치(400C, L=100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60,000
부기명 (세부사업)	동을산3리 용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사업위치	통진읍 동을산리 678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통진읍	산업개발팀장 박철옥	담당자	시설8급 조세륜	전화	3242
-----	-----	------------	-----	----------	----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1로 77(통진읍행정복합청사)
사업규모	통진읍행정복합청사 1개소(건축물 2동, 대지면적 8,424.4㎡, 연면적 15,193.67㎡)		
사업목적	적정한 청사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45,315	676,171	673,871	0	2,300	30,85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45,315	676,171	673,871		2,300	30,85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00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 저단형 현수막 공공게시대 설치 : 1,150,000원 * 2대	= 2,300	

□ 예산요구 사유

- 통진읍행정복지센터의 행사 및 기타 안내 등 외부 홍보를 위한 구조물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주요 시정의 실시간 홍보를 위한 청사 외부 공공게시대 설치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 착수 및 유지관리비용·제세 집행
 - 2025. 05. : 청사 외부 공공게시대 설치
 - 2025. 04. ~ 06. :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상반기 저수조 청소
 - 2025. 07. ~ 12. : 주요 부품(공조기 필터 등) 교체 및 하반기 저수조 청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02. : 통진읍행정복합청사 신청사 개청 - 2023. 02. : 청사관리 관련 용역 계약 체결(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전기·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 등) - 2023. 01. ~ 12. : 신청사 개청 및 청사 관리 소요 예산 집행(904,768천원)
2024	- 2024. 01. : 청사관리 관련 용역 계약 체결(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전기·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 등) - 2024. 01. ~ 12. : 청사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집행 중
2025	- 2025. 01. : 청사관리 관련 용역 계약 체결(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전기·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 등) - 2025. 01. ~ 12. : 청사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집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0,630	223,721	-	36,609	청사관리
	356,832	235,442	-	82,509	통진읍 행정복합청사개청 (민간위탁사업비)
2024	645,315	503,194	-	142,121	
2025	673,871	111,798	-	562,073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통진읍	부읍장 김윤성	담당자	행정7급 김예진	전화	3202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고촌읍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고촌복지회관	
사업규모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및 고촌복지회관 청사 유지관리			
사업목적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 이용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51,859	622,364	612,364	0	10,000	70,50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51,859	622,364	612,364	0	10,000	70,50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청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읍 청사 에너지진단 수수료 : 10,000,00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법정 정기(5년 주기) 에너지진단 필요
※ 고촌읍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에너지진단 완료

□ 예산증감 사유

- 법정 필수 이행 청사 유지관리(에너지진단)를 위한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2025.07 : 읍 청사 에너지진단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1,228천원(집행률 85.1%)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39,892천원(집행률 66.2%)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413,313천원(집행률 88.89%) - 시설비 : 19,100천원(집행률 99.9%) - 자산및물품취득비 : 8,068천원(집행률 99.9%)
2024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1,949천원(집행률 86.3%)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190,501천원(집행률 85.84%)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50,056천원(집행률 96.9%)
2025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0,796천원(집행률 14.9%)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31,504천원(집행률 12.8%)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67,456천원(집행률 28.8%) - 자산및물품취득비 : 0천원(집행률 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4,313	546,980	-	77,333	
2024	551,859	502,506	-	49,353	
2025	612,364	109,757	-	502,607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고촌읍	부읍장 최성기	담당자	공업8급 김태우	전화	3254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대곶면



상마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사업기간	2025. 8. ~ 2025. 12.	사업위치	대곶면 상마리 259-1번지 일원
사업규모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35a		
사업목적	파손된 공장단지 진입로를 재포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70,000	0	0	70,000	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000			70,000	7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 상마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 아스콘 재포장 35a*2,000천원 L=700m, B=5m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공장단지 진입로 파손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 다수 발생
- 아스콘 재포장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8. : 실시설계 및 계약
 - 2025.09. : 공사착공
 - 2025.10.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0,000	0	70,000	0	0	70,00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0		0				
	공사비	70,000		70,000			7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대곶면	사업규모	L=700m, B=5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70,000
부기명 (세부사업)	상마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사업위치	상마리 259-1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곶면	산업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8급 김정현	전화	3381
-----	-----	------------	-----	----------	----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대곶면 읍생로 83-23 일원
사업규모	대곶문화복지센터 및 대곶면주민자치센터 등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목적	청사시설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편의 청사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49,788	242,436	235,876	0	6,560	92,64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9,788	242,436	235,876		6,560	92,64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560	
청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 경정(880,000원*12월)-기정(450,000원*12월) = 5,160 · 저수조 청소 : 700,000원*2회 = 1,400		

□ 예산요구 사유

- 신청사 전기용량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증가
- 저수조 청소로 청사 유지관리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미확보시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용 지급 불가
- 예산 미확보시 청사 저수조 청소(연 2회 실시)가 불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전기 안전관리 유지관리 비용 지급
 - 2025. 05. ~ 2025. 12. : 저수조 청소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6,306천원(2인)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15,795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73,739천원
2024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31,540천원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30,677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61,226천원
2025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6,262천원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15,550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46,92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1,559	105,840	-	5,719	
2024	149,788	123,443	-	25,345	
2025	235,876	68,734		167,142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곶면	부면장 김태우	담당자	행정7급 황지희	전화	3352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월곶면



고막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기간	2025. 4. ~ 6.	사업위치	고막리 443-32번지 일원
사업규모	우수관로 설치 및 도로포장(D=1000mm, B=4.0m, L=300m)		
사업목적	매년 주택 및 농지 침수가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피해 미연 방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률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55,000	0	0	155,000	15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55,000	0	0	155,000	15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5,000	
고막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용역(측량 포함) = 10,000 · 우수관로 설치(D=1000mm): 300m*400,000원/m = 120,000 · 콘크리트 포장: 10a*2,500,000원/a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태풍 발생 등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빈번한 고막리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택 및 농지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04. : 실시설계(측량 포함)
 - 2025.05. ~ 06.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월곶면	사업규모	우수관로 설치 및 도로포장 (D=1000mm, B=4.0m, L=300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55,000
부기명 (세부사업)	고막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위치	고막리 443-32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월곶면	산업개발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8급 방현욱	전화	3432
-----	-----	------------	-----	----------	----	------

공용차량 구입(화물트럭)

사업기간		2025. 7. ~ 2025. 8.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263	
사업규모		공용차량 1대 구입			
사업목적		신규차량 구매를 통한 행정업무의 능동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재해재난업무 대응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32,000	0	0	32,000	3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32,000			32,000	3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0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공용차량 구입(화물트럭) : 32,000,000원*1대	= 32,000	

□ 예산요구 사유

○ 필요물품 상세현황

품목	정수번호	비고
공용차량 화물트럭(1대)	교체	김포-다3-8
		2014년 구입, 제철작업에 따른 차량부식 및 과적(모래살포기 탑재) 등의 사유로 차량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안전한 작업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 교체구입필요 (총 운행거리 177,358km)

- 공용차량 관리규정 및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은 최단 운행 연한(9년)과 최단 주행 거리(12만 km)를 초과하였고, 지난 3년간 수리비용으로 9,500천원이 지출되었음.
- 차량의 하부 구동 장치 대부분이 부식 상태임.
- 차량 상부 상태는 앞 유리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들뜨는 상태로, 임의로 실리콘을 이용해 막아 놓았음. 이 상태에서 비나 눈이 내리면 앞 유리와 차량 본체 사이의 틈으로 물이 유입되어, 운전석 바닥이 젖고 전기 계통의 손상, 시야 방해, 주행 중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결함은 운전자의 치명적인 사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특히 이 차량은 재해·재난 대응 차량으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이동이 필요함. 그러나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에서는 시야 방해가 심화되어 차량 운행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의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차량 수리비용이 11,000천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교체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예산증감 사유

- 현장 민원 업무인 환경정화활동. 주요 재난대응 등 민원 현장 처리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2024.10.14.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2025. 08. : 추경예산 확보 후 공용차량 구입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월곶면	사업규모	공용차량(화물트럭) 1대	2회추경 요구액 (천원)	32,000
부기명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263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월곶면	부면장 장숙대	담당자	행정9급 김희민	전화	3405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 정비 공사

사업기간		2025. 6. ~ 2025. 12.	사업위치	시암리 516-4번지 일원
사업규모		배수로 설치(L=480m)		
사업목적		통수단면적 증대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사면 안정을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15,000	0	0	115,000	11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5,000			115,000	11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5,000	
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 시암리 516-4번지 일원 - 플룸관 설치(1,000*1,000) : 240천원*480m	= 115,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속적인 개발, 성토 및 폭우로 인해 5mm 이상의 우천에도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구간이 다수 발생하여 원활한 배수 시설 설치 필요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하여 배수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의 배수로 설치를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플룸관 480m 신규 설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2025. 7. :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및 계약
 - 2025. 8. ~ 2025.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하성면	사업규모	플룸관 설치(1,000*1,000) L=480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15,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암리 516-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주민편익사업)	사업위치	시암리 516-4번지 일원		
위치도 (시암리 516-4)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성면	산업개발팀장 장규선	담당자	시설8급 이주형	전화	3483
-----	-----	------------	-----	----------	----	------

하성 작은도서관 옥상 방수

사업기간	2025. 5. ~ 2025. 6.	사업위치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68-13
사업규모	388㎡		
사업목적	우기시 도서관 누수로 인하여 옥상 방수를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22,000	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			22,000	2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하성 작은도서관 옥상 방수 : 22,000,000원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존에 방수된 옥상 바닥 크랙으로 인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도서관으로 누수가 되고 있음
- 도서관 천장에서 물에 젖은 부자재가 낙하하여 이용객 부상 우려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노출된 크랙 및 누수 자국, 책 손상, 등기구 누전 등 위험 발생 상황 상존한 실정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공사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공사 착공
 - 2025.06.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하성면	사업규모	388㎡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2,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성 작은도서관 옥상 방수	사업위치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68-13		
위치도					
현장사진					
	옥상 균열 자국		천장 크랙 및 부자재 탈락 현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성면	부면장 조길현	담당자	행정7급 김다경	전화	3452
-----	-----	---------	-----	----------	----	------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사우동



스마트폴 설치사업

사업기간	2025. 9. ~ 2025. 11.	사업위치	사우동 410번지 등 5개소
사업규모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내 스마트폴(가로등, CCTV 기능) 5개소 설치		
사업목적	방범시설인 스마트폴 설치를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52,774	0	0	152,774	152,77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2,774			152,774	152,774	공항공사지원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2,774	
스마트폴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 스마트폴 설치 5개소 : 30,554,800원 x 5개소 (폴대, 조명, CCTV, 디스플레이, 스마트센서 자재 및 설치 포함)	152,774	공항공사지원 : 114,580천원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 가로등 조명, CCTV, 비상벨 등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방범시설인 스마트폴 5개소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년 항공기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승인
 - 2025.09. : 실시설계 및 세부설치 위치 협의 등
 - 2025.10. ~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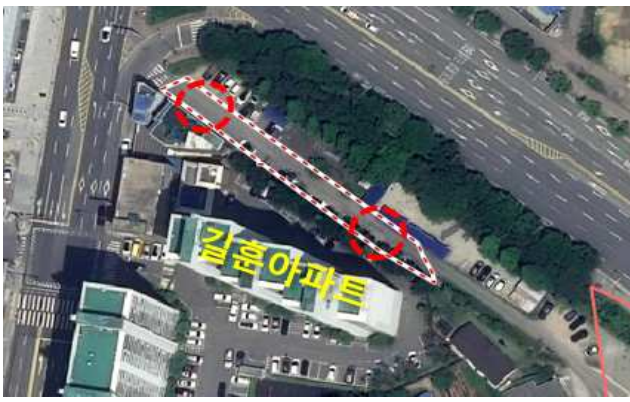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3.20.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사우동	사업규모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내 스마트폴 (가로등, CCTV 기능) 5개소 설치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52,774
부기명 (세부사업)	스마트폴 설치사업	사업위치	사우동 410번지 등 5개소			
위치도						
	사우동 410번지 (1개소)		관순로26번길 60-3 인근 (1개소)			
						
	사우동 380-8번지 (2개소)		사우동 1257번지(사우동 1269번지 뒤) (1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사우동	행정민원팀장 임은선	담당자	시설8급 김영수	전화	3605
-----	-----	------------	-----	----------	----	------

- 김포시청소년재단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목 차



1.	청소년수련관		1
2.	고촌청소년문화의집		9
3.	양촌청소년문화의집		13
4.	풍무청소년문화의집		19
5.	꿈의오케스트라		25
6.	청소년상담사업팀		29
7.	청소년수련원		37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청소년수련관)

지역협력체제구축사업-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중봉청소년수련관(김포시 걸포로 76)
사업규모	우수 일터 체험의 날 등 4개 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연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체험 서비스 제공으로 종합적 진로체험지원체제 구축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진로교육법	제4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협력 체제 구축)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7항 1, 4, 6
		제20조(기능) ⑦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3,000	47,700			47,700	-5,3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3,000	47,700			47,700	-5,3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700	
지역협력체제 구축사업	722-201-03 기타보조금	· 우수 일터체험의 날 - 재료비 : 4,000원*175명*17개 부스 = 11,900 - 운영비 : 100,000원*1회 = 100		
		소 계	12,000	
		· 청소년 맞춤형 진로코칭 - 강사비 : 450,000원(인재개발원 3급, 8시간)*30명 = 13,500 - 위탁용역비(건설팅장 구축) : 3,500,000원*1회 = 3,500 - 홍보비(현수막, 배너 등) : 400,000원*1회 = 400 - 운영비(전산소모품 등) : 600,000원*1회 = 600		
		소 계	18,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 교과융합AI 에듀테크 체험 - 주강사비 : 120,000원(인재개발원 4급, 2시간)*26회 = 3,120 - 보조강사 : 60,000원(2시간)*2명*26회 = 3,120 - 홍보비(현수막) : 80,000원*1회 = 80 - 운영비(체험키트 등) : 180,000원*26학급 = 4,680		
		소 계	11,000	
		·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진로 공감캠프 - 강사비 : 200,000원(3급, 3시간)*2명 = 400 - 임차비(교구) : 4,000,000원*1회 = 4,000 - 임차비(버스) : 700,000원*1회 = 700 - 현장체험입장료 : 15,000원*40명 = 600 - 홍보비 : 100,000원*1회 = 100 - 운영비 : 300,000원*3회 = 900		
		소 계	6,700	

□ 예산요구 사유

-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과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교부(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1801(2025.02.10.)호 관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1801(2025.02.10.)호에 의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 재배정
- 등급선정 기준 60천명 이상 ~ 80천명 미만 지원금 47,7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사업계획 수립
- 2025.04. ~ 2025.12.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 2025.12. :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영기간 : 2023.7월~12월 - 운영실적 : 초·중·고등 청소년 및 일반 / 연인원 6,094명 - 운영내용 : 지역협력체제구축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수일터체험의날	청소년진로공감톡	청소년맞춤형진로코칭	합 계
	3,578명	2,336명	180명	6,094명

2024	- 운영기간 : 2024.4월~12월 - 운영실적 : 초·중·고등 청소년 및 일반 / 연인원 6,434명 - 운영내용 : 지역협력체제구축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미래기술체험	SW가족체험	청소년 맞춤형 진로코칭	진로페스티벌	청소년 진로공감톡	우수 일터체험의 날
	1,262명	300명	180명	500명	1,992명	2,200명
2025	- 시기 미도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500	37,500	-	-	
2024	53,000	52,920	-	80	
2025	47,700	-	-	-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미래인재교육팀장 정은영	담당자	전문6급 김재형	전화	980-1652
-----	--------	--------------	-----	----------	----	----------

디카시 창작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6. ~ 2025. 9.	사업위치	중봉청소년수련관(김포시 걸포로 76)
사업규모	관내 초등 5학년 ~ 중등 3학년 청소년 15명		
사업목적	청소년들이 디카시 ¹⁾ 창작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출간 및 전시 경험을 통해 창작자로서의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800			3,800	3,8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800			3,800	3,8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800	
디카시 창작소	722-201-03 기타보조금	· 강사비 : 150,000원(인재개발원 3급, 2시간)*4회	= 600	
		· 보험료 : 20,000원*2회	= 40	
		· 임차비 : 600,000원*1회	= 600	
		· 운영비 : 2,110,000원*1회	= 2,110	
		· 급식비 : 9,000원*15명*1회	= 135	
		· 간식비 : 3,000원*15명*7회	= 315	

1)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들이 시 창작을 통해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의 자연·문화유산 탐방 및 창작과정을 통해 김포의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및 교부금 신청
 - 2025.06.~2025.09. : 디카시 창작소 사업 운영(9회기)
 - 2025.11.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활동사업팀장 김설희	담당자	사원 김태용	전화	980-1674
-----	--------	------------	-----	--------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고촌청소년문화의집)

끊어낼 결심, 함께 하는 우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7. ~ 2025. 9.	사업위치	고촌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번길 52-1
사업규모	관내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청소년 15명		
사업목적	디지털 드로잉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전개 및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700			4,700	4,7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700			4,700	4,70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00	
끊어낼 결심, 함께 하는 우리	722-201-03 기타사업	· 주강사비(진흥원 3급, 3시간) : 290,000원*8회	= 2,320	
		· 보조강사비 : 40,000원*8회	= 320	
		· 사무용품 구입비 : 180,000원*1회	= 180	
		· 현수막 제작비 : 45,000원*1회	= 45	
		· 홍보물 제작비 : 2,000원*100부	= 200	
		· 체험비(지도자 포함) : 20,000원*17명	= 340	
		· 생성형 AI 이용료 : 20,000원*2종*1회	= 40	
		· 비상약품 구입 : 50,000원*1회	= 50	
		· 보험료 : 20,000원*1회	= 20	
		· 임차비 : 600,000원*1회	= 600	
		· 급식비 : 9,000원*15명*1회	= 135	
		· 간식비 : 3,000원*15명*10회	= 45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의 창의적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을 주제로 한 생산형 AI 기반의 공익광고 제작을 통해 예방 효과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공모사업 선정 및 교부금 신청
 - 2025.05.~2025.06. : 사전답사,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 2025.07.~2025.09. : 프로그램 운영(10회기)
 - 2025.10.~2025.12. :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2팀장 홍성갑	담당자	전문6급 이승애	전화	997-4246
-----	--------	-------------	-----	----------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양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8.15행사-국가보훈부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8.		사업위치	양촌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30번길 46)	
사업규모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				
사업목적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고취하기 위한 체험거리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000	7,000			7,0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7,000	7,000			7,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청소년 8.15행사	722-201-03 기타보조금	· 임차비 : 1,500,000원*2종 · 체험부스 재료비 : 600,000원*6종 · 간식비 : 400,000원*1회	= 3,000 = 3,600 = 40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역사체험활동 및 행사 지원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 광복절 기념 우리 문화·역사 관련 행사 및 체험부스 운영,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특별기획전 연계 체험활동 등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국가보훈부 2025년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1.~2025.02. :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2025.06.~07. : ‘청소년 8.15행사’ 운영계획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
 - 2025.08.~10. : ‘청소년 8.15행사’ 운영 및 국고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영기간 : 2023. 8. 15. - 운영실적 : 연인원 1,300명 - 운영내용 : 광복 기념 행사, 체험활동, 이벤트존,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연계 기획전시 운영 등
2024	- 운영기간 : 2024. 8. 15. - 운영실적 : 연인원 1,100명 - 운영내용 :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연계 기획전시 운영, 체험부스 및 이벤트 부스 운영, 기념공연 등
2025	- 시기미도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000	8,000	-	-	
2024	7,000	7,000	-	-	
2025	7,000	-	-	7,0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3팀장 박승경	담당자	전문5급 김태준	전화	996-6274
-----	--------	-------------	-----	----------	----	----------

웰컴투 고구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5. ~ 2025. 9.	사업위치	양촌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양촌읍 양곡로30번길 46)
사업규모	관내 역사동아리 20명		
사업목적	고구려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역사 문화를 이해하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족의 자긍심 고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700			6,700	6,7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6,700			6,700	6,7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700	
웰컴투 고구려!!	722-201-03 기타보조금	· 강사비(진흥원 기준) : (290,000원*5회) + (150,000원*4회) + (200,000원*2회) = 2,450 · 배너 및 현수막 : 60,000원*3회 = 180 · 구급약품 : 50,000원*1회 = 50 · 사무용품 구입비 : 50,000원*2회 = 100 · 체험부스 운영비 및 체험비: 1,108,000원*1회 = 1,108 · 보험료 : 20,000원*4회 = 80 · 차량임차비 : 550,000원*3회 = 1,650 · 급식비 : 12,000원*22명*3회 = 792 · 간식비 : 3,000원*20명*4회 = 240 · 보급회의비 : 50,000원*1회 = 5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 인식 및 가치관 형성, 비판적 사고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양촌청소년문화의집 특성화 사업인 역사와 지역 연계 활동 추진에 의한 지역 맞춤 청소년활동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2025.03.~2025.04. : 공모사업 교부금 신청
 - 2025.05.~2025.09. : 프로그램 운영(10회기)
 - 2025.11.~2025.12. :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3팀장 박승경	담당자	사원 박은림	전화	996-6277
-----	--------	-------------	-----	--------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웹툰in모션-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5. ~ 2025. 9.	사업위치	풍무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풍무로146번길 86)
사업규모	관내 중·고등 청소년 15명		
사업목적	청소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무빙툰 제작 등 디지털과 문화예술의 융합적 체험과 창의적인 자기표현 역량 함양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700			5,700	5,7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700			5,700	5,7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700	
웹툰in모션	722-201-03 기타보조금	· 강사비(진흥원 기준) : (220,000원*6회) + (290,000원*1회)	= 1,610	
		· 현수막 제작비 : 50,000원*4개	= 200	
		· 홍보물 제작비 : 2,000원*100개	= 200	
		· 도서 출판비 : 10,000원*65부	= 650	
		· 체험비 : 125,000원*1회	= 125	
		· 재료비(부스운영) : 94,000원*15명	= 1,410	
		· 운영물품 구입 : 25,000원*10회	= 250	
		· 보험료 : 20,000원*1회	= 20	
		· 문자 통신비 : 5,000원*10회	= 50	
		· 임차비 : 600,000원*1회	= 600	
		· 급식비 : 9,000원*15명*3회	= 405	
		· 간식비 : 3,000원*15명*4회	= 180	

□ 예산요구 사유

- 시대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경험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창의적 문화예술 표현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양성
-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 및 자신감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 2025.04. : 공모사업 선정 및 교부금 신청
 - 2025.05.~2025.9. : 프로그램 운영(10회기)
 - 2025.11. : 사업 결과 및 평가, 정산 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4팀 팀장 정은영	담당자	사원 허진영	전화	997-9550
-----	--------	---------------	-----	--------	----	----------

독립상담실 방음공사비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풍무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풍무로 146번길 86)
사업규모	독립상담실(10.20㎡) 1개소		
사업목적	내담자의 비밀 보장과 심리적 안정 확보를 통해 신뢰도 높은 상담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4항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000			5,000	5,000	
국비							
도비							
시비		5,000			5,000	5,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독립상담실 방음공사비	754-214-05 수선유지비	· 독립상담실 방음공사비: 5,00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상담 시 내담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독립상담실 방음 보완 작업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상담 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노출 우려가 있으며,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담환경 개선을 위한 방음공사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2025.10 : 상담실 방음공사 실시
 - 2025.10.~2025.11 : 방음공사 결과보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사업규모	독립상담실(10.20㎡) 1개소	2회추경 요구액 (천원)	5,000천원
부기명 (세부사업)	독립상담실 방음공사비	사업위치	풍무로 146번길 86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4팀장 정은영	담당자	전문6급 김규성	전화	997-9550
-----	--------	-------------	-----	----------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꿈의오케스트라)

꿈의향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3. ~ 2025. 6.	사업위치	중봉청소년수련관(김포시 결포로 76)
사업규모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초등3학년 ~ 중등3학년) 60명, 음악감독 및 강사진 13명		
사업목적	지역사회 재능기부 연주회를 통한 다양한 무대경험 제공 및 단원들의 자긍심 고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13, 제10조
		제6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5,000	23,000			23,000	-2,0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5,000	23,000			23,000	-2,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000	
꿈의향연	722-201-03 기타보조금	· 음악감독 : 50,000원*3시간*1명*7회 = 1,050 · 음악강사 : 43,000원*3시간*12명*7회 = 10,836 · 편곡료 : (300,000원*1.5마디)*4곡 = 1,800 · 홍보물제작비 : 203,000원*1회 = 203 · 운영물품 : 136,000원*1회 = 136 · 악기소모품 : 250,000원*1회 = 250 · 단체티 : 15,000원*81명 = 1,215 · 회계검증 수수료 : 330,000원*1회 = 330 · 임차비 : 650,000원*6회 = 3,900 · 화물차량임차비 : 132,000원*2대 = 264 · 회의식비 : 25,000원*20명*1회 = 500 · 간식비 : 4,250원(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준 內) *74명*8회 = 2,516		

□ 예산요구 사유

○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단원의 교육격차 해소,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단원 자긍심 고취

□ 예산증감 사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예산 변경(전년 25,000천원 → 변경 23,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공모사업 선정 및 교부금 신청
 - 2025.03.~2025.06. : 꿈의향연 연주회 연습(파트연습) 및 연주회 운영
 - 2025.05.25. : 꿈의향연 연주회 운영
 - 2025.06.~2025.07. : 꿈의향연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영기간 : 2023.2월~12월 - 운영대상 및 실적 : 꿈의오케스트라 단원 및 강사 / 연인원 2,106명 - 운영내용 : 오케스트라 정기교육 7회, 연주회 3회(연주회 프로그램북 제작), 음악감독 및 강사 워크숍 운영
2024	- 운영기간 : 2024.3월~6월 - 운영대상 및 실적 : 꿈의오케스트라 단원 및 강사 / 연인원 2,379명 - 운영내용 : 오케스트라 정기교육 9회, 연주회 2회(청소년의달축제, 아라마린페스티벌)
2025	- 운영기간 : 2025.3월~6월 - 운영대상 및 실적 : 꿈의오케스트라 단원 및 강사 / 연인원 60명 - 운영내용 : 오케스트라 정기교육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	48,620	-	1,380	
2024	25,000	25,000	-	-	
2025	23,000	667	-	22,333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관	미래인재교육팀장 정은영	담당자	사원 김선희	전화	980-1616
-----	--------	--------------	-----	--------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청소년상담사업팀)

김포시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보조금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청소년상담사업팀(김포시 결포로 76)
사업규모	청소년 폭력예방교육 2종		
사업목적	청소년기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양성평등 가치관 형성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 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000			10,000	10,000	
국비							
도비		3,000			3,000	3,000	
시비		7,000			7,000	7,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김포시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722-201-03 국도시비보조금	강사비	활동비	2급 (1시간) 130,000원*10회	=	1,300		
				전문강사 (2시간) 230,000원*10회	=	2,300		
			양성강사	(1시간) 100,000원*15회	=	1,500		
				(2시간) 170,000원*20회	=	3,400		
		일반 운영비	역량강화 교육	강 사 비 310,000원(3시간)*3회	=	930		
			운영비	교재제작비 8,000원*30부	=	240		
				교육 강화물 330,000원*1회(50회 사용)	=	33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기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양성평등 가치관 형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지원
- 찾아가는 청소년 폭력예방교육 55개 집단, 강사 역량강화 교육 연인원 75명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공고 제2025-515호 「2025년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수행기관 공개모집 선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2025.04.~2025.12.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단위사업 2종)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업팀장 주현주	담당자	전문4급 주현주	전화	980-1680
-----	-----------	---------------	-----	----------	----	----------

디지털미디어피해 청소년회복지원사업-경기상담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청소년상담사업팀(김포시 결포로 76)
사업규모	미디어 과의존 대상 집단상담		
사업목적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등 맞춤형 종합적 서비스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조례	제5조의 3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100	4,900			4,900	-2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100	4,900			4,900	-2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00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사업	722-201-03 기타보조금	· 집단상담 강사비 : 130,000원(2시간)*2회*18집단 · 물품구입비 : 110,000원*2회	= 4,680 = 220	

□ 예산요구 사유

- 미디어 과의존 등 디지털 유해환경 피해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 강화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과의존행동대응팀-45(2025.3.5.)호 「2025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비 신청」에 따라 교부 결정 통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 : 연간계획 수립
 - 2025.05.~2025.12. : 상담 및 서비스 지원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영기간 : 2023.1월~12월 - 대 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연계 청소년 및 보호자 - 내 용 :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운영 - 추진실적 : 349명
2024	- 운영기간 : 2024.1월~12월 - 대 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연계 청소년 및 보호자 - 내 용 :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운영 - 추진실적 : 290명
2025	- 시기미도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650	5,650	-	-	
2024	5,100	5,100	-	-	
2025	4,900	-	-	4,90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업팀장 주현주	담당자	사원 정선화	전화	980-1698
-----	-----------	---------------	-----	--------	----	----------

지역연계 청소년 중독예방사업-사회복지모금회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청소년상담사업팀(김포시 걸포로 76)
사업규모	청소년 중독예방사업 2종		
사업목적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지도자양성, 예방교육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보호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5조(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가. 초·중·고등학교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지원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재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 2.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6,700			16,700	16,7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6,700			16,700	16,7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700		
지역연계 청소년 중독예방사업	722-201-03 기타보조금	강사양성 교육	양성교육	강 사 비	기초 470,000원*10강	=	4,700	
				보수	470,000원*5강	=	2,350	
			운영비	운 영 비	70,000원*10강	=	700	
				예방활동	운영비	125,000원*2회	=	250
		소 계					8,000	
		찾아가는 중독예방 교육	교육운영	강 사 비	150,000원*40집단	=	6,000	
				운 영 비	170,000원*10회	=	1,700	
			홍보물제작		2,000원*500개	=	1,000	
			소 계					8,7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연계 중독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자양성, 찾아가는 중독예방 교육 실시
 -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기초 10강, 보수 5강), 찾아가는 중독예방 교육 지원(학교·기관 40집단)
- 유관기관 및 지역자원 연계 「중독 예방활동」 추진
 - 현장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홍보물 배부를 통한 인식개선 저변확대 노력)

□ 예산증감 사유

-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공동구축 공모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사회복지모금회 공모 및 배분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2025.04.~2025.12.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사업 2종)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업팀장 주현주	담당자	전문5급 신희덕	전화	980-1681
-----	-----------	---------------	-----	----------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청소년수련원)

인공암벽 오토빌레이 교체비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청소년수련원(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13번길 33)
사업규모	인공암벽장(코스 3종 중 2종)		
사업목적	인공암벽의 운영불가 상태 방지를 위한 단종된 오토빌레이의 고장 시 즉시 교체를 위한 대체품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9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920			8,920	8,920	
국비							
도비							
시비		8,920			8,920	8,92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920	
인공암벽 오토빌레이 교체비	754-214-05 수선유지비	· 인공암벽 오토빌레이 교체비 : 4,460,000원*2개 =	8,92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수련원 주요프로그램 인공암벽의 안전장치(오토빌레이)의 고장 및 단종에 따른 대체품 확보
- 3개 코스 중 1개의 코스 고장으로 인한 오토빌레이를 교체하여 운영 중
- 수련활동 성수기 중 나머지 2개의 코스 오토빌레이 고장 시 수련활동 운영불가에 따른 즉각 교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구입하여 원활한 수련 활동 운영을 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다년간 사용에 따른 오토빌레이 고장 발생 및 제품 단종에 따른 대체품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8. : 기본계획 수립
 - 2025.09.~2025.12. : 인공암벽 오토빌레이 교체 및 운영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청소년수련원	사업규모	인공암벽장(코스 3종 중 2종)	2회추경 요구액 (천원)	8,920천원
부기명 (세부사업)	인공암벽 오토빌레이 교체비	사업위치	월곶면 용강로 13번길 38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수련원	수련사업팀장 판창훈	담당자	전문5급 성영모	전화	980-9700
-----	--------	------------	-----	----------	----	----------

2025. 04. 04.



사 업 설 명 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김포아트홀 무대조명 객석등 교체 공사

사업기간	2025. 8. ~ 2025. 9.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사업규모	김포아트홀 관람석 객석등(63개) 및 노후 선로 교체		
사업목적	김포아트홀 공연장 객석등 탈락 및 단선으로 인한 관객 부상 및 화재 위험 제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30,000	0	0	130,000	1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0,000			130,000	1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0	
김포아트홀 무대조명 객석등 교체	401-01 시설비	○ 객석등 조명 50w : 1,050,000원*40EA = 42,000 ○ 객석등 조명 90w : 1,400,000원*23EA = 32,200 ○ 객석등 컨트롤러 : 3,300,000*2SET = 6,600 ○ 배선 및 자재 : 28,750,000원*1식 = 28,750 ○ 철거 및 설치인건비 : 16,800,000원*1식 = 16,800 ○ 폐기물처리비 및 잡자재비 : 3,650,000원*1식 = 3,650		

□ 예산요구 사유

- 공연장 객석등 노후화로 인한 탈락 및 객석 추락으로 인한 관객 부상 위험 요소 제거
- 공연장 위험성 평가 결과 선로의 결속 및 피복 벗겨짐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 증가
- LED 객석등 교체로 조도 밝기를 높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시 대피로 시야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장비노후 및 안전사고 예방 따른 교체(김포아트홀 11년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의결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김포시 문화예술과 협의
 - 2025. 7. : 기본계획 수립
 - 2025. 8. : 조달청 입찰 및 계약
 - 2025. 9. : 설치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5.3.20.)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김포문화재단 공연기획팀	사업규모	무대조명 객석등 1식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아트홀 무대조명 객석등 교체공사	사업위치	돌문로26 김포아트홀		
현장사진					
	공연장 무대 앞 객석등 파손·탈락 사진		노후로 인한 전선 화재위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이우정	담당자	일반5급 이도성	전화	999-3964
-----	-------	------------	-----	----------	----	----------

2025년 2회추가경정 사업설명서



재단
법인 김포복지재단
Gimpo Community Foundation

구분	항목		2회추경 예산액(A)	본예산액(A)	증감△ (A-B)	
총 계			1,342,111	1,256,382		85,729
인건비	소계		647,664	560,237		87,427
인건비(101)	보수(01)		569,019	481,592		87,427
	퇴직급여(107)		53,316	53,316		-
	평가급(109)		25,329	25,329		-
운영경비	소계		694,447	696,145	△	1,698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72,298	72,298		-
		소모품비	14,506	14,506		-
		도서인쇄비	7,560	7,560		-
		지급임차료	9,436	9,436		-
		지급수수료	40,796	40,796		-
		공공운영비(02)		28,860	28,860	
		공공요금및제세	10,150	10,150		-
		전기요금	10,200	10,200		-
		차량유지비	5,400	5,400		-
		보험료	3,110	3,110		-
	행사운영비(03)		225,120	225,120		-
	김포형복지 그물망강화	취약계층지원강화	0	0		-
		행복나눔콘텐츠개발	65,420	65,420		-
		맞춤형서비스기획지원	118,640	118,640		-
	나눔문화 및 네트워크 확산	시민역량강화사업	21,570	21,570		-
		복지네트워크확산사업	19,490	19,490		-
	회의비(14)		7,500	7,500		-
	기타복리후생비(15)		37,033	35,190		1,843
여비(202)	국내여비(202)		9,240	9,240		-
업무추진비(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01)		5,000	5,000		-
직무수행경비(204)	직급보조비(01)		26,220	26,220	△	2,261
	특정업무경비(02)		3,840	3,840	△	1,280
교육훈련비(213)	교육훈련비(213)		7,040	7,040		-
수선유지비(214)	수선유지비(05)		133,164	133,164		-
관서업무비(217)	정원가산업무비(01)		880	880		-
	부서업무비(02)		3,000	3,000		-
위탁관리비(220)	위탁관리비(220)		52,164	52,164		-
일반보상금(301)	행사실비보상금(10)		1,000	1,000		-
연금부담금등(304)	사회보험부담금(01)		77,229	77,229		-
기타협의체등부담금(320)	기초협의체등부담금(01)		1,800	1,800		-
시설비및부대비(401)	시설비(01)		0	0		-
자산취득비(405)	자산취득비(01)		6,600	6,600		-

구분	항목		시비(A)	연합모금 (B)	예비비및기타 (C)	사업총액 (A)+(B)+(C)	사업량
총 계			1,342,111	1,159,820	52,535	2,554,466	
김포형 복지그물망 강화	소 계		184,060	1,159,820	-	1,343,880	
	취약계층 지원강화	우리김포긴급지원사업	-	380,505	-	380,505	12회/1,688명
		정기결연지원사업	-	219,780	-	219,780	12회/2,220명
		미래세대성장사업	-	50,000	-	50,000	1회/100명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	217,870	-	217,870	12회/210명
	행복나눔 콘텐츠 개발	나눔문화활성화사업	45,920	14,800	-	60,720	4회
		62일간나눔릴레이	19,500	7,450	-	26,950	목표액 8억
	맞춤형 서비스 기획지원	명절지원사업	100,560	-	-	100,560	2회/1,540명 300개소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18,080	9,415	-	27,495	1회/269명
		사회복지시설 단체지원사업	-	260,000	-	260,000	1회/40개소
나눔문화 및 네트워크 확산	소 계		41,060	-	-	41,060	
	시민역량 강화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10,390	-	-	10,390	10회/300명
		나눔교육	11,180	-	-	11,180	9회/500명
	복지 네트워크 확산	복지시설단체컨설팅사업	17,150	-	-	17,150	14회
		복지협력네트워크사업	1,000	-	-	1,000	10회
		시민모니터링단사업	1,340	-	-	1,340	5회
조직의 안정화와 공정실현을 위한 ESG경영	소 계		1,116,991	-	27,535	1,144,526	
	재단운영	인건비	569,019	-	-	569,019	-
		퇴직급여	53,316	-	-	53,316	-
		평가급	25,329	-	-	25,329	-
		운영경비	469,327	-	-	469,327	-
		예비비 및 기타	-	-	27,535	27,535	-
수탁시설 운영강화 상생경영	소 계		-	-	25,000	25,000	
	수탁시설 운영	수탁시설 운영 지원	-	-	25,000	25,000	3개소

김포복지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사업규모	김포복지재단 1개소		
사업목적	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145,042	1,342,111	1,256,382	0	85,729	197,06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45,042	1,342,111	1,256,382		85,729	197,06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729	
김포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경정(1,342,110,000원)-기정(1,256,382,000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82,220,510원 + 3,508,000원	= 85,729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복지재단 2025.04.01.일자 공개채용 임용에 따른 추가인건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정원기준 편성(현원9인→11인)에 따른 82,219천원 증액
- 급량비 (9,000원*4회*2명*9개월)에 따른 648천원 증액
- 선택적복지제도 정원기준 편성(현원9인→11인)에 따른 2,860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분기별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2023	- 제11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66,106천원 모금액 : 823,062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190가구 - 지역사회 현안사업 101회, 긴급재해재단 사업 644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59가구, 가족기능강화사업 30가구 - 명절지원사업 184개소/ 1,610가구, 우리김포긴급지원사업 426가구, 정기결연지원사업 2,243가구, 미래세대성장사업 523가구 -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 28개소, 차량지원사업 4개소, 기관협력지원사업 36개소 - 사회복지인식개선사업 18회,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19회, 힐링지원사업 10회/431명, 사회복지시설지원 32회 -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 13회, 사례관리회의 8회, 시민모니터링 9회, 복지네트워크 사업 9회)
2024	- 제12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00,000천원 모금액 : 1,363,038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70가구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161건, 우리김포긴급지원 1,275건 (보훈취약계층 699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1,938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건, 명절지원사업 1,711건/134개소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42건, 차량지원사업 1개소 - 나눔교육사업 10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2회, 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17회 - 시민모니터링단 18회, 복지협력네트워크 12회, 업무협약 1회
2025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18건, 우리김포긴급지원 48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316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건, 명절지원사업 1,093건/116개소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건 - 복지협력네트워크 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1,700	1,161,242	-	160,458	
2024	1,145,042	945,558		199,484	
2025	1,256,382	297,443	-	958,939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김포복지재단	경영지원부 이민영	담당자	경영지원부 장선화	전화	989-0341
-----	--------	-----------	-----	-----------	----	----------

인건비성 경비

사업기간	2025. 4. 1. ~ 2024.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3번길 52-15
사업규모	김포복지재단 1개소		
사업목적	김포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등)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1조(보조금의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55,283	567,321	481,592	0	85,729	112,03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55,283	567,321	481,592	0	85,729	112,03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729	
일반관리비	101-01 보수	· 기본급 경정(398,096,610원)-기정(347,619,000원) = 50,477,610원 · 가족수당 경정(16,874,280원)-기정(11,160,000원) = 5,714,280원 · 명절휴가비 경정(37,708,140원)-기정(35,492,000원) = 2,216,140원 · 자격수당 경정(3,210,000원)-기정(3,600,000원) = -390,000원 · 운영수당 경정(34,288,220원)-기정(29,239,000원) = 5,049,220원 · 시간외수당 경정(50,125,650원)-기정(34,624,000원) = 15,501,650원 · 장기근속수당 경정(1,980,000원)-기정(990,000원) = 990,000원 · 대우수당 경정(3,563,420원)-기정(3,472,000원) = 91,420원 · 연차유급수당 경정(14,002,440원)-기정(6,226,000원) = 7,776,440원	= 87,427	
	204 직무수행경비	· 직급보조비 경정(23,958,750원)-기정(26,220,000원) = -2,261,250원 · 특정업무수행경비 경정(2,560,000원)-기정(3,840,000원) = -1,280,000원	= -3,541	
	202-15 기타복지후생비	· 급량비 경정(4,488,000원)-기정(3,840,000원) = 648,000원 · 정액급식비 경정(16,815,000원)-기정(18,480,000원) = -1,665,000원 · 선택적복지제도 경정(15,730,000원)-기정(12,870,000원) = 2,860,000원	= 1,843	

□ **예산요구 사유**

- 2025. 기본급 및 가족수당 상승에 따른 증액 및 결월에 따른 인건비 조정
(25년 본예산 9명 기준 / 25년 결원 3명(주임2, 대리1)에 따른 인건비 조정)
- 2025. 4. 신규채용 2명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신규직원 2명 채용으로 인한 복지사업 활발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2	- 1~12월 김포복지재단 종사자 11명 급여지급
2023	- 1~12월 김포복지재단(12.31일기준) 종사자 5명 급여지급
2024	- 1~12월 김포복지재단(12.31일기준) 종사자 8명 급여지급